

주요국의 조세동향

2019년 제2호

2019. 12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세종특별자치시 시청대로 336 (반곡동)
TEL: 044-414-2114(代), www.kipf.re.kr

Kipf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세정연구센터

주요국의 조세동향

2019년 제2호

2019. 12

KIPF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세정연구센터

이 자료는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세정연구센터에서 발간하고 있는 「주요국의 조세동향」을 국가별로 정리한 것입니다.

목 차

제1부 디지털세의 논의와 동향

I 논의의 배경과 도입 목적 / 3

II 논의 동향 / 6

III 2 Pillar Approach의 주요내용 / 9

- 1. Pillar 1 9
- 2. Pillar 2 11

IV 국가별 디지털서비스세의 현황 및 국제적 합의에 대한 반응 / 13

- 1. 디지털서비스세(DST) 현황 13
- 2. OECD 디지털세 관련 국가별 반응 26

제2부 주요 국가별 조세동향

I 미국/캐나다 / 31

- 1. 미국 31
 - 가. 외국계 보험회사 관련 PFIC 별도 기준 발표 31

나. 국적포기세 납부 대상자 구제절차 마련	32
다. 중국 수입품 추가 관세 일부 품목 대상 제외 및 관세율 인상	33
라. 하드포크 암호화폐 과세 판단 기준 마련	34
마. 2020년 과세 표준 및 공제액 조정	35
2. 캐나다	41
가. 2019년 예산이행법 승인	41
나. 2020년 고용보험 부담률 발표	43
다. 소득세 기초공제액 인상 법안 상정	44

II

유럽 / 45

1. 네덜란드	45
가. EU 조세회피방지지침 이행 법안 의회 제출	45
나. 2020년도 세법 개정안 발표	46
다. 개인 투자소득에 관한 세제 개편안 발표	48
2. 노르웨이	49
가. 그룹 내 결손금 공제 범위 변경 규정 공개	49
나. 2020 예산법안 의회 제출	50
3. 덴마크	52
가. 강제적 보고제도 채택 법안 공개	52
나. 국제 조세분야 개정안 공개	52
4. 독일	53
가. 통일세 감면 법안 발표	53
5. 룩셈부르크	54
가. 강제적 보고제도 및 자금세탁방지지침 실행 법안 의회 제출	54
나. 제3국과의 혼성불일치 EU지침 채택 법안 의회 제출	56
다. 2020 예산법안 의회 제출	57
라. 유류세 인상안 공개	57

목 차

6. 벨기에	58
가. 플레미쉬 정부 2020~2024 세제 변경 집권정당 간 합의서 작성	58
7. 스웨덴	59
가. 은행세 도입 계획 발표	59
나. 2020 예산법안 의회 발표	60
다. 강제적 보고규정 법안 공개	61
8. 스페인	62
가. 강제적 보고제도 채택 법안 공개	62
9. 아일랜드	63
가. 신규 부가가치세 등록 시스템 공개	63
나. 국외전출세 개정 편람 공표	64
다. 2020년 예산안 의회 제출	66
라. 특정 자본소득에 대한 면세조항 개정	70
10. 영국	70
가. 상속세 간소화 권고사항 공개	70
나. 왕실 속령의 수익적 소유자 등록부 공개	72
다. 강제적 보고제도 채택 규정 공개	73
라. 과세관청의 암호화폐거래소에 정보제공 요구 서한 발송	75
마. 개인 과세 간소화 검토안 공개	76
11. 오스트리아	77
가. 강제적 보고규정 법안 공개	77
나. 디지털세 과세안 관보 게재	78
12. 포르투갈	79
가. NHR 적용 대상 목록 변경	79
나. SIGI 과세 관련 법령 개정	81
다. 간접세 관련 세법 개정	82
라. 2020년 예산법안 제출	83
13. 이탈리아 - 경제성장을 위한 긴급조치 법률 시행	84

14. 프랑스	85
가. 항공세 도입	85
나. 디지털서비스세 신설	86
다. 신설 이자공제규정에 관한 가이드라인 발표	88
라. 디지털 자산 처분 수익에 대한 과세 지침 발표	88
마. 2020년도 세법 개정안 발표	89
15. 핀란드	91
가. 2020년 예산안 공개	91
나. 출국세 법안 의회 제출	92

Ⅲ

아시아/오세아니아 / 93

1. 뉴질랜드	93
가. 소액 수입물품 GST 부과	93
나. 암호자산으로 지급한 급여 세법상 처리 규정 발표	93
다. 사전조사 지출공제 및 결손금 이월제한 개정 논의	94
라. 2018/19년도 해외투자펀드 세무 목적상 수익률 발표	96
2. 싱가포르	97
가. GST 개정안 수정사항 공개	97
나. VCC 적용 특례법 도입에 대한 개정안 발표	98
3. 인도	99
가. 2019/20 사업연도 연방예산안 발표	99
나. 판매촉진을 위한 전시품 및 위탁품에 대한 GST 법령 발표	101
다.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 발표	102
4. 인도네시아	103
가. 세법 개정안 발표	103
5. 중국	104
가. 지역사회 기반 용역에 대한 세제 혜택 발표	104

목 차

나. 자원세법 도입 방법	105
다. 해외전자상거래를 영위하는 수출소매기업 과세방안 발표	105
라. 소비세법 초안 공개	106
6. 호주	108
가. 세무입장보고(Reportable Tax Position)제도의 적용 범위 확대 발표	108
나. 재화가 아닌 공급에 대한 GST 법령 초안 발표	109
7. 홍콩	110
가. 중소기업 및 거주자 지원 목적의 조세혜택 확대 발표	110
나. 조세혜택 패키지 법률 시행	111

IV

국제기구 / 113

1. OECD	113
가. 강제보고규정 관련 정보의 국제적 교환을 위한 체계 발표	113
나. BEPS Action 14 관련 2단계 상호검토보고서 발표	114
다. BEPS Action 13 관련 2단계 상호검토보고서 발표	115
라. 디지털세 단일 접근법에 관한 공개협의문서 발표	116
마. 개발도상국의 이전가격 문서화를 위한 자료집 초안 발표	118
바. 디지털 경제 과세방안 ‘글로벌 세원잠식 방지 규정 마련’ 관련 공개협의문서 발표	119
사. 국가별 보고서 작성에 관한 추가 가이드라인 발표	120
아. 자발적 정보교환에 관한 지침 발표	121
자. BEPS 프로젝트 Action 5 상호검토 보고서 발표	122
차. BEPS 프로젝트 Action 14 상호검토 보고서 발표	123
2. EU	125
가. EU경제재정이사회 Tax Issue 보고서 발표	125

표 목 차

제1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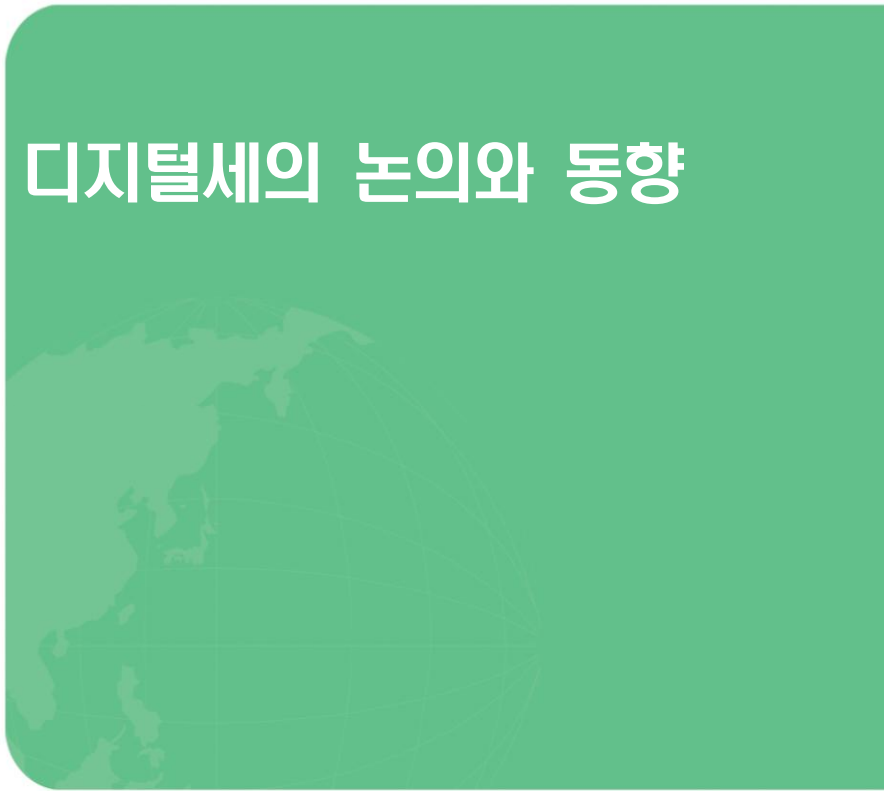
〈표 IV-1〉 유럽 국가의 디지털서비스세 현황	18
〈표 IV-2〉 미주 국가의 디지털서비스세 현황	22
〈표 IV-3〉 오세아니아 국가의 국가별 디지털서비스세 현황	22
〈표 IV-4〉 아시아 국가의 디지털서비스세 현황	23
〈표 IV-5〉 아프리카 국가의 디지털서비스세 현황	25

제2부

〈표 III-1〉 과세대상 품목별 세율	107
-----------------------------	-----



제1부 디지털세의 논의와 동향



I 논의의 배경과 도입 목적

■ 디지털 기술을 기반으로 한 새로운 형태의 경제활동이 증가함에 따라, 이에 대응하여 디지털 경제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과세방안 마련에 대한 논의가 시작됨

▶ 디지털 경제는 전통적 경제에 비하여 이동성(mobility), 데이터에 대한 의존, 네트워크 효과, 다면 사업모델(multi-sided business model)의 확산, 독과점으로의 경향성, 변동성이라는 특이점을 보임¹⁾

▶ 경제의 디지털화로 인하여 더 이상 디지털 경제를 다른 경제활동과 분리하여 구분하기 어려워짐

- 전자상거래,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공유경제, 플랫폼 등 물리적 고정사업장의 개념을 넘어선 사업 모델이 등장하며 소비자 행태도 상응하여 빠르게 변화하고 있음

▶ 이에 따라 디지털 경제에 대한 과세방법에 대해서도 OECD, EU 회원국 등을 중심으로 제한적 접근이 아닌 과세체계 전반에 대한 대안을 마련하자는 논의가 시작됨

- 거대 IT기업 등 여러 다국적기업의 조세회피 또한 새로운 방법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이를 사전에 방지하고 적절히 제재하는 것이 이슈가 되었음

- 디지털 기술 발달에 따라 국가 간 과세권 배분의 왜곡, 정상가격원칙 적용상의 문제의 해결 방안 또한 문제가 됨

■ 디지털 경제에 따른 BEPS 관련 이슈는 다음과 같음²⁾

▶ 첫째, 고정사업장 규정 관련

- 디지털 경제에서는 물리적 장소 없이 사업활동이 가능하기 때문에 물리적 장소로 고정사업장을 판단하는 현행 규정의 적절성 문제가 발생함

- 고정사업장의 예외로 보는 예비적·보조적 활동이 디지털 경제에서는 주요 사업 활동인 경우가 많음

1) OECD(2015), *Addressing the Tax Challenges of the Digital Economy, Action 1 - 2015 Final Report*, OECD/G20 Base Erosion and Profit Shifting Project, OECD Publishing, Paris, p. 11.

2) OECD(2015), *Addressing the Tax Challenges of the Digital Economy, Action 1 - 2015 Final Report*, OECD/G20 Base Erosion and Profit Shifting Project, OECD Publishing, Paris.

- ▶ 둘째, 사용자 참여로 새롭게 창출된 가치의 소득 과세 문제
 - 네트워크 플랫폼을 통해 소비자로부터 수집한 정보는 제품 성능 향상, 의사결정 향상으로 소득창출에 기여하는 주요 원천임
 - 신규 창출 소득에 대한 데이터 수집 국가 소득 배분, 데이터의 가치 평가, 배분된 소득의 구분 등의 문제가 있음
- ▶ 셋째, 디지털 재화의 소득 구분 문제
 - 일례로, 클라우드 컴퓨팅, 3D 프린팅 제공 시 해당 소득의 분류가 사업소득과 사용자 소득 중 어느 것인지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음
 - 소득구분에 따라 세 부담이 달라지기 때문에 소득구분은 중요하며, 사업소득으로 분류되는 경우 고정사업장에 속하는 소득만 원천지국에서 과세되고 로열티 소득으로 분류되는 경우 원천징수함
- ▶ 넷째, 저가 수입상품의 VAT 면세 문제
 - 온라인 구매를 통한 저가 수입상품이 증가하여 국내 사업자의 경쟁력이 저하되며, VAT 면세점을 이용한 VAT 납부의 의도적 회피가 가능
- ▶ 다섯째, 디지털 재화·전자적 용역의 VAT 과세 문제
 - 판매국에서 소비세 과세 시: 국내 사업자의 경쟁력 저하, 국내 사업자와 해외 사업자 간 과세형평성 문제
 - 소비지국에서 소비세 과세 시: 해외 판매자가 VAT를 납부할 유인 부족

■ OECD는 2015년 위 디지털 경제하의 BEPS 문제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권고사항을 제시하였음³⁾

- ▶ 첫째, 경제적 실재를 고려한 새로운 연계거점(nexus) 도입
 - 수익 기반: 기업의 플랫폼을 통해 해당 국가 고객과 체결한 거래의 수익 기반으로 연계거점 결정
 - 디지털요소 기반: 도메인 이름이 속하는 국가, 디지털 플랫폼 설치 국가, 결제 시스템 설치 국가와 같은 디지털 요소에 따라 연계거점 결정
 - 사용자 기여도 기반: 디지털 플랫폼에 접속한 사용자 수, 해당 국가에 거주하는 고객과 체결한 계약 수, 수집된 데이터의 양 등으로 연계거점 결정

3) OECD(2015), *Addressing the Tax Challenges of the Digital Economy, Action 1 - 2015 Final Report*, OECD/G20 Base Erosion and Profit Shifting Project, OECD Publishing, Paris.

- ▶ 둘째, 실질적인 예비적·보조적 활동만 고정사업장의 예외로 보도록 PE 예외규정 수정
 - ▶ 셋째, 디지털 거래에 원천세 부과: 소비자 또는 중개인이 원천징수 납부 의무를 가지며, 중개인이 다수의 개인 소비자를 대신해 원천징수하거나 대리납부 중개인을 선임하는 방법도 있음
 - ▶ 넷째, 소비세 형태의 균등세(equalization levy) 부과
 - ▶ 다섯째, 소액물품의 VAT 면세점을 낮추고, 국내 정책 및 상황에 맞는 효율적인 VAT 징수 모델을 적용함
 - 세관 징수모델, 판매자 징수모델, 구매자 징수모델, 중개인 징수모델이 있음
 - ▶ 여섯째, 전자 용역 및 무형자산의 국제거래 시 소비지국에서 소비세를 과세하며, 해외 판매자가 소비지국에 VAT를 납부할 수 있도록 ‘간편 VAT 사업자 등록 제도’ 운영
 - ▶ 단, 디지털 경제의 법인세 과세 문제는 2020년까지 기존 고정사업장 개념을 대체할 새로운 과세 연계점(tax nexus)에 대한 국제적 합의가 계획되어 있어, 위 보고서에서는 법인세 관련 권고사항을 제시하지 않음
- 특히 개별 국가 차원에서 디지털서비스세, 균등세 등의 일방적 조치들이 선제적으로 도입되면서 전 세계적으로 단일한 조치를 마련할 필요성이 더욱 커졌고, 이에 따라 OECD/G20 주도하에 디지털세 논의가 본격적으로 시작됨
- ▶ 인도는 2016년 4월부터 균등세를 도입하여 온라인 광고 등 광고용역대금을 국내 고정사업장이 없는 해외 판매자에게 1만루피 초과 지급 시 당해 서비스 매출액의 6%를 균등세로 원천징수함⁴⁾
 - ▶ 영국과 호주는 우회이익세를 도입하여 국외 조세회피지역 등으로 이익을 이전하는 경우 당해 다국적기업에 일반 법인세율보다 높은 법인세율을 부과하여 과세함
 - ▶ 2017년 9월에는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스페인 등을 중심으로 EU에 균등세를 도입하자는 성명이 발표되었고, 이에 EU는 2018년 3월 EU 차원에서의 디지털서비스세 추진을 발표함

4)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주요국의 조세동향」, 2016년 제4호.

II

논의 동향

- 2015년 발표한 BEPS Action 1 최종보고서는 디지털 경제 상황에서의 세원잠식과 과세 소득 이전 문제가 심화될 수 있고, 국가 간 과세권 배분의 왜곡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함

 - ▶ 그러나 발표한 BEPS Action 1 보고서에는 이를 해결하기 위한 법인세와 관련한 권고사항이 제시되어 있지 않았으며, 향후 이에 대한 보고서를 추가로 발표하겠다는 언급만 있음

- OECD는 2018년 3월 디지털 경제 경과보고서⁵⁾를 발표함

 - ▶ 이는 유럽의 주요 국가들이 문제 제기를 본격화하기 시작함에 따라 진행되었음
 - ▶ EU에서는 유럽 국가들에 대해 별도의 과세제도인 디지털서비스세(Digital Services Tax)를 도입할 것을 권고하였음
 - ▶ 이에 따라 OECD는 디지털 경제하의 조세문제에 대한 국제적 합의안을 도출하기 위한 대안을 마련함

- OECD는 2019년 2월 이익배분과 과세준거점 개정 및 소득이전으로 인한 과세회피방지 규정에 대한 공개협의문서⁶⁾를 발표함

 - ▶ 이어서 2019년 3월 프랑스 파리에서 공청회를 진행하고 정부, 기업, 학계 등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함
 - ▶ 이익배분과 과세준거점 개정에 관하여 아래 3가지 기준을 제시함
 - 사용자 참여 기준: 실제 사용자 참여 데이터를 기반으로 소득을 배분하는 방안임
 - 마케팅 무형자산 기준: 다국적기업이 고객 기반 데이터 및 기타 무형자산을 개발하기 위해 본질적으로 도달할 수 있는 관할권을 기준으로 소득을 배분하는 방안임
 - 상당한 경제적 실질 기준: 비거주자 및 외국법인이 디지털기술 및 기타 자동화 방

5) OECD, "Tax Challenges Arising from Digitalisation - Interim Report 2018," 2018. 3.

6) OECD, "Public consultation document - Addressing the Tax Challenges of the Digitalisation of the Economy," 2019. 2.

법을 통해 지속적인 관계를 맺는 관할권을 기준으로 소득을 배분하는 방안임

▶ 저세율국 소득이전 등으로 인한 과세회피방지 규정을 아래 2가지로 제시함

- 소득 산입 규정: 법인 소득이 최소세율로 과세되지 않을 경우, 법인의 주주에게 법인에 귀속되어야 할 세금의 지분율만큼 요구하는 규정임
- 세원잠식세: 소득 원천지국에 납부하는 세액이 유효세율 혹은 최소세율에 미달하는 경우, 공제 및 조세감면 혜택을 부인하여 원천지국의 과세권을 보호하는 규정임

■ OECD는 공청회 이후 2019년 5월 후속논의보고서⁷⁾를 발표함

- ▶ Pillar 1에서는 과세권 배분 및 고정사업장 규정 개정 방안, Pillar 2에서는 과세회피방지 규정 제정에 대하여 기술함
- ▶ Pillar 1의 첫 번째 논의로는 과세권 배분 규정을 통해 서비스 사용자 소재 국가에 더 많은 과세권을 배분하고자 수정된 잔여이익 분할법, 부분할당 방법, 지출액 기반 배분방법의 세 가지를 제시함
- ▶ 두 번째로 디지털 경제의 고정사업장 규정을 통해 새로운 원격 과세장소의 개념을 정립하고, 원격 과세장소의 판단 기준을 검토할 것을 제시함
- ▶ Pillar 2는 과세회피방지 규정을 통해 최소세율 미달 시 최소세율만큼 과세하기 위하여 소득산입 규정, 과세회피 지급액 과세 규정을 제시함

■ OECD는 두 가지 Pillar 접근법으로 과세방안을 마련한 데 이어, 2019년 10월 및 11월 Pillar 1. 통합접근법⁸⁾ 및 Pillar 2. 글로벌 최저한세⁹⁾를 다루는 공개협의문서를 발표함

- ▶ 이어서 2019년 11월, 12월 프랑스 파리에서 공청회를 진행하고 정부, 기업, 학계 등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함

■ 공청회를 통해 수렴된 의견을 바탕으로 2020년 1월 29~30일 프랑스 파리에서 IF¹⁰⁾ (Inclusive Framework) 운영위원회 및 총회를 개최하고 IF 성명서¹¹⁾를 발표함

7) OECD, "Programme of Work to Develop a Consensus Solution to the Tax Challenges Arising from the Digitalisation of the Economy," 2019. 5.
 8) OECD, "Public consultation document - Secretariat Proposal for a 'Unified Approach' under Pillar One," 2019. 10.
 9) OECD, "Public consultation document - Global Anti-Base Erosion Proposal ("GloBE") - Pillar Two," 2019. 11.
 10) BEPS 참여국을 확대하기 위하여 구축된 포괄적 이행체제이며, OECD 회원국 및 비회원국을 포함하여 현재 137개국이 참여 중임

- ▶ 137개국이 참여한 IF운영위원회는 2020년 말까지 2가지 Pillar 접근법으로 이루어진 국제적 디지털세 합의안을 도출해낼 것을 약속함
- ▶ 성명서는 2020년 말 최종 합의를 위한 기초로서 디지털세 장기대책에 관한 그간의 논의를 정리하고 기본 골격 및 향후 계획 등을 다룸
- OECD 사무국은 2020년 2월 사우디아라비아 리야드에서 G20 재무장관회의를 열어 디지털세 부과를 위한 기본 골격 합의안¹¹⁾을 발표하고 이를 승인함
 - ▶ 7월 베를린에서 열릴 IF 총회에서 Pillar 1과 관련한 핵심 정책사항을 합의하는 것을 목표로 OECD 사무국은 분야별 Working Party를 구성하여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고 있음
 - ▶ 더불어 OECD는 2가지 Pillar 접근법에 따른 세수효과를 분석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도출된 합의안에 따른 예비 결과를 발표함
 - Pillar 1에 따라 기존의 세수가 상당부분 새로운 과세권으로 재분배되며, 전 세계적으로는 약간의 세수 증가가 발생할 수 있음
 - Pillar 2에 따라 전 세계적으로 법인세가 증가할 수 있음
-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영향으로 프랑스 정부 및 OECD는 모든 물리적 회의의 중단을 선언했지만, 디지털세와 관련한 논의는 화상 회의를 통하여 계속하여 진행될 예정임
 - ▶ 모든 참여국과의 원격으로 회의를 진행하여 2020년 7월 IF 총회까지 합의안을 도출할 예정임

11) OECD, "Statement by the OECD/G20 Inclusive Framework on BEPS on the Two-Pillar Approach to Address the Tax Challenges Arising from the Digitalisation of the Economy," 2020, 1.

12) OECD, "OECD Secretary-General Tax Report to G20 Finance Ministers and Central Bank Governors," 2020, 2.



2 Pillar Approach의 주요내용

1 Pillar 1

- Pillar 1은 일정규모 이상 다국적기업의 글로벌 총이익의 일부를 시장소재지국에 과세권을 배분하는 것으로 후술하는 내용은 최종 합의안이 아니며, 합의를 위해 IF 운영위원회에서 논의 중인 사안임

 - ▶ 새로운 이익배분 기준을 Amount A, Amount B, Amount C 3구간으로 나누어 적용함
 - Amount A: 다국적기업의 초과이익 중 공식에 따라 산출된 일정 부분을 시장소재지국에 배분하여 새로운 과세권을 형성함
 - Amount B: 시장소재지국에서 발생하는 기본기능에 대하여 고정된 수익률로 보상함
 - Amount C: 기본기능을 넘어서는 특별한 기능에 대하여 시장소재지국에 추가적으로 보상함

- Amount A의 적용대상은 크게 디지털서비스사업과 소비자대상사업으로 나뉘며, 적용업종, 규모 기준, 과세연계점(Nexus) 기준을 모두 충족한 기업에 해당됨

 - ▶ 디지털서비스사업에는 온라인 플랫폼 서비스, 콘텐츠 스트리밍, 온라인게임, 클라우드 컴퓨팅 등이 포함되며, 소비자대상사업에는 컴퓨터, 가전, 휴대폰, 옷, 화장품, 사치품, 자동차, 프랜차이즈 등이 해당됨
 - ▶ 여러 단계의 기준금액을 설정하여 이를 모두 충족한 경우에만 Amount A 과세 대상이 됨
 - 글로벌 총 매출액 기준(7억 5천만유로)
 - 대상사업 부문의 총매출액 기준
 - 과세연계점 매출액 기준

- 시장소재지국 내에 중요하고 지속적인 참여가 발생하는 경우 새로운 과세연계점이 생성되는 것으로 보아 Amount A 과세대상 매출액을 배분함

- ▶ 소비자대상사업은 일정한 추가요소가 존재하는 경우에만 시장소재지국 내에 중요하고 지속적인 참여가 발생하는 것으로 판단함
- Amount A의 과세표준으로 사용될 이익의 지표는 연결재무제표의 세전이익(PBT)을 활용할 것이 제안됨
 - ▶ 국가별로 다른 회계기준상의 차이 조정 및 회계상 PBT와 세무상 PBT의 차이 조정을 고려해야 함
 - ▶ 연결재무제표의 PBT를 사용할 시 대상사업 부분별로 PBT를 구분하여 계산할 필요가 존재하며, 이는 행정상의 편의를 위하여 일정한 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기업에 한해 적용함
 - ▶ 과세연도의 손실이 발생하는 경우 이후 연도 과세금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이월결손금 규정을 함께 고려해야 함
- Amount A 과세대상 금액은 공식에 따라 산출된 초과이익에 일정 부분에 해당됨
 - ▶ 사업의 수익성이 일정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적용함
 - ▶ 디지털화된 사업 유형별로 공식에 적용되는 가중치를 다르게 설정할 수 있음
 - ▶ 사업 유형별로 시장소재지국에 배분될 배부기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함
- Amount B는 기본적인 마케팅 및 판매활동을 수행하는 기업에 대한 보수를 기존의 정상가격원칙에 기반하여 표준화된 수익률로 계산한 금액임
 - ▶ 이전가격의 행정절차를 간소화하고 납세협력비용을 줄이고 거래의 조세 확실성을 높이기 위함
 - ▶ 그러나 기본기능 범위 및 고정수익률에 대한 논의가 필요함
- Pillar 1 통합접근법의 적절한 이행을 위해 조세 확실성이 보장되어야 함
 - ▶ Amount A의 조세 확실성은 Amount A 금액 및 이행을 검토하는 대표패널을 구성하는 방안이 논의됨
 - ▶ Amount B와 C의 조세 확실성은 분쟁 방지, MAP, 중재, 다자간 강제해결 체계 등의 방식을 활용함

2 Pillar 2

■ Pillar 2는 Pillar 1에서 다루지 못한 잔존 BEPS 이슈를 해결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함

- ▶ 각 국가들이 BEPS 프로젝트 Action 1 권고사항을 원만히 이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다국적기업(특히 무형자산 의존성이 높은 디지털기업)에게는 세원잠식 및 소득이전의 조세회피 유인이 존재하는 것으로 보고 이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함

■ 글로벌 최저한세는 소득산입규칙(Income Inclusion Rule), 세원잠식비용 공제부인(Undertaxed Payment Rule), 과세권 전환규칙(Switch-over Rule), 조세조약 혜택 배제(Subject to Tax Rule)의 4개 규정으로 구성됨

▶ 소득산입규칙(Income Inclusion Rule)

- 해외 자회사 소득이 최저한세 이하로 과세되는 경우 최저한세율까지의 소득을 모회사 과세소득에 포함하여 과세함
- Pillar 2 제안의 가장 핵심이 되는 규정으로, 기존의 CFC 제도를 보완하는 방안임

▶ 과세권 전환규칙(Switch-over Rule)

- 조세조약상 국외원천소득(이자·배당 등)이 그 소득을 받는 자의 거주지국에서 면세되고 원천지국에서도 비과세·저율과세되는 경우 이중비과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규정임
- 위 경우 그 과세권을 거주지국으로 전환시켜 과세하고 원천지국에서 납부된 세액은 세액공제 적용함
- 조세조약에 따른 과소과세소득에 대한 변제 혜택을 중단함으로써 소득산입규칙을 보완하는 규정임

▶ 세원잠식비용 공제부인(Undertaxed Payment Rule)

- 세원잠식 해외지급금에 대한 과세 목적의 규정임
- 국외 특수관계인에게 지급된 금액이 그 수취인의 거주지국에서 비과세·저율과세되는 경우, 원천지국은 지급인의 거주지국에서 그 비용공제를 부인할 수 있도록 함

▶ 조세조약 혜택 배제(Subject to Tax Rule)

- 외국법인에 지급하는 금액이 그 외국법인의 거주지국에서 최저한세율 이하로 과세

- 되는 경우, 그 소득에 대하여 원천지국에서 조세조약 혜택을 부인함
- 해외 지급 소득에 대하여 체약 상대국에서 충분히 과세를 한 경우에만 조세조약의 혜택을 허용하자는 취지임

■ Pillar 1과는 달리, Pillar 2는 2019년 5월 Programme of Work를 통하여 위 기본 구조 틀에 관하여 전반적 합의가 이루어진 상태임

- ▶ 현재 2020년 최종 합의를 위하여 기술적인 세부 쟁점을 발전시키고 있음
 - 과세표준 산정 시 회계기준 이용 방안
 - 다국적기업의 총소득 산정 시 국외소득 통산 범위(blending)
 - 적용 배제(carve-out) 및 최저기준점(threshold) 설정 등

IV 국가별 디지털서비스세의 현황 및 국제적 합의에 대한 반응

1 디지털서비스세(DST) 현황

- 디지털 경제에 대한 조세와 관련하여 디지털서비스세를 부과하는 국가와 특정 디지털 활동에 대하여 원천징수세, 소득세 등 일반과세의 형태를 취하는 국가가 있으며, 단일의 디지털서비스세 도입을 반대하는 국가가 있음
- EU 회원국들은 OECD에서 공문화 전 2017년부터 디지털서비스세의 도입을 본격적으로 논의하여, 현재 합의를 보류한 상태이기는 하지만 가장 활발한 반응을 보이고 있음
 - ▶ EU 집행위원회는 2018년 3월 21일 디지털 경제 조세와 관련하여 디지털 패키지를 발간하여 법인세법을 수정하는 방안인 제1안과 온라인 광고, 디지털 중개활동, 데이터 전송에 3%의 디지털서비스세를 임시적으로 부과하는 제2안을 제안하였음¹³⁾
 - 프랑스와 독일은 공동 온라인 광고에만 과세하고 2021년으로 시행시기를 연기하는 완화된 내용의 공동 중재안을 제시한 바 있음¹⁴⁾
 - ▶ 2019년 3월 EU 이사회 논의 등 수차례 합의 시도가 있었으나 회원국 간 이해관계 차가 존재하여 디지털서비스세 합의안을 도출하지 못하고 EU 재무장관 회의는 2019년 12월 13일 OECD를 통한 국제적 합의안을 도출하기로 하고¹⁵⁾ EU 의회는 2019년 12월 18일 디지털 경제와 관련하여 OECD의 BEPS를 지지하는 결의안을 발표함¹⁶⁾

13) EU 집행위원회, https://ec.europa.eu/commission/presscorner/detail/en/IP_18_2041, Digital Taxation: Commission proposes new measures to ensure that all companies pay fair tax in the EU, 검색일자: 2020. 4. 8

14) KOTRA 홈페이지, 디지털세 도입관련 EU현황, <http://news.kotra.or.kr/user/globalBbs/kotranews/5/globalBbsDataView.do?setIdx=244&dataIdx=179407>, 검색일자: 2020. 4. 8

15) Bloomberg Tax, https://www.bloomberglaw.com/product/tax/aqb_chart/50702395bf8eabdab8866a0a5bb7cb78, 검색일자: 2020. 4. 9

16) EU 의회, European Parliament resolution of 18 December 2019 on fair taxation in a digitalised and globalised economy: BEPS 2.0 (2019/2901(RSP)), https://www.europarl.europa.eu/doceo/document/TA-9-2019-0102_EN.pdf, 검색일자: 2020. 4. 9

- 영국, 프랑스 등 유럽 국가 중 일부는 EU의 디지털서비스세 제안 이후 EU 지침에 기반한 디지털서비스세 법안을 도입하고 있으나 실질적인 징수는 2020년 이후로 미루고 있으며, 향후 OECD의 합의안이 도출되는 경우 수정 및 폐지를 염두에 두고 있음

 - ▶ 영국은 2020년도 예산안에 따라 2020년 4월 1일부터 소셜 미디어 서비스(Social media Service)¹⁷⁾, 인터넷 검색 엔진, 온라인 마켓의 영국 사용자로부터 파생된 수익에 대하여 2%의 디지털서비스세를 부과하는 디지털서비스세를 시행함¹⁸⁾
 - 디지털서비스세의 납부 기한은 사업 연도가 끝난 후부터 9개월 이후이므로 2020년 12월 31일에 사업 연도가 끝나는 기업은 2021년 10월 1일에 납부하게 될 것임¹⁹⁾
 - ▶ 프랑스는 2019년 7월 25일 3%의 세율로 부과하는 디지털서비스세 법안을 관보에 게재하였으며 이 법안은 2019년 1월 1일부터 소급 적용됨²⁰⁾
 - 미국의 반발로 인하여 프랑스 재무부 장관은 2020년 1월 22일 2020년도 디지털서비스세 징수를 2020년도 12월까지 유예한다고 발표함
 - 프랑스 과세관청은 2020년 3월 23일 및 30일 디지털서비스세의 범위 등을 규정한 지침을 발간하여 2020년도 디지털서비스세 징수를 유예하고 과태료나 가산세가 적용되지 않음을 확인함²¹⁾
 - ▶ 이탈리아는 2019년 11월 6일 2020년도 예산안을 통해 온라인 광고, 디지털 인터페이스, 데이터 전송에서 발생한 매출에 대하여 3%의 세율로 부과되는 디지털서비스세를 도입함²²⁾²³⁾
 - ▶ 오스트리아는 2020년 1월 1일부터 디지털 인터페이스의 온라인 광고 서비스 또는

17) 2019년도 디지털서비스세 초안의 소셜 미디어 플랫폼(Social Media Platform)을 소셜 미디어 서비스(Social Media Service)로 용어를 변경하였는데, 소셜 미디어 서비스에 해당하기 위하여는 사용자가 다른 사용자가 만든 콘텐츠를 이용할 수 있는지 여부가 중요한 요건임

18) 영국 정부, https://assets.publishing.service.gov.uk/government/uploads/system/uploads/attachment_data/file/871799/Budget_2020_Web_Accessible_Complete.pdf, 검색일자: 2020. 4. 9

19) <https://home.kpmg/us/en/home/insights/2020/03/tnf-uk-digital-services-tax-effective-1-april-2020.html>, 검색일자: 2020. 4. 8

20) 프랑스 법률 정보 시스템, LOI n° 2019-759 du 24 juillet 2019 portant création d'une taxe sur les services numériques et modification de la trajectoire de baisse de l'impôt sur les sociétés (1) <https://www.legifrance.gouv.fr/affichTexte.do?cidTexte=JORFTEXT000038811588&fastPos=1&fastReqId=1512628583&categorieLien=id&oldAction=rechTexte>, 검색일자: 2020. 4. 9

21) https://www.ey.com/en_gl/tax-alerts/france-issues-comprehensive-draft-guidance-on-digital-services-tax, 검색일자: 2020. 4. 16

22) https://assets.kpmg/content/dam/kpmg/it/pdf/2020/02/WEB_Digital_Services_Tax_2020_v2.pdf, 검색일자: 2020. 4. 9

23)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주요국의 조세동향」 2020-1호

오스트리아 내의 소프트웨어 또는 웹사이트로부터 창출된 매출에 대하여 5%의 디지털서비스세를 부과하며, 디지털서비스세에 대한 납세 협력 절차로 연간소득신고의 온라인 제출 의무화, 온라인 디지털 절차의 설명, 온라인 광고업자의 웹 양식 이용을 위한 등록 요구 등을 담은 실행 법령을 제정함²⁴⁾

▶ 헝가리는 헝가리 내에서 방송으로 송출되거나 지면에 의한 광고에 의해 발생한 매출에 대하여 7.5%의 세율로 디지털광고세를 부과하며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하였으나 2022년 12월 31일까지 0%까지 경감된 세율로 적용 가능함

- 디지털광고세와 관련하여 유럽사법재판소(CJEU)는 2020년 3월 3일 구글과 헝가리 과세관청과의 소송(Google Ireland Ltd. C-482/18)²⁵⁾에서 EU법이 외국 광고 서비스 공급자의 디지털광고세 신고 의무를 배제하지 않으나, 헝가리가 충분한 시간을 부여하지 않고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은 EU법에 위반된다고 판결함²⁶⁾

▶ 터키 정부는 2019년 10월 24일 디지털서비스세 법안을 의회에 제출하여 디지털 플랫폼의 모든 디지털서비스 제공 및 관리로 인한 총수익에 대하여 7.5%의 디지털서비스세를 도입하였으며, 대통령은 7.5%의 세율을 1%로 인하하거나 15%로 인상할 수 있는 권한이 있고 법안은 2020년 3월부터 발효됨

▶ 튀니지는 2020년 1월 1일부터 비거주 기업의 컴퓨터 응용 프로그램 및 디지털서비스 판매에 3%의 디지털서비스세를 부과함

■ 별도의 디지털서비스세를 도입하지 않고 기업의 디지털 활동에 대하여 일반과세의 형태로 소득세 또는 원천징수세를 부과하거나 디지털 기업의 고정사업장을 인정하는 국가들이 있음

▶ 그리스는 2019년 7월 16일 디지털 플랫폼에 대한 과세와 관련한 회람을 게시하여, 디지털 플랫폼을 이용한 공유 경제에서 단기 임대로 인한 소득을 과세 대상에 포함함

▶ 슬로바키아는 2018년 1월 1일부터 슬로바키아 내 운송 및 숙박 서비스를 제공하며 고정사업장으로 등록되지 않은 해외 디지털 플랫폼에 지불한 액수에 대하여 5%의 원천징수세를 부과함

24)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주요국의 조세동향」, 2019-12호

25) 구글은 헝가리 법에 따른 디지털광고세 신고를 하지 않아 헝가리 과세관청은 1,000만포인트의 과태료를 부과하였고, 며칠 후 추가적으로 100억포인트의 최대 과태료를 부과함

26) KPMG 홈페이지, <https://home.kpmg/us/en/home/insights/2020/03/tmf-hungary-tax-advertising-not-precluded-penalty-regime-not-compatible-eu-law.html>

- ▶ 터키는 2019년 1월 1일부터 디지털 광고 지불액에 서비스 제공자 및 중개업체에 15%의 원천징수세를 부과함
 - ▶ 이스라엘은 2016년 4월 12일부터 이스라엘 거주자와 온라인 거래를 통해 수입을 얻는 외국 법인은 이스라엘에 고정사업장을 생성하며, 상당한 디지털 경제행위가 발생하는 경우 과세함
 - ▶ 인도는 2016년 6월 1일부터 온라인 광고 총지불액에 6%의 균등세를 부과하고 있으며, 디지털세와 관련한 국제적 합의가 이루어지면 폐지할 예정임
- 스페인, 체코, 벨기에 등의 국가에서는 디지털서비스세 법안을 의회에 제출하여 논의가 진행 중이거나 부결되었으며, 이외에도 다수의 국가에서 디지털서비스세 도입과 관련한 공식적인 의견을 발표함
- ▶ 스페인은 2020년 2월 28일 온라인 광고 서비스, 온라인 광고 매매, 사용자 데이터 매매로 발생한 매출에 3%의 세율로 디지털서비스세를 부과하는 법안을 의회에 제출하였고 이 법안은 2020년 말에 발효될 것으로 예상되며, 국제적 합의가 이루어지면 이를 법안에 반영할 계획임²⁷⁾
 - ▶ 체코는 2019년 11월 18일 타깃 광고 캠페인, 다자간 디지털 인터페이스의 사용, 사용자 데이터의 공급 서비스에 7%의 세율로 과세되는 법안을 의회에 제출하였음
 - ▶ 벨기에에는 2019년 1월 23일 타깃 광고의 디지털 인터페이스, 사용자들이 상호작용할 수 있도록 하는 다자간 디지털 인터페이스, 사용자 데이터 이전에 대한 3%의 디지털 서비스세 및 법인세를 부과하는 법안을 의회에 제출하여 논의한 바 있으나 부결됨
 - ▶ 캐나다는 사용자 기반 광고 서비스 및 디지털 중개서비스의 매출에 3%의 연방정부 소득세 형태로 부과할 예정이라고 공고한 바 있음
 - ▶ 슬로베니아 정부는 2019년 6월 EU 지침을 기초로 한 디지털서비스세를 2020년 4월 1일에 도입하여 2020년 9월 1일에 실행하는 법안을 국회에 제출할 것을 제안하였음
- 단일의 디지털서비스세 법안 도입에 대하여 반대하는 국가들은 국제적인 합의안 도출을 우선하여야 한다는 입장임
- ▶ 독일 재무부 내 권고위원회는 2018년 9월 디지털서비스세 도입은 법적 문제점을 불러일으키고 그것이 창출할 경제적 효과도 의문이라는 이유로 반대함

27)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주요국의 조세동향」, 2020-3호

- ▶ 스위스 국제 재정 사무국은 2019년 1월 15일 디지털 경제 조세와 관련하여 장기간의 해결책을 도출해야 하며, EU가 제안하는 매출에 대한 과세안과 같은 일시적 방안을 도입할 계획은 없다는 입장을 발표함

■ 특히 미국은 구글, 애플 등 디지털서비스세에 영향을 크게 받는 기업들을 다수 보유한 국가로 디지털서비스세 도입에 가장 적극적으로 반대하는 입장을 보여주고 있음

- ▶ 미국 상원 재정위원회는 2018년 10월 18일 EU 집행위원회가 제안한 디지털서비스세를 관련 기업을 차별하고 국제 조세 시스템을 약화시키는 조치로 간주하여 이 제안을 폐기할 것을 촉구하는 서한을 EU 집행위원회에 발송함²⁸⁾

- 서한은 디지털서비스세는 이중 과세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으며, 일관된 집행이 어렵고 납세자 및 세무 당국에 큰 비용이 소요될 수 있는 동시에 WTO 의무를 위반하였다는 내용을 담고 있음

- ▶ 또한 미국은 프랑스와 체코의 디지털서비스세는 특정 미국 기업들을 대상으로 하는 불공정한 과세 조치이므로 해당국에 보복 관세를 적용하겠다는 강력한 입장을 표명하기도 함

- 미국은 프랑스에 2020년 1월 중순부터 24억달러 규모의 프랑스산 수입품에 대한 최대 100%의 보복관세를 예고하는 등 지속적인 갈등 끝에 프랑스는 2020년도 디지털서비스세 징수를 1년 유예함²⁹⁾

- 미국은 2020년 1월 22일 체코 의회가 제출한 디지털서비스세 초안은 미국 기업에 대한 차별적 조치이며 7%의 세율은 과도하다는 입장을 서한을 체코 의회 예산위원회에 발송함³⁰⁾

- 미국은 해당 세율이 변동없이 적용될 경우 관세 보복과 같은 대응 조치가 있을 것을 경고함³¹⁾
- 이에 체코 재무부 장관은 세율을 5%로 인하하는 것을 논의할 예정이며, 법안의 발효일 연기 또한 고려중이라고 발표함³²⁾

28) 미국 상원 재정위원회, <https://www.finance.senate.gov/imo/media/doc/2018-10-18%20OGH%20RW%20to%20Juncker%20Tusk.pdf>, 검색일자: 2020. 4. 8

29) KOTRA 홈페이지, 미국-프랑스 디지털세 둘러싼 갈등 재점화, <http://news.kotra.or.kr/user/globalBbs/kotranews/5/globalBbsDataView.do?setIdx=244&dataIdx=179321>, 검색일자: 2020. 4. 8

30) Plan for EU's Highest Digital Tax May Ease Under U.S. Pressure(2020. 2. 27) Bloomberg Tax

31) Reuter, <https://www.reuters.com/article/us-europe-digitaltax-czech/u-s-warns-of-possible-counter-measures-against-czech-digital-tax-idUSKBN1ZN0ZN>, 검색일자: 2020. 4. 9

32) Plan for EU's Highest Digital Tax May Ease Under U.S. Pressure(2020. 2. 27) Bloomberg Tax

〈표 IV-1〉 유럽 국가의 디지털서비스세 현황

국가	도입 상황	유형	요율	내 용
영국	도입	디지털 서비스세	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20년 예산안에 따라 2020년 4월 1일부터 영국 사용자들에 대한 인터넷 검색 엔진, 소셜 미디어 서비스 및 온라인 마켓 매출(글로벌 연 매출 5억파운드 이상, 영국 내 매출 연 2,500만파운드 이상인 기업에 적용)에 대하여 2%의 세율로 과세함 - 온라인 마켓 범위 수정 및 디지털서비스세 도입 국가 목록인 화이트리스트 작성 예정 - OECD의 디지털서비스세 다자간 합의 마련 시 개편 가능성 존재하며, 영국 재무부는 2025년에 디지털서비스세에 대하여 다시 평가할 의무가 있음
프랑스	도입	디지털 서비스세	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프랑스 정부는 2019년 7월 25일 디지털서비스세 법안을 관보에 게재하고, 법안에 따르면 2019년 1월 1일부터 소급 적용하기로 함 - 사용자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타겟 광고의 공급, 사용자 사이의 중개 서비스의 공급, 타겟 광고 목적으로 수집한 데이터의 판매와 같은 디지털서비스(글로벌 총매출 연 7억 5천만유로 이상, 프랑스 내 연 2,500만유로 이상인 기업에 적용)에 대하여 3%의 세율로 과세함 - 프랑스 재무부 장관은 2020년 1월 22일 프랑스의 디지털 서비스세 도입에 반발한 미국의 관세 보복 철회를 조건으로 2020년도 디지털서비스세의 납부를 2020년 12월까지 유예하나, 2019년도 디지털서비스세 납부는 유예되지 않는다고 발표함 - 프랑스 과세관청은 2020년 3월 23일 2019년도 디지털서비스세 납부와 관련하여 과세 대상 범위 등을 규정한 지침을 발간함
이탈리아	도입	디지털 서비스세	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19년 11월 6일 디지털서비스세가 포함된 2020년 예산안이 관보에 게재됨 - 디지털 인터페이스에서의 광고, 사용자들이 물품과 서비스를 매매할 수 있는 다자간 디지털 인터페이스, 디지털 인터페이스 사용에서 수집된 사용자 데이터 이전을 통해 창출된 매출(글로벌 총매출 7억 5천만유로 이상, 이탈리아 내 매출 연 550만 유로 이상인 기업에 적용)에 대하여 3%의 세율로 과세함 -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었으며, 국제적인 합의 도출 후 디지털서비스세는 자동적으로 폐지됨
헝가리	도입	디지털 광고세	7.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헝가리 내에서 방송으로 송출되거나 지면에 의한 광고에 의해 발생한 매출(광고 매출이 연 1억포인트 이상인 기업에 적용)에 대하여 7.5%의 세율로 과세함 -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되며, 2022년 12월 31일까지 0%까지 경감 세율이 적용 가능함

〈표 IV-1〉 의 계속

국가	도입 상황	유형	요율	내 용
오스트리아	도입	디지털 서비스세	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디지털 인터페이스의 광고 서비스 또는 오스트리아 내의 소프트웨어 또는 웹사이트로부터 창출된 매출(글로벌 총매출 연 7억 5천만유로 이상, 오스트리아 내 매출 연 2,500만유로 이상 기업에 적용)에 대하여 5%의 세율로 과세함 - 오스트리아 내에 IP 주소가 있는 기기를 사용하여 디지털 광고 서비스를 받고, 그 광고가 오스트리아 사용자를 대상으로 하는 경우 오스트리아에서 이루어진 디지털 광고 서비스로 간주됨 -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며, 오스트리아 재무부는 2020년 2월 24일 디지털서비스세의 등록 및 납부 규칙에 대한 정보를 발간함
그리스	도입	일반 과세	미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그리스 과세관청은 2019년 7월 16일 디지털 플랫폼에 대한 과세와 관련한 회람을 온라인에 게시함 - 디지털 플랫폼을 이용한 공유 경제에서 단기 임대로 인한 소득이 과세 대상임 - 회람은 관리자의 자산 등록 및 신고 의무, 자산 및 수익자 등록 절차, 신고 절차, 등록 번호 없이 디지털 플랫폼에 자산을 게시하는 경우의 과태료, 수수료 또는 보너스 수익을 과세 소득에 산입하는 내용을 담고 있음
스페인	제안 (의회 제출)	디지털 서비스세	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스페인 정부는 2020년 2월 28일 디지털서비스세 법안을 의회에 제출하였으며, 국제적 합의가 이루어지면 이를 법안에 반영할 것이라고 함 - 온라인 광고 서비스, 온라인 광고 매매, 사용자 데이터 매매로 발생한 매출(글로벌 총매출 연 7억 5천만유로 이상, 스페인 내 매출 연 300만유로 이상인 기업에 적용)에 대하여 3%의 세율로 과세하며, 기업 내의 데이터 이전은 대상에서 제외됨 - 0.5%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과태료의 최대 한도는 40만유로를 한도로 하고, 2020년 2분기와 3분기의 디지털서비스세 신고 및 납부 기한은 2020년 12월 20일 이후가 될 것임 - OECD의 합의가 도출되지 않으면 2020년 말에 발효될 것으로 예상됨
체코	제안 (의회 제출)	디지털 서비스세	7%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체코 정부는 2019년 11월 18일 의회에 디지털서비스세 법안을 제출하였으며, 하원에서 논의가 진행 중임 · 미국의 보복 관세 적용 예고에 체코 재무부 장관은 세율을 5%로 인하하는 것을 논의할 계획이며 법안의 발효일 연기 또한 고려중임

〈표 IV-1〉 의 계속

국가	도입 상황	유형	요율	내 용
체코	제안 (의회 제출)	디지털 서비스세	7%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타깃 광고 캠페인, 다자간 디지털 인터페이스의 사용, 사용자 데이터의 공급과 같은 서비스(글로벌 총매출 연 7억 5천만 유로 이상, 체코 내 매출 연 100만코루나 이상인 기업에 적용)에 7%의 세율로 과세됨 · 유럽 내 총매출에서 디지털서비스 매출이 차지하는 비율이 10% 미만인 경우 디지털서비스세는 면제되나 신고 의무는 있음 - 법안은 2020년 중반부터 2024년까지 임시 적용될 것으로 예상됨
벨기에	제안 (의회 부결)	디지털 서비스세/ 디지털 고정 사업장	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19년 초 다음과 같은 내용의 디지털서비스세 법안 초안이 의회에 제출되었으나 부결됨 · 사용자 데이터 판매와 같은 활동으로 발생한 매출(글로벌 총매출 연 7억 5천만유로 이상, 벨기에 내 매출 연 5,000만 유로 이상인 기업에 적용)에 대하여 3%의 세율로 과세 · 물리적 실제 없이 벨기에 내에서 디지털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에 대하여 법인세 과세
슬로바키아	도입	원천세	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18년 1월 1일부터 슬로바키아에서 운송 및 숙박 서비스를 제공하며 고정사업장으로 등록되지 않은 해외 디지털 플랫폼에 지불한 액수에 대하여 5%의 원천세를 과세함
	공식 발표	디지털 서비스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슬로바키아 재무부는 광고, 온라인 플랫폼, 사용자 데이터 판매와 같은 서비스의 공급으로 인한 비거주자의 매출에 대한 디지털서비스세 도입안을 제안함
노르웨이	공식 발표 (도입 예정)	디지털 서비스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20년 4월 1일부터 전자상거래와 관련한 부가가치세 제도가 발효됨 - OECD가 2020년 안에 디지털 과세 합의안을 도출하지 못하는 경우 2021년 국내법을 통해 디지털서비스세를 도입할 예정임
슬로베니아	공식 발표	디지털 서비스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무부는 2019년 6월 슬로베니아 정부가 디지털서비스세를 도입하는 법안을 국회에 제출할 것을 제안하였다고 발표함 - 법안은 EU 지침과 같으며 2020년 4월 1일에 도입하여 2020년 9월 1일부터 실행되는 내용임
루마니아	공식 발표	디지털 서비스세/ 디지털 고정 사업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루마니아 정부는 EU 집행위원회가 제안한 두 가지 방안 (상당한 디지털 실체에 대하여 법인세 부과 및 특정 디지털서비스 공급으로부터 창출된 매출에 디지털서비스세를 부과) 모두 보충성 원칙 및 비례의 원칙에 부합하므로 이를 지지한다는 내용을 관보에 게재함

〈표 IV-1〉 의 계속

국가	도입 상황	유형	요율	내 용
라트비아	공식 발표	디지털 서비스세	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라트비아 의회는 2018년 1월 14일 디지털 거래와 관련하여 라트비아 국세청이 온라인 플랫폼의 거래를 추적할 수 있는 능력, 온라인 거래를 수행하는 조인트 벤처를 포함한 구조적 유닛(Structural Unit)에 대한 정의, 경제적 활동으로서 광고만을 수행하는 비거주자 웹사이트에 대한 규칙 등을 포함한 법안 초안을 발간함 - 라트비아 정부는 3%의 디지털서비스세를 부과하는 국가의 세수 증가에 대한 연구를 Primus Derling 로펌에 의뢰하였고, 2020년 1월 연간 1,700만유로에서 3,000만유로를 확보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함
독일	공식 발표 (반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독일 재무부 및 재무부 장관은 디지털 광고 서비스에 대한 지불액에 원천징수세를 부과하지 않기로 발표하였고, 이와 같은 내용을 관보에 게재함 - 독일 재무부 내 권고위원회는 2018년 9월 EU 집행위원회가 제안한 디지털서비스세 도입은 법적 문제점을 불러일으키고 그것이 창출할 경제적 효과도 의문이라는 이유로 디지털서비스세 도입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발표함 - 독일 재무부 국제조세국장 및 OECD 재정위원회 의장은 pillar 2의 조세 최저 기준이 유지되는 한 pillar1과 관련한 OECD의 합의안 도출에 다른 국가들과 협력하겠다고 발표함
덴마크, 핀란드, 스웨덴	공식 발표 (보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덴마크, 핀란드, 스웨덴의 재무부 장관들은 2018년 6월 1일 디지털 경제와 관련하여 가치가 창출되는 곳에서 과세되어야 하며, OECD의 주도로 국가 간 합의에 기초한 해결 방안이 강구되어야 한다는 내용의 공동성명을 발표함 - 덴마크 재무부 장관은 2020년 1월 27일 국제적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EU의 합의 방안을 지지하겠다고 발표함
폴란드	공식 발표 (보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폴란드 재무부 차관은 2019년 5월 디지털서비스세 도입 계획을 발표함 - 미국 부통령의 폴란드 방문 이후 폴란드 수상은 디지털서비스세와 관련하여 진행하는 상황은 없다고 발표하였는데, 이는 폴란드 정부가 2019년 6월 EU 지침에 따르는 디지털서비스세를 도입하는 공식적인 법안을 발표할 것을 기대했던 폴란드 재무부의 입장과 반대됨 - 폴란드 정부는 법안을 제정하기보다는 EU/OECD 합의안에 협력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음
스위스	공식 발표 (반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스위스 국제 재정 사무국은 2019년 1월 15일 디지털 경제 조세와 관련하여 장기간의 해결책을 찾고 있으며, EU가 제안하는 매출에 대한 과세안과 같은 일시적 방안을 도입할 계획은 없다는 입장을 발표함

자료: KPMG, "Taxation of the digitalized economy," updated March 13, 2020 재정리

〈표 IV-2〉 미주 국가의 디지털서비스세 현황

국가	도입 상황	유형	요율	내 용
미국	공식 발표 (반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프랑스의 미국 기업에 대한 디지털서비스세 부과 관련 논쟁이 이어져 왔으나, 다자간 합의가 완료될 때까지 부과를 연기함 - 미 재무부 장관은 OECD 사무총장에게 서한을 통해 Pillar1은 세이프하버 체제하에서 대상 기업이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미국의 GILTI 제도가 Pillar2와 유사한 솔루션이므로 디지털세 도입을 반대하는 입장을 표명함
멕시코	도입	원천세	요소별 상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20년 6월 1일부터 테스트(뉴스 및 정보 등), 온라인 강의, 멀티미디어 콘텐츠 다운로드 또는 액세스와 같은 디지털서비스를 제공하는 외국인 서비스 제공자들은 멕시코에서 원천징수세(WHT) 부과 업체로 등록해야 함 - 원천징수세 등록 업체들은 디지털 플랫폼은 원천세의 의무를 지니며, 상품 또는 서비스 디지털 거래와 관련하여 세금이 원천 징수된 익월 17일까지 신고를 완료해야 함
우루과이	도입	디지털서비스 수입에 대한 일반과세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18년 1월 1일부터 디지털 경제와 관련된 비즈니스 관련 서비스에 대해서는 관할 지역이 외국이더라도 우루과이에서 소득세를 부과하고 있음
코스타리카	도입	일반과세 (여행자 렌탈서비스)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관광 렌탈 서비스 제공 시 거래 회사가 세금을 납부하도록 법률상 규정함 · 중개기관은 정부기관이 요구하는 정보를 제공하고, 해당 세금을 원천징수 및 납부해야 함 · 코스타리카 소재 여부에 관계없이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거래하는 모든 회사에 해당 세금을 적용함
캐나다	공식 발표	디지털 서비스세	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프랑스의 DST를 벤치마킹하였으며, 3%의 연방정부 소득세 형태로 부과할 예정임 - 캐나다 국내 매출 4천만달러 이상, 글로벌 매출 10억달러 이상인 사용자 기반 광고 서비스 및 디지털 중개서비스에만 적용됨

자료: KPMG, "Taxation of the digitalized economy," updated March 13, 2020 재정리

〈표 IV-3〉 오세아니아 국가의 국가별 디지털서비스세 현황

국가	도입 상황	유형	요율	내 용
뉴질랜드	공식 발표 (보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무부 장관은 2019년 8월 향후 18개월간 정부의 조세정책에 대해 논의하면서, DST의 채택 여부는 OECD의 다자간 접근 결과에 따라 결정할 것으로 언급함

자료: KPMG, "Taxation of the digitalized economy," updated March 13, 2020 재정리

〈표 IV-4〉 아시아 국가의 디지털서비스세 현황

국가	도입 상황	유형	요율	내 용
대만	도입	원천세	미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17년 1월 1일부터 대만 내 고정사업장이 없는 업체 (ESS 제공업체)가 대만 고객에게 제공한 디지털서비스 (온라인 광고 혹은 온라인 게임, 비디오, 오디오 방송, 영화, TV시리즈, 음악 및 온라인 플랫폼 서비스)에 대한 수입은 디지털 경제 소득세 제도의 적용을 받음 - 서비스 수혜자가 국내 기업인 경우 총 지불 금액에 대해 원천징수세가 적용되며, 원천징수 신고서를 제출해야 함 - B2C로 파생된 수익의 경우, ESS 제공 업체는 대만 세무 당국에 세금신고서를 제출하여 과세 대상 소득을 자체 보고하고 납부해야 함
인도네시아	도입	디지털 고정사업장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도네시아 정부는 인도네시아의 디지털 경제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외국 기업의 경우 인도네시아에 실제로 사업장이 존재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과세가 가능하게 하는 새로운 규정을 발표함 - 본 규정은 2019년 11월 25일부터 발효되며, 세부 내용은 추후 결정함
말레이시아	도입	원천세	요소별 상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비거주 디지털 광고주에게 지불하는 금액은 비거주자가 말레이시아에 고정사업장 또는 사업체가 없는 경우 원천징수 대상이 됨 - 원천징수세 적용 규칙은 지불이 로열티인지 혹은 비거주자 서비스로 간주되는지에 따라 상이하게 적용됨 - 국제청이 개정한 전자상거래 지침에는 ① 전자상거래의 정의 및 범위, 디지털 통화, 상품권 및 로열티 ② 전자상거래 비즈니스 모델의 확장 예시 ③ 전자상거래에서 파생된 소득에 대한 과세 ④ 비거주자가 수령하는 특별 소득의 범위와 조세채무 등의 내용이 포함됨
베트남	도입	원천세	요소별 상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20년 7월 1일부터 상업 은행은 베트남에서 전자상거래 사업을 수행하고 해당 활동으로부터 베트남 내에서 수입을 창출하는 외국 기관 및 개인을 대신하여 세금을 원천징수하고 납부해야 함 - 베트남에 고정사업장이 없는 전자상거래 및 기타 디지털 기반 비즈니스의 비거주 사업자는 베트남에서 과세 업체로 등록하고 세금을 신고 및 납부해야 함
이스라엘	공식 발표	디지털 서비스세	3~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스라엘 재무부와 세무관청은 온라인 거래 수익에 대해 3~5%의 세금을 도입하는, 프랑스의 DST를 모델로 하는 세제 도입을 고려하고 있음
	도입	디지털 고정사업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16년 4월 12일부터 이스라엘 거주자와 온라인 거래를 통해 수입을 얻는 외국 법인은 이스라엘에 고정사업장을 생성하며, 상당한 디지털 경제 행위가 발생하는 경우 이스라엘에서 과세됨

〈표 IV-4〉 의 계속

국가	도입 상황	유형	요율	내 용
파키스탄	도입	원천세	5%	- 2018년 7월 1일부터 온라인 광고, 웹사이트의 디자인·생성·호스팅 또는 유지·보수, 디지털 콘텐츠의 업로드·저장·배포, 온라인 데이터 수집 및 처리를 위한 시설 또는 서비스 제공과 같은 파키스탄 사용자에게 대한 해외 디지털서비스 관련 지불액에 대해 5%의 원천징수세가 도입됨
터키	도입	원천세	15%	- 2019년 1월 1일부터 디지털 광고 지불액에 대해 서비스 제공자 및 중개업체에 15%의 원천징수세를 부과함 - 터키 국세청은 원천징수의 범위에 대한 세부사항을 제공하는 Communiqué No. 17를 발간함
	도입	디지털 서비스세	3%	- 2020년 3월부터 디지털 플랫폼의 모든 디지털서비스의 제공 및 관리로 인한 총수익에 대해 7.5%의 DST가 부과됨 - 그러나 터키 매출 2천만리라(약 3.14만유로) 및 글로벌 매출 7억 5천만유로를 초과하지 않는 디지털서비스에서 발생한 수익은 면제됨 - 대통령은 7.5%의 요율을 1%로 인하하거나 15%로 인상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짐 - 세무 당국은 제안된 지침에 따라 2020년 2월 5일 초안을 발표하고, 2월 28일 DST 관련 안내서와 함께 공개의견서를 요청함
싱가포르	공식 발표			- 2017년 싱가포르 법무부 장관은 디지털 경제에 대한 과세에 대해 연설에서, 싱가포르는 ① 사업체에 대한 과세 확실성, ② 전통적인 비즈니스 모델과 디지털 비즈니스 모델의 중립적인 과세, ③ 디지털 경제 과세 관련 문제에 대한 국제적 합의를 목표로 하고 있음을 밝힘
인도	제안	디지털 고정사업장	-	- 2018년 인도 국내세법에 유의미한 경제적 입지(SEP) 개념을 도입하고 이에 기인한 소득은 인도에서 과세해야 한다는 규정을 마련하였으나, 조세조약상 고정사업장의 제한적 정의로 인해 실질적인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기존 조약에 따른 과세를 유지함 - 이에 따라 2021~2022년까지 SEP의 본격적 도입을 연기하며, OECD 합의 도출 후 디지털 경제에 대해 업데이트된 계획을 준비할 예정임 · 해당 회계연도부터 특정 디지털 광고, 데이터 교환 활동에서 파생된 수입까지 소득 범위를 확대할 수도 있음
	제안			- 2020년 4월 1일부터 전자상거래 플랫폼 운영자는 디지털(전자)시설 또는 플랫폼을 통해 제공되는 상품과 서비스 총 판매액에 대해 1%의 세금을 원천징수함

〈표 IV-4〉 의 계속

국가	도입 상황	유형	요율	내 용
인도	제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품 구매자나 서비스 수혜자가 직접 지불한 모든 금액을 총판매액으로 간주함 - 전자상거래 운영자는 전자상거래를 위한 디지털(전자) 시설 또는 플랫폼을 소유, 운영, 혹은 관리하는 사람으로 정의함
	도입	형평세	6%	<ul style="list-style-type: none"> - 6%의 균등세는 온라인 광고 총지불액이 10만루피를 초과하는 인도 기업과 외국 법인(고정사업장 존재 여부 관계없음)에 모두 적용되고 있음 - 형평세는 2016년 6월 1일부터 시행되어 왔으며, 디지털세 관련 국제적 합의가 이루어지면 폐지할 예정임
태국	제안	원천세	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태국 정부는 상품 및 서비스의 전자 상거래 공급(온라인 광고, 게임, 쇼핑 등)에 대해 5%의 원천징수 제도를 제안함 - 관련 재정 기관은 세금을 원천 징수하고 송금할 책임이 있음

자료: KPMG, "Taxation of the digitalized economy," updated March 13, 2020 재정리

〈표 IV-5〉 아프리카 국가의 디지털서비스세 현황

국가	도입 상황	유형	요율	내 용
이집트	공식 발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집트 재무부는 2020년 예산안 초안에서 디지털 경제의 과세 조치를 강화할 계획을 발표함
나이지리아	도입	상당한 규모의 경제행위 발생 시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20년 Finance Bill에서 유의미한 경제적 입지(SEP)를 디지털서비스 및 전자 상거래 부문에서 활동하는 비거주 기업에 대한 과세 기초 원칙으로 도입함
케냐	도입	디지털 수입에 대한 일반과세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19년 11월 7일 재정법 2019에서 '디지털 시장을 통해 발생하는 소득'을 과세 가능한 소득으로 규정함 - 또한 디지털 시장은 '전자 수단을 통해 구매자와 판매자 간 상품 및 서비스의 직접 거래를 가능하게 하는 플랫폼'으로 정의함
튀니지	도입	디지털 서비스세	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20년 1월 1일부터 비거주 기업의 컴퓨터 응용 프로그램 및 디지털서비스 판매에 3%의 디지털서비스세를 부과함
짐바브웨	도입	일반소득과세	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19년 1월 1일부터 짐바브웨 거주자로부터 짐바브웨 외부에 거주하는 전자 상거래 플랫폼 및 위성 방송 서비스 제공 업체가 수령하는 금액은 짐바브웨 내에서 창출된 소득으로 간주함 - 또한 이 소득이 연간 50만 달러를 초과하는 경우 5%의 세금이 부과됨

자료: KPMG, "Taxation of the digitalized economy," updated March 13, 2020

2 OECD 디지털세 관련 국가별 반응

□ 유럽의 다수 국가 및 뉴질랜드, 인도 등은 OECD 합의안에 따라 향후 거취를 결정하거나, 자국에 도입한 제도에 합의 내용을 반영할 예정임³³⁾

- ▶ 개별 법안을 마련하고 있는 영국은 OECD 다자간 합의가 마련될 경우 해당 법안의 개편 가능성을 시사하였으며, 디지털서비스세를 이미 도입한 프랑스는 미국과의 협의 결과에 따라 합의안 도출 이후 징수를 시작할 계획임
- ▶ 이탈리아는 별도의 법률 제정 없이 2020년 예산안에 디지털서비스세 관련 내용을 담고 있으며, 국제적인 합의 도출 후 해당 안은 자동 폐기될 예정임
- ▶ 독일의 경우 2018년 EU 집행위원회가 제안한 디지털서비스세 도입에 대해서는 반대안에 찬성하였으나, OECD안의 경우 pillar 2의 조세 최저기준이 유지되는 경우 pillar 1과 관련한 합의안에 협력하겠다고 밝힘
- ▶ 덴마크, 핀란드, 스웨덴은 2018년 6월 OECD 주도의 국가 간 합의에 기반한 해결방안을 강구해야 한다는 공동성명을 발표한 바 있음
 - OECD를 통한 국제적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덴마크는 EU의 합의안을 따를 계획임
- ▶ 노르웨이 재무장관은 2019년 1월, OECD가 2020년 중 디지털세 합의안을 도출하지 못할 경우 국내법을 통해 2020년 디지털서비스세를 도입하겠다고 밝힘³⁴⁾
- ▶ 폴란드 역시 신규 법안 발표를 보류하고 EU 및 OECD 합의안에 협력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음
- ▶ 뉴질랜드 재무부는 2019년 8월 디지털서비스세의 채택 여부를 OECD 합의안 결과에 따라 결정할 것이라고 언급함
- ▶ 인도는 디지털 고정사업장과 유사한 개념인 SEP의 도입을 2021년 이후로 미루고, OECD 합의 도출 후 업데이트 안을 마련하고자 함

□ 미국은 2019년 12월 3일 OECD에 Pillar 1에 개별 기업이 신규 규정 적용 여부를 선택하게 하는 세이프하버 조항 추가와 관련한 의견을 서한으로 제출함³⁵⁾

33) KMPG, "Taxation of the Digitalized Economy," March 13, 2020

34)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주요국의 조세동향」, 2020-1호

- ▶ OECD는 2019년 12월 4일 해당 의견에 대한 회신 서한을 발송함³⁶⁾
 - Pillar 1 통합적 접근법은 합의에 도달하기 위해 강력한 조세 확실성이 필요한데, OECD는 지금까지 협의 과정에서 Pillar 1이 세이프하버 체제가 될 수 있다는 것에 대해 논의해본 적이 없음
 - 해당 안은 현재 합의 절차에 참여하는 135개국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므로, 논의를 발전시키기 위해 IF 총회에서 이 문제를 제기하고자 함
- ▶ 미국은 동 서한에서 현재 자국 내에서 시행 중인 GILTI가 Pillar 2의 기능을 대체할 수 있음도 함께 밝힘

35) KPMG 홈페이지, <https://home.kpmg/content/dam/kpmg/us/pdf/2019/12/treasury-letter-oecd-digital-services-tax.pdf>, 검색일자: 2020. 4. 9

36) OECD 홈페이지, <https://www.oecd.org/newsroom/Letter-from-OECD-Secretary-General-Angel-Gurria-for-the-attention-of-The-Honorable-Steven-T-Mnuchin-Secretary-of-the-Treasury-United-States.pdf>, 검색일자: 2020. 4. 9



제2부 주요 국가별 조세동향



I 미국/캐나다

1 미국

가. 외국계 보험회사 관련 PFIC 별도 기준 발표

[조세동향 19-07회]

- 미국 국세청은 2019년 7월 10일, 외국계 보험회사의 PFIC³⁷⁾ 분류 기준과 관련하여 별도 규정을 발표함³⁸⁾

 - ▶ 외국계 보험회사들에 보다 낮은 세율이 적용되는 일반보험회사 지위를 갖출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마련한 조치임
 - PFIC는 높은 세율로 인해 기업들이 감세를 위해 해외 투자를 확대하는 경향이 있어 국내 투자를 유인하고자 하는 목적임

- 외국계 보험회사는 일반보험회사 자격을 갖추기 위해 보험책임금과 관련하여 다음의 두 가지 요건 중 하나를 충족시켜야 함

 - ▶ 미경과보험료 준비금(earned premium reserve)을 제외하고 총자산의 25% 이상의 보험책임금을 보유해야 함
 - 이때 보험책임금은 ① 가장 최근의 재무제표상의 금액 ② 관할법이나 규정에 의해 요구되는 최소 금액 ③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원칙(GAAP) 또는 국제 재무보고 기준(IFRS)에 따라 작성된 최근 재무제표상의 금액 중 작은 값으로 산정함
 - ▶ 첫 번째 요건을 충족시키기 어려울 경우, 보험사업에 주력하면서 10% 이상의 보험 책임금을 보유해야 함

37) Passive Foreign Investment Company(외국수동투자법인)의 약자로, 총수입의 75% 이상이 수동적 소득(이자, 배당금, 연금, 순자본이익, 임차료, 저작권 사용료 등)이며, 자산의 50% 이상이 수동적 소득을 창출하는 외국 법인의 경우 PFIC에 해당함(U.S. Code § 1297)

38) Foreign Insurers Get Clarity on Determining Tax Status, Bloomberg Law: Tax(Jul 10, 2019)

- 본 규정에서는 보험사업에 주력하지 않는 것으로 간주되는 회사의 예시로, ① 발생 가능성은 낮더라도 잠재비용이 큰 보험상품의 수가 적거나 ② 조직이 보험 인수보다는 투자 관련 인력으로 구성되어 있거나 ③ 손실 위험에 대한 노출 정도가 낮은 회사를 들고 있음

■ 두 가지 요건 중 어느 것도 충족시키지 못할 경우 해당 기업은 PFIC로 간주되며, 해당 법인의 주주는 법인세 최고세율 21% 혹은 개인소득세 최고세율 37%을 적용받게 됨

나. 국적포기세 납부 대상자 구제절차 마련

[조세동향 19-09호]

■ 미국 국세청은 2019년 9월 6일 국적포기세 납부 대상자와 관련한 구제절차를 마련함³⁹⁾

- ▶ 국외에서 출생한 미국 시민권자나 국내에서 출생한 외국인 등 미국 납세 의무를 간과할 가능성이 높은 사람들을 위한 구제방안으로, 미국에 소득신고를 완료하지 않은 '개인'에게만 적용됨⁴⁰⁾

■ 미국은 시민권 혹은 영주권을 포기할 때, 특정 기준에 해당하는 자에게 국적 포기 시 전 재산을 양도한다고 간주하여 국적포기세를 부과하고 있음⁴¹⁾

- ▶ 국적 포기일 전 5년간 연평균 소득세가 일정 금액⁴²⁾을 초과한 경우
- ▶ 국적 포기일 당일 순자산이 200만달러⁴³⁾ 이상일 경우
- ▶ 국적 포기 절차와 관련한 Form 8854 제출 시 국적 포기일 직전 5년간 연방정부 납세 의무를 모두 완료했음을 증명하지 못한 경우
- ▶ 국적포기세는 국적 포기일 당일 공정시장가액 기준으로 과세함

39) United States - IRS announces relief procedures for former US citizens(9 Sep. 2019), News IBFD

40) 미국 국세청, <https://www.irs.gov/newsroom/irs-announces-new-procedures-to-enable-certain-expatriated-individuals-a-way-to-come-into-compliance-with-their-us-tax-and-filing-obligations>, 검색일자: 2019. 9. 19

41) 미국 국세청, <https://www.irs.gov/individuals/international-taxpayers/expatriation-tax>, 검색일자: 2019. 9. 25

42) 금액 기준은 물가상승률에 따라 변동하며 2012년 15만 1천달러, 2013년 15만 5천달러, 2014년 15만 7천달러, 2015년 15만달러임

43) 2019. 9. 26. 원화 기준 환산 시 약 24억원임

- 개인이 다음의 구제절차 요건을 충족하고 증빙 자료를 제출할 경우 국적포기세 납부 대상이 되지 않으며, 6년 전까지의 관련 미납 세금 및 연체료에 대한 책임에서 벗어남
 - ▶ 2010년 3월 18일 이후 미국 시민권 혹은 영주권을 포기한 경우
 - ▶ 순 자산이 200만달러 미만인 경우
 - ▶ 출국 연도 및 그 전년도 5년간 과세 체납액이 미화 2만 5천달러⁴⁴⁾ 이하인 경우
 - ▶ 해당 체납 행위가 태만, 부주의 혹은 법령 해석의 오해 등 비의도적으로 발생한 경우
- 사전 계획된 종료일은 없으며, 본 구제절차가 종료될 경우 별도의 발표가 있을 예정임

다. 중국 수입품 추가 관세 일부 품목 대상 제외 및 관세율 인상

[조세동향 19-9호]

- 2019년 8월 13일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추가 관세가 예정된 중국 수입품 일부 품목에 대해 적용 제외 및 연기를 발표하였으며, 2019년 8월 23일에는 중국 수입 물품 5,500억달러⁴⁵⁾에 대해 부과되는 추가 관세율을 5%p 인상하기로 밝힘⁴⁶⁾
 - ▶ 추가 관세 인상은 미국 301조 제재 발동의 결과이며, 기존 25%의 추가 관세율 적용 대상이던 2,500억달러⁴⁷⁾ 상당의 품목들은 30%로 인상하였으며, 나머지 3천억달러⁴⁸⁾ 상당의 품목들은 기존 10%에서 15%로 추가 관세율을 인상함
- 30% 추가 관세 대상 품목들은 10월 15일부터 인상되며, 15% 추가 관세 대상 품목들은 9월 1일과 12월 15일로 나누어 인상이 시작됨
 - ▶ 30% 추가 관세 대상 품목에 대한 인상은 2019년 8월 23일 발표 당시 10월 1일로 예정되어 있었으나, 2019년 9월 11일 중국 건국 70주년에 대한 배려로 10월 15일로 변경함⁴⁹⁾

44) 2019. 9. 26. 원화 기준 환산 시 약 3,001만원임

45) 2019. 9. 26. 원화 기준 환산 시 약 660조 2,750억원임

46) 미국 무역대표부, <https://ustr.gov/about-us/policy-offices/press-office/press-releases/2019/august/ustr-announces-next-steps-proposed>, 검색일자: 2019. 9. 19

미국 무역대표부, <https://ustr.gov/about-us/policy-offices/press-office/press-releases/2019/august/ustr-statement-section-301-tariff>, 검색일자: 2019. 9. 25

47) 2019. 9. 26. 원화 기준 환산 시 약 300조 1,250억원임

48) 2019. 9. 26. 원화 기준 환산 시 약 360조 1,500억원임

- ▶ 15% 추가 관세 대상 품목은 2019년 5월 17일 미국 무역대표부가 발표하였으며, 2019년 8월 1일 트럼프 대통령이 해당 관세의 시행일을 2019년 9월 1일로 발표한 바 있음⁵⁰⁾
- ▶ 2019년 8월 13일, 이 중 일부 품목을 시행 대상에서 제외하거나 12월 15일로 시행을 연기함⁵¹⁾
 - 건강, 안전, 국가 안보 및 기타 요인에 따른 일부 제품이 관세 목록에서 제외됨
 - 크리스마스 시즌의 소비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휴대폰, 노트북, 비디오 게임 콘솔, 일부 장난감, 신발 및 의류 품목은 추가 관세 적용일자를 12월 15일로 연기함

라. 하드포크 암호화폐 과세 판단 기준 마련

[조세동향 19-10호]

- 2019년 10월 9일, 미국 국세청은 하드포크로 생성된 암호화폐에 대한 과세와 관련하여 Revenue Ruling 2019-24을 통해 판단 근거를 마련함⁵²⁾
- 암호화폐에서 하드포크가 이루어질 경우, 이때 발생한 신규 화폐를 납세자 총소득에 포함할지 여부에 대한 논의가 있었음
 - ▶ 하드포크는 기존 암호화폐의 분산원장이 프로토콜 변경을 거쳐 다른 갈래의 체인을 생성하여 우회하게 되는 것을 의미하며, 해당 분산원장에서도 새로운 암호화폐를 생성할 수 있게 됨
 - ▶ 에어드롭은 암호화폐를 각 분산원장으로 분배하는 수단으로, 하드포크 후 에어드롭이 발생하면 새롭게 생성된 암호화폐의 유닛이 기존의 암호화폐를 보유한 주소로 분배됨

49) 블룸버그, <https://www.bloomberg.com/news/articles/2019-09-11/trump-delays-china-tariff-increase-by-two-weeks-until-oct-15>, 검색일자: 2019. 9. 25

50) 이와 함께 2019년 8월 5일 미국 재무부가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함으로써, 중국은 이에 대한 대응으로 2019년 8월 6일 미국 농산물 수입을 잠시 중단하였으며 2019년 9월 11일 미국이 추가 관세 인상을 2주 연기함에 따라 수입을 재개함

51) 미국 무역대표부, <https://ustr.gov/about-us/policy-offices/press-office/press-releases/2019/august/ustr-announces-next-steps-proposed>, 검색일자: 2019. 9. 19

52) United States - Guidance issued on hard forks of cryptocurrency(10 Oct. 2019), News IBFD

- Revenue Ruling 2019-24에 따르면 하드포크 후 에어드롭이 따르는 경우 일반 수익으로서 납세자의 총소득에 포함됨
 - ▶ 그러나 하드포크 후 에어드롭이 없을 경우, 납세자는 신규로 생성된 암호화폐의 유닛을 수취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하여 미국 내국세법 61조에 따른 총소득에 포함되지 않음

마. 2020년 과세 표준 및 공제액 조정

[조세동향 19-11호]

- 2019년 11월 6일, 미국 국세청은 2020년 세금 공제 및 기타 항목에 대해 인플레이션 반영을 포함한 조정 내용을 담은 Revenue Procedure 2019-44를 발표함⁵³⁾
 - ▶ 해당 조정은 매년 미국 내국세법(IRC)에 근거하여 이루어지며, 본 조정 내용은 2020년 1월 1일부터 발효됨

■ 개인소득세의 과세 표준 금액이 인상됨

- ▶ 부부 합산 신고 시

2020년 과세 표준 금액	세율	비교(2019년) ¹⁾
19,750달러 이하 (원화 ²⁾ 약 2,359만원)	10%	19,400달러 이하
19,750달러 초과 ~ 80,250달러 이하 (원화 약 2,359만원 초과 ~ 9,587만원 이하)	21%	19,400달러 초과 ~ 78,950달러 이하
80,250달러 초과 ~ 171,050달러 이하 (원화 약 9,587만원 초과 ~ 2억 434만원 이하)	22%	78,950달러 초과 ~ 168,400달러 이하
171,050달러 초과 ~ 326,600달러 이하 (원화 약 2억 434만원 초과 ~ 3억 9,016만원 이하)	24%	168,400달러 초과 ~ 321,450달러 이하
326,600달러 초과 ~ 414,700달러 이하 (원화 약 3억 9,016만원 초과 ~ 4억 9,540만원 이하)	32%	321,450달러 초과 ~ 408,200달러 이하
414,700달러 초과 ~ 622,050달러이하 (원화 약 4억 9,540만원 초과 ~ 7억 4,310만원 이하)	35%	408,200달러 초과 ~ 612,350달러 이하
622,050달러 초과 (원화 약 7억 4,310만원 초과)	37%	612,350달러 초과

주: 1) Revenue Procedure 2018-57, IRS
 2) 2019. 12. 4. 환율 기준

53) United States - IRS announces inflation adjustments for 2020 - Part I(07 Nov. 2019), News IBFD
 United States - IRS announces inflation adjustments for 2020 - Part II(07 Nov. 2019), News IBFD

▶ 세대주 신고 시

2020년 과세 표준 금액	세율	비고(2019년) ¹⁾
14,100달러 이하 (원화 ²⁾ 약 1,684만원 이하)	10%	13,850달러 이하
14,100달러 초과 ~ 53,700달러 이하 (원화 약 1,684만원 초과 ~ 6,415만원 이하)	12%	13,850달러 초과 ~ 52,850달러 이하
53,700달러 초과 ~ 85,500달러 이하 (원화 약 6,415만원 초과 ~ 1억 214만원 이하)	22%	52,850달러 초과 ~ 84,200달러 이하
85,500달러 초과 ~ 163,300달러 이하 (원화 약 1억 214만원 초과 ~ 1억 9,508만원 이하)	24%	84,200달러 초과 ~ 160,700달러 이하
163,300달러 초과 ~ 207,350달러 이하 (원화 약 1억 9,508만원 초과 ~ 2억 4,770만원 이하)	32%	160,700달러 초과 ~ 204,100달러 이하
207,350달러 초과 ~ 518,400달러 이하 (원화 약 2억 4,770만원 초과 ~ 6억 1,928만원 이하)	35%	204,100달러 초과 ~ 510,300달러 이하
518,400달러 초과 (원화 약 6억 1,928만원 초과)	37%	510,300달러 초과

주: 1) Revenue Procedure 2018-57, IRS
2) 2019. 12. 4. 환율 기준

▶ 단독 신고 시

2020년 과세 표준 금액	세율	비고(2019년) ¹⁾
9,875달러 이하 (원화 ²⁾ 약 311만원 이하)	10%	9,700달러 이하
9,875달러 초과 ~ 40,125달러 이하 (원화 약 311만원 초과 ~ 4,793만원 이하)	12%	9,700달러 초과 ~ 39,475달러 이하
40,125달러 초과 ~ 85,525달러 이하 (원화 약 4,793만원 초과 ~ 1억 217만원 이하)	22%	39,475달러 초과 ~ 84,200달러 이하
85,525달러 초과 ~ 163,300달러 이하 (원화 약 1억 217만원 초과 ~ 1억 9,508만원 이하)	24%	84,200달러 초과 ~ 160,725달러 이하
163,300달러 초과 ~ 207,350달러 이하 (원화 약 1억 9,508만원 초과 ~ 2억 4,770만원 이하)	32%	160,725달러 초과 ~ 204,100달러 이하
207,350달러 초과 ~ 518,400달러 이하 (원화 약 2억 4,770만원 초과 ~ 6억 1,928만원 이하)	35%	204,100달러 초과 ~ 510,300달러 이하
518,400달러 초과 (원화 약 6억 1,928만원 초과)	37%	510,300달러 초과

주: 1) Revenue Procedure 2018-57, IRS
2) 2019. 12. 4. 환율 기준

▶ 부부 개별 신고 시

2020년 과세 표준 금액	세율	비교(2019년) ¹⁾
9,875달러 이하 (원화 ²⁾ 약 311만원 이하)	10%	9,700달러 이하
9,875달러 초과 ~ 40,125달러 이하 (원화 약 311만원 초과 ~ 4,793만원 이하)	12%	9,700달러 초과 ~ 39,475달러 이하
40,125달러 초과 ~ 85,525달러 이하 (원화 약 4,793만원 초과 ~ 1억 217만원 이하)	22%	39,475달러 초과 ~ 84,200달러 이하
85,525달러 초과 ~ 163,300달러 이하 (원화 약 1억 217만원 초과 ~ 1억 9,508만원 이하)	24%	84,200달러 초과 ~ 160,725달러 이하
163,300달러 초과 ~ 207,350달러 이하 (원화 약 1억 9,508만원 초과 ~ 2억 4,770만원 이하)	32%	160,725달러 초과 ~ 204,100달러 이하
207,350달러 초과 ~ 311,025달러 이하 (원화 약 2억 4,770만원 초과 ~ 3억 7,155만원 이하)	35%	204,100달러 초과 ~ 306,175달러 이하
311,025달러 초과 (원화 약 3억 7,155만원 초과)	37%	306,175달러 초과

주: 1) Revenue Procedure 2018-57, IRS
2) 2019. 12. 4. 환율 기준

▶ 자산 및 신탁 신고 시

2020년 과세 표준 금액	세율	비교(2019년) ¹⁾
2,600달러이하 (원화 ²⁾ 약 310만원 이하)	10%	2,600달러 이하
2,600달러 초과 ~ 9,450달러 이하 (원화 약 310만원 초과 ~ 1,129만원 이하)	24%	2,600달러 초과 ~ 9,300달러 이하
9,450달러 초과 ~ 12,950달러 이하 (원화 약 1,129만원 ~ 1,548만원)	35%	9,300달러 초과 ~ 12,750달러 이하
12,950달러 초과 (원화 약 1,548만원 초과)	37%	12,750달러 초과

주: 1) Revenue Procedure 2018-57, IRS
2) 2019. 12. 4. 환율 기준

■ 2020년 Kiddie Tax에 적용되는 불로소득 기준액은 1,100달러⁵⁴⁾에, i) 1,100달러⁵⁵⁾ 혹은 ii) 자녀가 항목별 공제를 받는 경우 자녀의 불로소득에 적용되는 항목별 공제액 중 큰 금액을 더한 금액임

54) 2019. 12. 4. 원화 기준 환산 시 약 131만원임

55) 2019. 12. 4. 원화 기준 환산 시 약 1,314만원임

- ▶ 미국은 18세 미만 미성년자의 불로소득의 경우 부모에게 적용되는 최고 세율로 과세하고 있으며, 이를 Kiddie Tax라고 지칭함
- ▶ 자녀가 근로소득 없이 이자 및 배당 소득이 유일할 경우, 부모의 세금 신고에 포함시켜 신고하는 것을 선택할 수 있는 소득액은 2019년과 동일하게 1,100달러 초과 1만 1천달러 미만임

■ 고소득자에게 적용되는 최저한세 공제액 및 세율 인상 금액이 상향 조정됨

- ▶ 고소득자의 소득에 대해 일정 금액을 공제하고 그 초과 금액에 대해 26%의 최저한 세율을 적용하며, 공제가 적용된 과세소득이 또 일정 수준을 초과할 경우 28%의 최저한세율이 적용됨
- ▶ 신고 유형별 일반 공제액은 다음과 같음

신고 유형	2020년 최저한세 공제액	비고(2019년) ¹⁾
부부 합산 신고	113,400달러 (원화 ²⁾ 약 1억 3,551만원)	111,700달러
단독 신고	72,900달러 (원화 약 8,712만원)	71,700달러
부부 개별 신고	56,700달러 (원화 약 6,776만원)	55,850달러
자산 및 신탁 신고	25,400달러 (원화 약 3,035만원)	25,000달러

주: 1) Revenue Procedure 2018-57, IRS
 2) 2019. 12. 4. 환율 기준

- ▶ 상기된 공제가 적용된 후의 과세소득이 신고 유형별로 아래의 금액을 초과할 경우, 그 초과액에 대해서는 28%의 최저한세율이 적용됨

신고 유형	2020년 기준액	비고(2019년) ¹⁾
부부 합산 신고, 독신 신고, 자산 및 신탁 신고	197,900달러 (원화 ²⁾ 약 2억 3,649만원)	194,800달러
부부 개별 신고	98,950달러 (원화 약 1억 1,825만원)	97,400달러

주: 1) Revenue Procedure 2018-57, IRS
 2) 2019. 12. 4. 환율 기준

- ▶ 납세자의 최저한세 과세소득이 아래의 명시된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 금액의 25%만큼 최저한세의 일반 공제액이 감소함

신고 유형	2020년 기준 금액	비고(2019년) ¹⁾
부부 합산 신고	1,036,800달러 (원화 ²⁾ 약 12억 3,898만원)	1,020,600달러
단독 신고, 부부 개별 신고	518,400달러 (원화 약 6억 1,949만원)	510,300달러
자산 및 신탁 신고	84,800달러 (원화 약 1억 135만원)	83,500달러

주: 1) Revenue Procedure 2018-57, IRS
 2) 2019. 12. 4. 환율 기준

- ▶ Kiddie Tax가 부과되는 미성년자에 대한 2020년의 최저한세 공제 금액은 다음의 두 금액 중 적은 금액임
 - 미성년자의 근로소득에 7,900달러⁵⁶⁾를 더한 금액
 - 단독 신고 시 최저한세의 일반 공제 금액

■ 2020년 개인소득세 소득공제의 표준 공제, 항목별 공제, 인적 공제 등과 관련한 조정 내용은 다음과 같음

- ▶ 2020년 개인소득세 소득공제의 표준 공제액

신고 유형	2020년 공제액	비고(2019년) ¹⁾
부부 합산 신고	24,800달러 (원화 ²⁾ 약 2,964만원)	24,400달러
세대주 신고	18,650달러 (원화 약 2,229만원)	18,350달러
독신 신고, 부부 개별 신고	12,400달러 (원화 약 1,482만원)	12,200달러

주: 1) Revenue Procedure 2018-57, IRS
 2) 2019. 12. 4. 환율 기준

- ▶ 조정 후 총소득 수준에 따른 항목별 공제의 제한액⁵⁷⁾은 2020년도에는 적용되지 않으며, 인적 공제는 0달러임

56) 2019. 12. 4. 원화 기준 환산 시 약 944만원임

57) 조정 후 총소득이 기준 금액을 초과하는 개인의 경우, 항목별 공제 금액 한도는 i) 기준금액 초과분의 3%, 또는 ii) 해당 과세연도에 허용되는 항목별 공제액의 80%임(IRC § 68)

- ▶ 미국 시민 및 거주자의 국외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공제 연간 한도는 10만 7,600달러⁵⁸⁾임

■ 상속세 및 증여세 관련 내용은 다음과 같음

- ▶ 연간 증여 면제액은 1만 5천달러⁵⁹⁾이며, 이때 자산에 발생하는 미래의 이자는 제외함
- ▶ 배우자 증여 시 배우자가 미국 시민권자가 아닐 경우 15만 7천달러⁶⁰⁾까지의 증여에 대해서만 과세 대상이 되지 않으며, 이때 자산에 발생하는 미래의 이자는 제외함
- ▶ 외국인으로부터 1만 6,649달러⁶¹⁾ 이상의 증여를 받은 경우 국세청에 정보 신고서를 제출해야 함

■ 조세회피 목적 국적 포기 대상자와 관련한 조정이 있었음

- ▶ 2020년 국적포기세의 대상이 되는 5개 연도의 평균 순소득세액은 17만 1천달러⁶²⁾임⁶³⁾
- ▶ 국적 포기일 시점에서 소유한 부동산의 과세 대상 순이익(시장평가 금액) 산출 시 적용되는 공제 금액은 73만 7천달러⁶⁴⁾임

58) 2019. 12. 4. 원화 기준 환산 시 약 1억 2,859만원임

59) 2019. 12. 4 원화 기준 환산 시 약 1,793만원임

60) 2019. 12. 4. 원화 기준 환산 시 약 1억 8,763만원임

61) 2019. 12. 4. 원화 기준 환산 시 약 1,990만원임

62) 2019. 12. 4. 원화 기준 환산 시 약 2억 440만원임

63) 미국은 시민권 혹은 영주권을 포기할 때 i) 국적 포기일 전 5년간 연평균 소득세가 일정 금액을 초과한 경우, ii) 국적 포기일 당일 순자산이 200만달러 이상일 경우, 국적 포기 절차와 관련한 Form 8854 제출 시 국적 포기일 직전 5년간 연방정부 납세 의무를 모두 완료했음을 증명하지 못한 경우 국적 포기 시 전 재산을 양도한다고 간주하여 국적포기세를 부과하고 있으며, 이때 5년간 연평균 소득세 기준액은 물가상승률에 따라 변동함(한국조세재정연구원, 「주요국의 조세동향」, 19-9호, 2019)

64) 2019. 12. 4 원화 기준 환산 시 약 8억 8,094만원임

2 캐나다

가. 2019년 예산이행법 승인

[조세동향 19-07호]

- 2019년 6월 21일 캐나다 재무부 장관은 2019년 예산이행법의 승인을 발표함⁶⁵⁾
 - ▶ 2019년 예산안의 이행 조치에 관한 사항들을 다루며, 법인세, 개인소득세, GST, 비영리단체 대상 과세 관련 세액공제 확대가 주요 이슈임
 - ▶ 본 법안은 2020년 1월 1일부터 적용됨

- 법인세와 관련하여 R&D 세액공제 및 일부 산업의 초년도 공제에 대한 강화 조항이 추가됨
 - ▶ SR&ED 세액공제와 관련하여 국내 비상장주식회사(Canadian-Controlled Private Corporation, CCPC)의 연간지출한도액을 결정할 때 사용하던 이전연도 과세대상 자본소득액 기준⁶⁶⁾을 단계적으로 폐지함
 - ▶ 제조가공(M&P) 기계 및 장비와 전기차 충전사업(Electric Vehicle Charging Service, EVCS) 관련 장비, 무공해 자동차(Zero-Emission Vehicle, ZEV)에 대해 초년도 공제 100%를 한시적으로 허용함
 - 제조가공 기계 및 장비의 경우 2018년 11월 20일 이후에 취득하고 2028년 이전까지 사용하는 장비에 대해 적용함
 - 전기차충전사업 관련 장비의 경우 캐나다 자본비용 공제(Capital Cost Allowance, CCA)의 class 43.1과 43.2⁶⁷⁾의 기준에 해당하고, 2016년 3월 21일 이후에 취득한 건에 대해 적용함
 - 무공해 자동차는 2019년 3월 19일부터 2024년 1월 1일 사이에 구매한 경우 해당 공제를 적용함

65) Canada - Budget Implementation Act, 2019, No. 1 receives Royal Assent(25 June 2019), News IBFD.

66) CCPC는 연간 최대 300만캐나다달러(한화 약 27억 4천만원)의 지출액에 대해 공제가 가능한데, 이전연도 과세 대상 자본소득이 1천만캐나다달러 이상인 기업의 경우 해당 한도가 줄어들

67) class 43.1은 10kWh 이상 90kWh 미만의, class 43.2는 90kWh 이상의 연속전력을 공급하는 장비로 분류함

■ 개인소득세와 관련하여 교육세액공제(Canada training credit)와 디지털뉴스 구독 세액공제(Digital News Subscription Tax Credit: DNSTC)가 도입됨

▶ 과세연도 기간 중 캐나다에 거주하는 25세 이상 66세 미만의 납세자에 대해 다음의 일정 요건⁶⁸⁾을 충족시키는 교육비 지출의 최대 50%까지 공제하는 교육세액공제가 도입됨

- 고등교육기관 및 정부 인증 직업훈련기관에 지불한 비용
- 개인이 캐나다 연방 및 각 주의 법령에서 인정하는 전문자격을 취득하기 위해 과세연도에 시험에 응시한 경우, 혹은 해당 자격증 소지자가 캐나다에서 거래를 할 수 있도록 허가 또는 인증을 받는 경우 이에 지불한 비용

▶ 500캐나다달러⁶⁹⁾ 한도 내에서 개인이 디지털 출판물 구독에 지불한 비용에 대해 1년 동안 지불한 금액의 15%를 공제받을 수 있는 디지털뉴스 구독 세액공제가 도입됨

- 정부인증 저널리즘 조직(Qualified Canadian Journalism Organisation, QCJO)이 독립적인 플랫폼을 통해 콘텐츠를 제공하는 경우에 해당하며, 혼합 콘텐츠를 제공하는 플랫폼의 경우 이용금액의 절반에 대해서만 공제가 적용됨⁷⁰⁾

■ 면세법인 추가 지정 혹은 공제 대상 기준 요건 완화로 기부 및 비영리 단체 관련 세액공제를 확대함

▶ 정부인증 저널리즘 조직이 기부금 단체(qualified donee status)로 추가 지정됨에 따라 면세법인 범위가 확장됨⁷¹⁾

▶ 소득세법 및 문화재 수출입법 개정을 통해 공제 대상 기준에서 ‘국가적 중요성’ 요건을 삭제함으로써 세액공제 수혜 대상을 확대함

■ 난임과 관련한 GST에 대해 영세율을 적용함

▶ 2019년 3월 19일 이후 공급 및 수입되는 시험관 배아 및 난자와 관련한 비과세 수입품에 대해 비용 영세율을 적용함

68) 캐나다 소득세법 118.5의 (a) 및 (d)에서 규정하고 있음

69) 2019. 7. 22. 기준 원화 환산 시 약 59만원임

70) 캐나다 정부, <https://www.canada.ca/en/revenue-agency/programs/about-canada-revenue-agency-cra/federal-government-budgets/budget-2019-investing-middle-class/canadian-journalism/digital-subscriptions.html>, 검색일자: 2019. 7. 29

71) 캐나다 정부, <https://www.canada.ca/en/revenue-agency/programs/about-canada-revenue-agency-cra/federal-government-budgets/budget-2019-investing-middle-class/canadian-journalism/qualified-donee-status.html>, 검색일자: 2019. 7. 29

나. 2020년 고용보험 부담률 발표

[조세동향 19-09호]

- 캐나다 고용보험위원회(CEIC)는 2019년 9월 13일, 2020년부터 적용되는 고용보험 부담률(EI premium rate)을 발표함⁷²⁾

 - ▶ 손익분기 메커니즘에 근거하여 7년간의 고용보험 운영 손익이 0달러가 되는 부담률을 매년 설정함⁷³⁾

- 보험 가입 최대 수입액은 전년도보다 인상되었으며, 부담률은 기존보다 낮아짐⁷⁴⁾

 - ▶ 보험 가입 최대 수입액은 최대 5만 4,200캐나다달러⁷⁵⁾로 기존 5만 3,100캐나다달러⁷⁶⁾보다 인상됨
 - ▶ 부담률은 100캐나다달러⁷⁷⁾당 개인은 1.58캐나다달러⁷⁸⁾(기존 1.62캐나다달러⁷⁹⁾), 고용주는 2.212캐나다달러⁸⁰⁾(기존 2.27캐나다달러⁸¹⁾)로 종전보다 낮아짐
 - 보험 가입 최대 수입액 제한으로 인해 개인 부담액은 최대 856.36캐나다달러,⁸²⁾ 고용주 부담액은 최대 1,198캐나다달러⁸³⁾임
 - 퀘벡은 별도로 부모보험(Quebec Parental Insurance Plan: QPIP) 내에서 고용보험을 제공하고 있으며, 100캐나다달러당 개인 1.20캐나다달러,⁸⁴⁾ 고용주 1.68캐나다달러⁸⁵⁾

72) Canada - Employment insurance contribution rates set for 2020(16 Sep. 2019), News IBFD

73) 캐나다 정부, <https://www.canada.ca/en/employment-social-development/programs/ei/ei-list/reports/premium/rates2020.html>, 검색일자: 2019. 9. 26

74) 캐나다 정부, <https://www.canada.ca/en/employment-social-development/news/2019/09/canada-employment-insurance-commission-announces-2020-employment-insurance-premium-rate-and-maximum-insurable-earnings.html>, 검색일자: 2019. 9. 19.

75) 2019. 9. 26. 원화 기준 환산 시 약 4,910만원임

76) 2019. 9. 26. 원화 기준 환산 시 약 4,810만 3천원임

77) 2019. 9. 26. 원화 기준 환산 시 약 9만 1천원임

78) 2019. 9. 26. 원화 기준 환산 시 약 1,431원임

79) 2019. 9. 26. 원화 기준 환산 시 약 1,468원임

80) 2019. 9. 26. 원화 기준 환산 시 약 2,004원임

81) 2019. 9. 26. 원화 기준 환산 시 약 2,056원임

82) 2019. 9. 26. 원화 기준 환산 시 약 77만 6천원임

83) 2019. 9. 26. 원화 기준 환산 시 약 108만 5천원임

84) 2019. 9. 26. 원화 기준 환산 시 약 1,087원임

85) 2019. 9. 26. 원화 기준 환산 시 약 1,522원임

로 캐나다 내 다른 지역보다 고용보험 부담률이 낮게 책정됨

- ▶ 자영업자가 고용보험 프로그램에 가입하려면 2019년 연간 수입 7,289캐나다달러⁸⁶⁾ 조건을 충족시켜야 함

다. 소득세 기초공제액 인상 법안 상정

[조세동향 19-12호]

- 2019년 12월 9일 캐나다 재무부는 소득세 기초공제액을 인상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하원에 상정함⁸⁷⁾
 - ▶ 900만명 이상의 세금 부담을 경감시킨 2015년 중산층 세금 감축의 성공이 본 개정의 강력한 동인이 됨⁸⁸⁾
- 향후 4년간 개인 기초공제액을 점진적으로 인상하여, 2023년 1만 5천캐나다달러⁸⁹⁾까지 증액할 계획임
 - ▶ 2020년에는 현행 1만 2,069캐나다달러⁹⁰⁾에서 1만 2,298캐나다달러⁹¹⁾로 증가함
 - ▶ 목표 공제액에 도달하는 2023년에는 단독 신고자의 경우 300캐나다달러,⁹²⁾ 한부모가족을 포함한 가족합산신고자의 경우 600캐나다달러⁹³⁾의 세액이 경감될 것으로 예상됨
 - ▶ 또한 정부는 배우자 공제와 부양자 공제 또한 동일하게 현행 1만 2,069캐나다달러에서 2023년까지 1만 5천캐나다달러로 인상할 계획임

86) 2019. 9. 26. 원화 기준 환산 시 약 660만 3천원임

87) Canada - Bill tabled to increase basic personal amount to CAD 15,000(10 Dec. 2019), News IBFD.

88) 캐나다 재무부, <https://www.fin.gc.ca/n19/19-104-eng.asp>, 검색일자: 2019. 12. 20

89) 2020. 1. 6. 원화 기준 환산 시 약 1,353만원임

90) 2020. 1. 6. 원화 기준 환산 시 약 1,089만원임

91) 2020. 1. 6. 원화 기준 환산 시 약 1,109만원임

92) 2020. 1. 6. 원화 기준 환산 시 약 27만원임

93) 2020. 1. 7. 원화 기준 환산 시 약 54만원임

II 유럽

1 네덜란드

가. EU 조세회피방지지침 이행 법안 의회 제출

[조세동향 19-07회]

- 네덜란드 재무부는 2019년 7월 2일 EU의 개정 조세회피방지지침(ATAD 2)⁹⁴⁾을 도입하는 법안을 의회에 제출함⁹⁵⁾

 - ▶ 위 법안은 혼성불일치(hybrid mismatch) 거래 구조 및 효과를 해소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위 법안은 네덜란드와 미국 사이에서 문제되는 혼성불일치 거래구조인 ‘CV-BV Structure’⁹⁶⁾를 주요 적용 대상으로 삼고 있음

 - ▶ 네덜란드의 유한파트너십(Dutch Limited Partnership, 이하 ‘CV’)은 네덜란드의 유한 책임회사(Dutch private LLC, 이하 ‘BV’)의 지분을 보유하고, BV는 미국 이외의 지역에 위치한 다국적 기업 자회사들의 모회사 또는 지주회사의 역할을 수행하는 구조임
 - 주로 미국에 본사를 둔 다국적 기업들이 위 거래 구조를 이용하여 조세회피의 이익을 취해 왔음
 - BV가 CV에 공제 가능 범위의 배당금 또는 사용료를 지급하는 경우, 위 거래 구조

94) 유럽연합의 개정 조세회피방지지침(ATAD 2)은 개정 전 조세회피방지지침(ATAD 1) 중 혼성불일치 관련 부분의 적용 범위를 비유럽연합 국가들로 확대하고(단, 거래 당사자 중 일방은 유럽연합 회원국에 대하여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법인이어야 함), ATAD 1에서 대상으로 삼지 않았던 혼성불일치 거래의 유형들을 새로운 규율 대상으로 포함하였음

95) Tax Notes International, July 8, 2019, p. 147; Netherlands - Bill implementing ATAD 2 submitted to lower house of parliament(03 July 2019), News IBFD

96) CV(Commanditaire Vennootschaap)는 네덜란드의 유한파트너십(Dutch Limited Partnership)을, BV(Besloten Vennootschap)는 네덜란드의 유한책임회사(Dutch private Limited Liability Company)를 의미함.

에 따라 미국 이외의 지역에 위치한 자회사들의 해당 부분 소득에 대한 과세가 지연되는 효과가 계속되어 왔음⁹⁷⁾

■ 위 법안은 네덜란드 과세관청으로 하여금 BV가 CV를 거쳐 미국 투자자에게 분배하는 배당금에 관하여 15%의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할 수 있도록 함

▶ 네덜란드는 2005년 7월 6일 미국과의 관계에서, 네덜란드-미국 조세조약상 혼성 사업체 조항(15% 네덜란드 원천징수세율의 경감 불가)의 적용을 배제하는 법령(소위 'CV-BV Decree')을 시행하였고 이에 따라 네덜란드에서 주로 활동하는 BV에 투자하는 CV는 상대적으로 과세 혜택을 누려 왔음

▶ 그러나 위 2005년도 법령은 2020년부터 폐지될 예정인바, 이로써 네덜란드의 CV-BV 구조에 관해서도 미국과의 조세조약상의 혼성 사업체 조항을 적용할 수 있게 되었음
- CV가 BV를 소유하고 있는 관계에 있거나, BV가 배당금 지급을 예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2020년부터 원천징수의무가 발생함

▶ 만약 CV가 지주회사로만 기능할 뿐 BV로부터 공제 가능한 지급(deductible payment)을 받지 아니하는 경우, 당해 CV는 적어도 본 법안이 시행되는 2022년까지 CV-BV 구조를 유지할 수 있음

■ 위 법안은 2020년 1월을 시행시기로 정하고 있음

▶ 단, CV를 과세 대상으로 삼는 역혼성 규정(reverse hybrid provision)의 시행일은 2022년 1월 1일로 정함

나. 2020년도 세법 개정안 발표

[조세동향 19-9호]

■ 네덜란드 재무부는 2019년 9월 17일 2020년도 세법 개정안(Tax Plan 2020)⁹⁸⁾을 의회 하원에 제출함⁹⁹⁾

97) 네덜란드 세법에 따르면 CV는 도관으로 취급되어 법인세 납세의무를 부담하지 않으나, 미국 세법에 따르면 CV는 과세실체로 취급됨. CV의 미국 투자자들은 배당받은 이익을 미국으로 귀속시키지 않고 곧바로 미국 이외의 자회사들로 재투자하는 방식을 통하여 미국에서의 과세를 무기한으로 회피할 수 있었음.

98) 네덜란드 재무부, <https://www.rijksoverheid.nl/onderwerpen/prinsjesdag/miljoenennota-en-andere-officiële-stukken>, 검색일자: 2019. 9. 26

■ 위 개정안 중 법인세법 관련 주요 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음¹⁰⁰⁾

▶ 구간별 법인세율을 조정함

- 2020년도에는 과세표준 20만유로¹⁰¹⁾ 이하까지는 16.5%, 그 초과 금액에 대하여는 25%의 세율을 적용함¹⁰²⁾
- 2021년도에는 과세표준 20만유로 이하까지는 15%, 그 초과 금액에 대하여는 21.7%의 세율을 적용함¹⁰³⁾

▶ 은행 및 보험회사들에 대한 최소 자본 보유 의무를 도입함

- 이는 은행 등의 타인자본조달(debt financing)을 제한하기 위한 목적으로, 은행 등의 재무제표상 부채가 92%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은행 등의 이자 공제를 제한함

▶ 2021년부터 저세율 과세관할권으로 악의적으로 유출되는 이자 및 사용료에 대하여 21.7% 세율¹⁰⁴⁾의 원천징수 의무를 도입함¹⁰⁵⁾

▶ 네덜란드 국내법상 고정사업장의 정의를 BEPS 다자협약(MLI)¹⁰⁶⁾ 및 OECD 모델조세조약 개정 내용에 맞추어 통일함¹⁰⁷⁾

- 사업장이 수행하는 전반적인 활동이 예비적·보조적 활동으로 평가될 수 있어야만 고정사업장에서 배제 가능하도록 고정사업장의 범위를 확대함
- 기업 또는 특수관계인이 결합하여 운영되는 사업을 여러 개의 작은 운영단위로 분할하여, 각 장소가 단순히 예비적·보조적 활동에 종사하는 사업장이라는 주장을 방지함(anti-fragmentation rule)

99) News IBFD, Netherlands - Tax plan 2020 - presented(17 Sep. 2019)

100) News IBFD, Netherlands - Tax Plan 2020 - corporate income tax(18 Sep. 2019)

101) 2019. 9. 26. 원화 기준 환산 시 약 2억 6천만원임

102) 2019년도 세법 개정안에서 당초 예정한 위 구간의 2020년도 세율은 22.55%였으나, 금년도 개정안으로 해당 세율을 더 높임(News IBFD, Netherlands - Tax Plan 2019: bill on abolition of dividend withholding tax - second amending bill submitted to lower house of parliament, 26 Oct. 2018)

103) 2019년도 세법 개정안에서 당초 예정한 위 구간의 2021년도의 세율은 20.5%였으나, 금년도 개정안으로 해당 세율을 더 높임(News IBFD, Netherlands - Tax Plan 2019: bill on abolition of dividend withholding tax - second amending bill submitted to lower house of parliament, 26 Oct. 2018)

104) 2021년도의 최고 법인세율을 적용함

105) News IBFD, Netherlands - Tax Plan 2020 - conditional withholding tax on interest and royalties(18 Sep. 2019)

106) 네덜란드는 2019년 3월 29일 BEPS 프로젝트에 따른 다자협약(MLI)을 비준하였고, 다자협약은 2019년 7월 1일부로 네덜란드에서 발효되었음

107) Deloitte, "Outline of corporate income tax and dividend withholding tax measures: 2020 Tax Plan - Budget Day(Prinsjesdag)," 2019. 9. 17

KPMG Meijburg&Co Tax&Legal, "The Government presents tax measures for 2020 on Budget Day," 2019. 9. 17

- 기간을 분할하여 체결된 계약의 경우 분할계약의 총계약기간을 고정사업장 해당 여부 판단에 고려함(anti-splitting rule)
- 네덜란드와 조세조약을 체결하지 않은 국가의 경우 OECD 모델 조세조약상의 고정사업장 개념을 적용함

■ 위 개정안 중 소득세법 관련 주요 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음¹⁰⁸⁾

- ▶ 종전 4개 구간이었던 소득세율 구간을 2개 구간으로 줄임
 - 근로소득 연 6만 8,507유로를 기준으로 그 이하의 소득을 얻는 근로자에 대하여는 37.35%, 그 초과 소득을 얻는 근로자에 대하여는 49.5%의 세율이 적용됨
- ▶ 퇴직자, 노인, 장애를 가진 청년 등에 대한 세금 공제 대상 금액을 확대함
- ▶ 특정 요건을 충족하는 모든 기업가를 대상으로 주어지는 연 7,280유로¹⁰⁹⁾(2019년도 기준)의 세액 공제 혜택을 2028년까지 5천유로¹¹⁰⁾ 수준으로 점진적으로 축소함

■ 위 개정안 중 부가가치세법 및 기타 간접세 관련 주요 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음¹¹¹⁾

- ▶ 전자출판물 또는 뉴스 웹사이트 접근 권한 제공 용역에 대하여 감소된 부가가치세율 9%¹¹²⁾를 적용함
- ▶ 이외에 보험료 과세 관련 면세 요건을 강화하고, 자동차세 관련 친환경 자동차에 대한 영세율 적용기간을 연장하는 등의 변동이 있음

다. 개인 투자소득에 관한 세제 개편안 발표

[조세동향 19-9호]

■ 네덜란드 재무부는 2019년 9월 6일 저축 및 투자소득¹¹³⁾에 관한 세제 개편안을 발표함¹¹⁴⁾

108) News IBFD, Netherlands - Tax Plan 2020 - personal income tax and wage tax(18 Sep. 2019)

109) 2019. 9. 26. 원화 기준 환산 시 약 955만원임

110) 2019. 9. 26. 원화 기준 환산 시 약 650만원임

111) News IBFD, Netherlands - Tax Plan 2020 - VAT and other indirect taxes(18 Sep. 2019)

112) 현재 위와 같은 용역 공급에 대하여는 기존 21%의 부가가치세율이 적용되고 있음

113) 투자소득(investment income)에는 양도차익(capital gain), 주식 보유에 따른 배당금, 이자 또는 사용자 소득이 포함됨

114) News IBFD, Netherlands - Taxation of individual investment income - reform announced(9 Sep. 2019)

- ▶ 현행 규정은 순자산 총액만을 기준으로, 순자산 총액이 특정 구간 수준에 위치하면 저축 및 자본이 일정한 비율에 해당할 것이라고 간주(deemed saving/investments portion)하여 과세표준을 산정한 후, 이에 따라 산정된 각각의 저축 및 자본 간주 금액에 대하여 가상의 수익률을 적용하여 과세하였음¹¹⁵⁾

■ 개정안은 위 간주 혼합 자본(deemed asset mix)에 관한 규정을 폐지함

- ▶ 저축 및 자본 각각에 해당하는 ‘실제 액수’를 기준으로 과세표준을 산정하도록 정함
- 과세표준 산정 이후 세액 산출방법은 현행 규정과 동일함

■ 위 개정 조항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임

2 노르웨이

[조세동향 19-9호]

가. 그룹 내 결손금 공제 범위 변경 규정 공개

■ 노르웨이 재무부 장관은 2019년 8월 13일 그룹 내 공제 규정(konsernbidragsreglene)을 변경하는 개정안을 공개함¹¹⁶⁾

- ▶ 개정 내용은 유럽경제지역(European Economic Area: EEA) 내 국외 자회사들의 확정 손실의 그룹 내 공제를 허용하는 것임

115) 구체적 세율은 다음과 같음(원화 환산 환율은 2019. 9. 26. 기준임)

순자산	저축 간주 비율 (deemed saving portion)	투자 간주 비율 (deemed investments portion)
0 ~ 71,650유로 (0 ~ 약 9,400만원)	67%	33%
71,650 ~ 989,736유로 (약 9,400만 ~ 13억원)	21%	79%
989,736유로 이상 (약 13억원 이상)	0%	100%

116) Regjeringen.no, <https://www.regjeringen.no/no/dokumenter/forslag-til-endring-i-konsernbidragsreglene/id2664050/>, 접속일자: 2019. 9. 23

Ernst & Young, <https://www.ey.com/gl/en/services/tax/international-tax/alert-norwegian-government-proposes-introduction-of-cross-border-group-relief-rules>, 접속일자: 2019. 9. 23

- ▶ 개정안은 2019년 11월 13일까지 공개 의견수렴을 통해 2019년 과세연도부터 적용될 예정임
- 구체적인 변경내용은 그룹 내 현행 노르웨이 국내 법인 간 허용되던 그룹 공제를 일부 국외로 확장하는 것임
 - ▶ 노르웨이는 연결납세제도를 운영하지 않으나, 90% 이상 지분 보유 또는 동일 실체로부터 지배되는 등의 경우에는 그룹간 손실 공제를 허용하고 있었음
 - ▶ 이번 개정은 2017년 9월 17일 Yara International ASA v. Norway 사건에서 유럽자유 무역연합 법원이 현행 규정은 EEA 합의의 설립 자유의 권리(the right of freedom of establishment)를 침해한다고 판단한 것에 따른 것임
 - ▶ 개정안은 손실 공제를 EEA에 소재한 국외 자회사들에게까지 확대하되 확정 손실(endelig tap)에 한정함
 - 확정 손실은 과거의 이익 또는 향후 이익으로 공제되지 않는 손실임

나. 2020 예산법안 의회 제출

[조세동향 19-10호]

- 노르웨이 정부는 2019년 10월 7일 2020년 예산법안을 의회에 제출함¹¹⁷⁾
 - ▶ 2020 예산법안에서 정부는 지속적인 복지사회, 적극적인 환경정책, 기회균등, 치안의 4가지에 역점을 두고 있다고 밝힘
 - ▶ 조세 측면에서 사업과 개인에 대해 광범위한 조세감축 정책을 펴고 있으며, 소규모 창업기업의 지원과 환경세 강화 등을 담고 있음
- 소득세법상 여러 공제 및 창업기업 등의 주식매수선택권 혜택의 한도를 상향 조정함¹¹⁸⁾
 - ▶ 소득세법상 여러 공제제도의 한도를 상향 조정함
 - 근로소득의 소득세 최소공제액의 한도가 10만 800크로네¹¹⁹⁾에서 10만 4,450크로네로,

117) Det Kongelige Finansdepartement, the National Budget 2020 A summary, pp. 8-12

118) Norway - Budget for 2020 - direct tax measures(08 Oct, 2019), News IBFD, 검색일자: 2019. 10. 29

연금소득은 8만 5,050크로네에서 8만 7,450크로네로 상향 조정됨

- 연금 등을 수령하는 개인의 노령공제가 3만크로네에서 3만 2,330크로네로 상향 조정됨
- 통근비용의 공제 최대한도를 2만 2,700크로네에서 2만 3,100크로네로 상향 조정함
- ▶ 텔레비전 라이선스 요금의 폐지에 따라 소득세에서 지방세 목적의 인적공제가 5만 6,550크로네에서 5만 1,300크로네로 축소됨
- 노르웨이 방송공사는 향후 정부재정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요금을 징수하지 않을 것임
- ▶ 창업기업의 주식매수선택권에 세제혜택을 확대하여 최대 12명의 사용인을 고용한 기업에 대해 과세시기 이연을 현행 50만크로네에서 100만크로네로 상향 조정함
- 원칙적으로 주식매수선택권의 과세시기는 행사하는 시점이나 창업기업 등에 대해 실제 실현 시에 과세하여 과세이연 혜택을 부여하고 있음

■ 간접세에서 수입 소액물품에 대한 부가가치세 징수·납부를 공급자에게 이전시키며 이외에 소비세의 일부 세율 등을 조정함¹²⁰⁾

- ▶ 부가세 간소화제도의 일환으로 3천크로네 이하의 소액물품에 대해 12개월간 매출액이 5만크로네를 초과하는 국외 사업자는 노르웨이 부가가치세 사업자 등록을 하고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납부할 의무를 부여함
- 수입이 전자적 상거래를 통해 이루어진다면 전자적 상거래자는 간주 공급자로 분류됨
- ▶ 이외에 소비세에서 환경세를 개선하고 알코올, 담배세를 물가에 연동하여 인상하는 미미한 수준의 개정이 있음

119) 노르웨이 1크로네는 2019. 10. 29. 기준 원화 환산 시 126.27원으로, 10만 800크로네는 약 1,270만원임

120) Norway - Budget for 2020 - indirect tax measures(08 Oct, 2019), News IBFD, 검색일자: 2019. 10. 29

3 덴마크

가. 강제적 보고제도 채택 법안 공개

[조세동향 19-07호]

- 덴마크 정부는 2019년 7월 8일 EU지침 및 OECD의 강제적 보고제도를 실행하는 법안을 공개함¹²¹⁾
 - ▶ 법안은 재무장관에 중개인이 관련 정보를 보고하도록 하는 등의 EU지침과 OECD 규정을 실행하는 법안을 집행할 수 있도록 하는 권한을 부여하는 것이어서 아직 구체적인 내용을 포함하고 있지는 않음
 - 다만, 미준수에 대한 가산세는 기업 규모에 따라 최소 4만크로네에서 50만크로네¹²²⁾로 제안됨
 - EU지침의 주요 내용은 2020년 1월 1일부터 납세자와 중개인에게 역외 거래에 대해 보고할 것을 의무화하는 것임
 - ▶ 이 법안은 공개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2019년 10월에 의회에 제출될 것으로 예상됨

나. 국제 조세분야 개정안 공개

[조세동향 19-09호]

- 덴마크 조세부는 2019년 9월 12일 CFC 규정, 이전가격, 고정사업장 등의 국제 조세분야 법령을 개정하는 안을 공개함¹²³⁾
 - ▶ 조세부 장관은 이러한 개정안은 EU조세회피방지지침을 도입의 일환으로 조세회피를

121) <https://globaltaxnews.ey.com/news/2019-5857-denmark-publishes-draft-proposal-on-mandatory-disclosure-rules>, 검색일자: 2019. 7. 24

122) 원화 환산 시 약 700만원에서 약 8,800만원임

123) Skatteministeriet, <https://www.skm.dk/aktuelt/presse/pressemeddelelser/2019/september/danmark-skal-vaere-i-front-mod-skatteundgaelse>, 접속일자: 2019. 9. 23

Ernst & Young, <https://www.ey.com/gl/en/services/tax/international-tax/alert-denmark-publishes-draft-bill-on-international-taxation-for-public-comment>, 접속일자: 2019. 9. 23

방지하는 국제적 흐름에 부합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힘

- ▶ 관련 내용은 CFC 규정, 이전가격 문서화, 고정사업장 및 국외 실체의 확정 손실 공제의 내용을 담고 있으며, 2019년 10월 10일까지 의견수렴 후 국회에 제출될 예정임
- 구체적으로 CFC 규정 적용요건, 이전가격의 문서화를 강화하며, 고정사업장 규정을 OECD 기준에 맞추며 국외 실체 손실의 공제 요건을 새로이 규정함
 - ▶ CFC 규정에서 적용 기준에 자산 기준을 폐지하고, 금융소득 비율을 33.3%로 강화(현행 50%)하며, 지적재산권에서 창출되는 기타 소득을 금융소득의 개념에 포함함
 - ▶ 이전가격 규정에서 이전가격 문서를 소득신고 시(일반적으로 과세연도 종료 후 6개월) 제출하도록 하며, 이의 불이행 시 가산세를 부과하며 조사 시 추정가격에 근거한 과세가 가능하도록 하여 입증책임을 납세자에게 전환함
 - 현행은 과세관청의 요구 후 60일 내 제출하도록 되어 있음
 - ▶ 고정사업장규정에서 다자간협약에 따라 조세조약상 고정사업장 정의가 OECD MC 제5조에 따라 변경되었으므로, 내국세법상의 고정사업장 정의도 이에 맞춰 개정함
 - ▶ 국외 자회사, 고정사업장 등의 손실이 과거 이익 또는 미래 이익으로 상계되지 않고 다른 국가에서 공제될 수 없는 등의 확정 손실 요건에 부합하는 경우 덴마크 법인이 공제할 수 있도록 규정함
 - 국외 실체의 손실을 공제하지 않는 덴마크 규정이 EU법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2018년 6월 12일 유럽사법재판소(The Court of Justice of the European Union)의 결정에 따른 것임

4 독일

가. 통일세 감면 법안 발표

[조세동향 19-08호]

- 독일 재무부는 2019년 8월 12일 통일세(solidarity surcharge)를 2021년부터 감면하는 법안을 발표함¹²⁴⁾

- ▶ 통일세는 1995년 통일 직후의 동독과 서독의 경제 수준 차이를 해소하기 위하여 마련된 것으로서, 일정 수준 이상의 소득세 및 법인세에 대하여 5.5%의 추가 세율을 적용하는 ‘연대 부가세(추가 수수료)’ 방식으로 부과되어 왔음
 - ▶ 통일세가 30년간 운용되며 당초 도입 목적을 달성하였다는 비판적 여론과 최근 독일의 경제성장 둔화에 따른 경기 침체 우려를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정으로 평가됨
- 위 법안은 납세의무자의 소득을 기준으로 하여, 기존 납세의무자의 90% 이상에 대하여 2021년부터 통일세를 면제하도록 정함
- ▶ 독일 재무부의 지침에 따르면, 연소득 7만 3,874유로¹²⁵⁾ 이하의 1인 가구 근로자, 연소득 15만 1,990유로¹²⁶⁾ 이하의 2인 자녀를 둔 가정은 2021년부터 통일세를 면제받음
 - ▶ 나머지 상위 10% 내외의 고소득자는 2021년 이후에도 계속 납세의무를 부담함
 - 상위 3.5%의 고소득자¹²⁷⁾에게는 현행 5.5%의 세율을 유지하고, 나머지 6.5%의 고소득자에게는 감소된 세율을 적용함
 - 실제 세수 감소분은 기존 세수¹²⁸⁾의 절반 정도가 될 것으로 예상됨

5 룩셈부르크

가. 강제적 보고제도 및 자금세탁방지지침 실행 법안 의회 제출

[조세동향 19-08호]

- 룩셈부르크 정부는 2019년 8월 8일과 9일 EU의 조세 분야의 행정협력 및 자금세탁방지 지침을 실행하는 법안을 의회에 제출함¹²⁹⁾

124) Germany - Ministry of Finance issues draft bill on reduction of solidarity surcharge(13 Aug. 2019), News IBFD; Germany Moves to Scratch Reunification Tax Worth \$21 billion (1), Bloomberg Law: Tax(12 Aug, 2019)

125) 약 9,800만원(2019. 9. 4. 기준)

126) 약 2억원(2019. 9. 4. 기준)

127) 연소득 10만 9,451유로 이상의 1인 근로자, 연소득 22만 1,375유로 이상의 2인 자녀를 둔 가정

128) 2018년도 통일세 세수는 약 189억유로(약 25조 4,500억원, 2019. 8. 29. 기준)임

- ▶ 법안은 납세자와 중개인의 역외 보고대상거래를 보고하도록 하는 조세 분야의 행정 협력에 대한 EU지침(DAC 6)과 자금세탁 또는 공중협박금융의 목적으로 금융체계를 이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마련된 제5차 자금세탁방지지침(the Fifth Anti-Money Laundering Directive)을 도입하는 것임
- ▶ DAC 6과 자금세탁방지지침 도입 법안은 2019년 7월 26일 각료회의에서 승인된 것으로 의회의 의결을 통해 향후 입법될 예정임

■ 조세 분야의 행정협력에 대한 EU지침은 강제적 보고제도에 관한 것으로 대부분 EU지침과 동일함¹²⁹⁾

- ▶ 기본적으로 납세자 및 중개인 등에게 역외 보고대상거래의 보고 의무를 부여하는 것은 EU지침과 동일함
 - 보고대상거래를 식별하는 전형적인 특징도 EU지침과 동일하게 구성되어 있음
- ▶ 불이행 또는 지연, 누락 시 최대 25만유로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으나, 이러한 벌금은 사실관계와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자금세탁방지법안은 기존 법률을 개정하여 EU의 자금세탁방지지침을 도입함으로써 현재 상황에 적합한 내용을 채택하는 것으로 암호화폐 위험방지, 고위험 제3국 대응, 다른 국가의 감독기관과의 공조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음¹³¹⁾

- ▶ 자금세탁방지 의무의 범위에 암호화폐와 법정통화의 교환서비스 제공자와 관리지갑 제공자를 포함시켜 암호화폐 감시를 통해 자금세탁 등의 용도에 사용되지 않도록 함
- ▶ EU 집행위원회에서 고위험으로 식별된 국가에 대한 감독을 강화·협력하기 위해 대상 국가와의 거래 등에 강화된 주의의무와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inancial Action Task Force)에서 권고한 추가적인 경감 수단을 적용하도록 함
 - EU 집행위원회에서 고위험으로 식별된 국가는 아프가니스탄, 보스니아, 이란, 이라크, 사우디아라비아, 파나마 등 총 23개국임¹³²⁾

129) Chambre des Députés, <https://www.chd.lu/wps/portal/public/Accueil/TravailALaChambre/Recherche/RoleDesAffaires?action=doDocpaDetails&backto=/wps/portal/public/Accueil/Actualite&id=7465>, & <https://www.chd.lu/wps/portal/public/Accueil/TravailALaChambre/Recherche/RoleDesAffaires?action=doDocpaDetails&id=7467>, 검색일자: 2019. 8. 26

130) KPMG, <https://home.kpmg/lu/en/home/insights/2019/08/dac6-bill-is-issued.html>, 검색일자: 2019. 8. 26

131) Deloitte, Regulatory News Alert Luxembourg Draft Law 7467 partly transposing Directive (EU) 2018/843 (AMLD V), 19 August 2019

- ▶ 역외 거래의 증가로 다른 국가들의 감독기관과의 공조 중요성이 높아짐에 따라 이의 협력체계를 강화하는 내용을 포함함

나. 제3국과의 혼성불일치 EU지침 채택 법안 의회 제출

[조세동향 19-08호]

- 룩셈부르크 정부는 2019년 8월 8일 EU 제3국과의 혼성불일치 지침을 실행하는 법안을 의회에 제출함¹³³⁾
 - ▶ 기존 EU 회원국 내의 혼성불일치를 다루는 법안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 중인데 이번 법안은 EU의 제3국과의 혼성불일치 지침을 채택하여 이를 제3국과의 거래로 확장하는 내용임
 - ▶ 법안은 혼성체, 혼성금융상품 등의 불일치를 다루고 있으며, 일부 예외 규정을 제외하고 법인 납세자와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는 비거주자의 고정사업장에만 적용됨
- 이번 법안은 기존의 혼성불일치 법안에 혼성체, 혼성금융상품 등의 혼성불일치 대응을 다루고 있으며, 역혼성체 규정은 시기를 달리하여 적용될 예정임
 - ▶ 설립지 관할국과 투자 관할국에서 실체와 도관으로 간주하여 발생하는 혼성체, 지급하는 관할국에서는 비용이지만 수취하는 관할국에서는 배당으로 보아 발생하는 혼성금융상품, 금융상품 이전 시 이전 여부를 다르게 보아 발생하는 혼성이전 등의 대응 내용을 담고 있음¹³⁴⁾
 - 이러한 혼성불일치에 따라 이중공제 또는 소득비과세 문제를 공제부인 또는 소득에 과세하는 규정을 담고 있음
 - ▶ 또한 룩셈부르크에 설립된 도관체로 역혼성체가 될 수 있는 유한파트너십(société en commandite simple), 특별유한파트너십(société en commandite spéciale) 등에 비거

132) European Commission, https://europa.eu/rapid/press-release_IP-19-781_en.htm, 검색일자: 2019. 8. 26

133) Chambre des Députés, <https://www.chd.lu/wps/portal/public/Accueil/TravailALaChambre/Recherche/RoleDesAffaires?action=doDocpaDetails&id=7466> & Ernst & Young, <https://www.ey.com/gl/en/services/tax/international-tax/alert-luxembourg-submits-draft-law-implementing-eu-atad-2-to-parliament>, 검색일자: 2019. 8. 26

134) 이외에 혼성 고정사업장, 이전 불일치, 이중 거주자 등이 있는데 일반적인 혼성불일치 내용이므로 생략함. 자세한 내용은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연구자료(<http://www.kipf.re.kr/Publication/B/세법연구-16-02-우리나라-혼성불일치-규정-도입을-위한-고려사항-연구/524955>) 참조

주자가 50% 이상의 의결권 등을 가지는 경우 법인세 납세의무를 부여함

- ▶ 혼성체 등의 혼성불일치 규정은 2020년 1월 1일부터, 역혼성체 규정은 2022년부터 적용될 예정임
- ▶ 혼성불일치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사실의 입증 책임은 납세자에게 있음

다. 2020 예산법안 의회 제출

[조세동향 19-10호]

■ 룩셈부르크 재무부 장관은 2019년 10월 14일 2020년 예산법안을 의회에 제출함¹³⁵⁾

- ▶ 2020년 예산법안은 환경보호, 미래에 대한 투자, 일상생활의 세 가지에 중점을 두는 것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밝힘
- ▶ 예산법안에서 세법 관련 개정안은 이전가격 사전합의 절차(Advance Tax Agreements)의 개정 내용이 포함되어 있음

■ 예산법안에서는 기존 사전합의 절차 효력을 중지시키고 새로운 합의를 하도록 함¹³⁶⁾

- ▶ 룩셈부르크는 2015년 사전합의 절차를 개선하고 표준화하였는데 이때 효력기간을 5년으로 두었음
- ▶ 따라서 이번 예산법안에서는 2020년부터 이전의 합의 효력을 모두 중지시키기 때문에 사전합의 절차를 적용받으려는 납세자는 새로운 합의를 신청하도록 함

라. 유류세 인상안 공개

[조세동향 19-10호]

■ 룩셈부르크 재무부는 2019년 12월 16일 유류 소비세율을 인상하는 안을 공개함¹³⁷⁾

135) Le Gouvernement Du grand-Duche De Luxembourg, <https://budget.public.lu/lb/budget2020.html>, 검색일자: 2019. 10. 29

136) KPMG, <https://home.kpmg/lu/en/home/insights/2019/10/2020-budget-bill-released-expiry-tax-rulings-issued-before-2015.html>, 검색일자: 2019. 10. 29

137) Le gouvernement luxembourgeois, <https://mfin.gouvernement.lu/fr/actualites.gouvernement%2Bfr%2Bactualites>

- ▶ 이 안은 휘발유에 대해 리터당 기존 0.01유로에서 0.01~0.03유로로, 디젤에 대해 리터당 기존 0.02유로에서 0.03~0.05유로로 인상하는 것으로 이러한 인상된 유류세는 2020년 2월에서 4월 중에 시행될 예정임
- ▶ 이러한 유류세 인상은 기후변화에 대한 파리협약과 이에 따른 EU의 세부법령에 따른 것으로, 룩셈부르크는 주변 국가들에 비해 낮은 수준의 유류가격을 유지하고 있어 이 간격을 좁히기 위한 것이라고 밝힘

6 벨기에

가. 플레미쉬 정부 2020~2024 세제 변경 집권정당 간 합의서 작성

[조세동향 19-11호]

- 2019년 9월 30일, 벨기에 플레미쉬 정부의 세금 변경에 관해 집권정당 간 합의서가 작성됨¹³⁸⁾
- 주택 담보 대출에 대한 세금 감면 혜택이 폐지됨
 - ▶ 거주 중인 자가 주택의 담보 대출에 대한 세금 감면이 단계적으로 폐지됨
 - 이에 따라 2020년부터 체결되는 주택 담보 대출에는 세금 감면이 적용되지 않음
 - ▶ 반면 주택 구입에 대한 취득세는 7%에서 6%로 인하함
- 보조금의 성격으로 제공되는 가사노동 서비스 바우처에 대한 세금 감면 혜택이 축소됨
 - ▶ 가사노동 서비스 바우처의 가격은 장당 9유로¹³⁹⁾이며, 현재 30%의 세금 인하 혜택으로 6.3유로¹⁴⁰⁾에 판매되고 있음

[%2Btroutes_actualites%2Bcommuniqués%2B2019%2B12-decembre%2B16-augmentation-accises.html](#), 검색일자: 2019. 12. 31

138) Belgium - Tax changes in Flemish region in government plans for period 2020-2024 - announced(23 Oct, 2019), News IBFD

139) 2019. 11. 29. 원화 기준 환산 시 약 11,687원임

140) 2019. 11. 29. 원화 기준 환산 시 약 8,181원임

- ▶ 해당 세제 혜택을 2020년부터 20%로 축소하여 7.2유로¹⁴¹⁾에 판매함
- 2021년부터 저소득층 근로자에 대한 세금 우대 조치로 직장 장려금(job bonus) 제도가 도입됨
 - ▶ 월급여가 1,700유로 이하인 정규직 직원은 연간 최소 600유로¹⁴²⁾의 장려금이 지급되고, 월급여 2,500유로¹⁴³⁾ 미만까지 장려금을 받을 수 있음
 - 월급여 1,700유로¹⁴⁴⁾ 이상부터는 급여액에 비례하여 장려금이 점진적으로 감소함
 - ▶ 장려금 수준은 실질 근로시간에 따라서도 달라짐
- CO₂ 배출량 계산법이 수정 적용되어 자동차의 CO₂ 배출 예측량이 종전보다 증가하며, CO₂ 배출량이 적은 자동차의 경우 세금 부담이 줄어들

7 스웨덴

가. 은행세 도입 계획 발표

[조세동향 19-09호]

- 스웨덴 재무부 장관은 2019년 8월 31일 은행세 도입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힘¹⁴⁵⁾
 - ▶ 정부는 2022년 기준 50억크로나¹⁴⁶⁾ 수준의 은행세를 도입하는 계획을 공개함
 - 구체적인 안은 향후 공개될 예정이나 정부는 EU의 보조금 규정¹⁴⁷⁾에 부합하는 적

141) 2019. 11. 29. 원화 기준 환산 시 약 9,350원임

142) 2019. 11. 29. 원화 기준 환산 시 약 77만 9천원임

143) 2019. 11. 29. 원화 기준 환산 시 약 324만 6천원임

144) 2019. 11. 29. 원화 기준 환산 시 약 220만 8천원임

145) Regeringskansliet, <https://www.regeringen.se/artiklar/2019/08/bankskatt-faktaunderlag/>, 접속일자: 2019. 9. 23

146) 2019. 9. 23. 원화 기준 환산 시 약 6,100억원

147) 은행세 도입 시 다른 유사 수신기관 등에 동일한 과세를 하지 않아 사실상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과 부과된 세수로 향후 금융위기 시 은행 지원에 대한 두 가지 측면에서 이슈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추정되나, 스웨덴 재무부는 은행세의 어떤 성격이 EU의 보조금 규정에 반할 가능성이 있는지에 대해 명확히 밝히고 있지 않음

절한 형태를 갖추겠다고 함

- ▶ 도입 목적으로 금융위기가 가져오는 생산·고용에 미치는 사회적 비용과 이에 따른 세수 감소와 공공지출을 대비하기 위해 금융산업에 세수 확대가 필요하기 때문임
- 실제 세수는 국방비 증액에 사용될 것이며 이러한 사항은 사회민주당과 녹색당의 합의를 거친 것으로 알려짐¹⁴⁸⁾

나. 2020 예산법안 의회 발표

[조세동향 19-10호]

□ 스웨덴 정부는 2019년 9월 18일 세법 개정안을 포함한 2020년 예산법안을 의회에 제출함¹⁴⁹⁾

- ▶ 예산법안은 2019년 초 사회민주당, 중앙당, 자유당 및 녹색당의 합의에 근거한 것으로 일자리 창출, 환경변화 대응, 사회안전망 확충 및 범죄 대응에 초점을 맞추고 있음
- ▶ 예산법안에 포함된 세법 개정안은 안정적인 세수 창출과 더불어 지속적인 성장과 고용을 목적으로 높은 세율의 구간 폐지, 노인에 대한 경감세율 적용, 플라스틱 운반용품에 대한 과세 도입 등의 내용을 담고 있음

□ 소득세와 관련하여 최고세율 구간 폐지 및 여러 공제를 확대함¹⁵⁰⁾

- ▶ 소득세 최고세율 구간인 (68만 9천크로나¹⁵¹⁾) 이상의 세율 구간을 폐지함
- ▶ 65세 이상이면서 월 1만 7천크로나 이상의 연금 등의 소득을 수취하는 개인에 대한 세율을 근로소득과 유사한 수준으로 낮춤
- ▶ 주거하는 주요 주택의 자본소득 이연 한도를 2020년 7월 1일부터 300만크로나로 적용함
- 한도는 145만크로나로 2016년 6월 21일부터 2020년 6월 30일까지 유예되고 있었으나, 유예가 종료되면서 한도를 상향 조정함

148) Reuters, <https://www.reuters.com/article/us-sweden-banking-tax/sweden-to-introduce-bank-tax-to-fund-defense-boost-idUSKCN1VL09S>, 검색일자: 2019. 9. 23

149) Government Offices of Sweden, <https://www.government.se/press-releases/2019/09/budget-bill-for-2020-reforms-for-a-stronger-society/>, 검색일자: 2019. 10. 29

150) Sweden - Budget for 2020 presented to parliament(18 Sep. 2019), News IBFD, 검색일자: 2019. 10. 29

151) 스웨덴 1크로나는 2019. 10. 29. 기준 원화 환산 시 120.02원으로, 68만 9천크로나는 약 8,270만원임

- ▶ 북스웨덴과 스베알란드 북서 지방 개인들에게 1,650크로나의 특정 공제를 부여함
 - 이는 국가 중심과 원거리에 위치하고 인구가 적으며 일상 서비스가 양호하지 않은 지역의 지원을 위한 것임¹⁵²⁾
- 이외에 소각폐기물과 플라스틱 운반용품에 대한 과세가 도입됨¹⁵³⁾
 - ▶ 2020년 4월 1일부터 소각폐기를 운영하는 자에게 소각폐기물 1톤당 125크로나를 과세함
 - ▶ EU포장지침(EU Packaging Directive)에 기반하여 2020년 5월 1일부터 플라스틱 운반용품당 3크로나의 과세가 이루어짐
 - 식료품 등을 운반하는 비닐 백 등은 이보다 낮은 세율이 적용될 예정임

다. 강제적 보고규정 법안 공개

[조세동향 19-12호]

- 스웨덴 정부는 2019년 12월 6일 세무조력자 등에게 조세약정을 보고하도록 하는 강제적 보고 법안을 공개함¹⁵⁴⁾
 - ▶ 이 법안은 납세자와 중개인 등에 대해 2020년 7월 1일부터 보고대상거래의 보고를 의무화하는 것으로 EU의 강제적 보고와 역외조세약정의 정보교환 지침을 이행하는 것임
 - 다만, 소급 적용으로 인해 2018년 6월 25일과 2020년 7월 1일간에 체결된 약정도 대상으로 포함하고 있음
 - ▶ 이 법안은 몇 주 이내에 의회의 승인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됨
- 법안의 내용은 EU의 지침과 대부분 일관되게 입법되었으나, 향후 변경의 여지가 있음¹⁵⁵⁾

152) Deloitte, https://research.ibfd.org/#/doc?url=/data/tns/docs/html/tns_2019-09-18_se_1.html, 검색일자: 2019. 10. 29

153) Deloitte, https://research.ibfd.org/#/doc?url=/data/tns/docs/html/tns_2019-09-18_se_1.html, 검색일자: 2019. 10. 29

154) Regeringskansliet, <https://www.regeringen.se/pressmeddelanden/2019/12/forslag-om-skarpta-krav-for-skatteradgivarer-till-lagradet/>, 검색일자: 2019. 12. 31

155) Ernst & Young, [https://www.ey.com/gl/en/services/tax/international-tax/alert-sweden-publishes-new-draft-](https://www.ey.com/gl/en/services/tax/international-tax/alert-sweden-publishes-new-draft)

- ▶ 보고대상의 특징(hallmarks), 보고대상 중개인, 보고기간 등은 모두 EU지침과 동일하게 입법되었음
 - EU지침은 중개인을 자문사, 은행, 각종 전문가 등을 포함하고 있으며, 보고대상 특징으로 낮은 조세부담, 낮은 수준의 자금세탁방지법의 적용 등을 제시하고 있음¹⁵⁶⁾
- ▶ 의무 위반 시 최대 31만 5천코로나¹⁵⁷⁾가 적용될 수 있으며 사후적으로 자발적 이행 시 경감될 수 있음
- ▶ 현행 법안은 EU지침과 일관되나 정부는 역외 약정 이외에 국내 약정을 적용 범위에 포함하는 것을 고려 중이라고 알려짐

8 스페인

가. 강제적 보고제도 채택 법안 공개

[조세동향 19-07호]

- 스페인 정부는 2019년 6월 20일 강제적 보고제도와 역외 조세약정의 정보교환에 대한 EU지침을 실행하는 법안을 공개함¹⁵⁸⁾
 - ▶ 이 법안은 EU지침을 실행하는 법안으로 납세자와 중개인에 대해 2020년 1월 1일부터 역외 보고 대상 약정을 보고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음
 - ▶ 2019년 7월 12일까지 공개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이후 정식적인 입법 절차를 거칠 예정임
- 이 법안은 대부분 EU지침을 따르고 있으나, 일부 항목에서 보다 강화된 의무를 부여하고 있음

legislation-on-mandatory-disclosure-regime, 검색일자: 2019. 12. 31

156) 이에 대한 내용은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주요국의 조세동향」, 18-05호, 2018을 참조

157) 원화 환산 시(124.23원/1코로나, 2019. 12. 31) 약 39백만원임

158) <https://globaltaxnews.ey.com/news/2019-5778-spain-issues-draft-mandatory-disclosure-regime-legislation>

- ▶ 적용 범위 및 정의는 대부분 EU지침에 따르며, 국내 거래는 보고 대상에서 제외함
 - 가치 측정이 어려운 무형자산(hard-to-value intangibles)의 거래에 낮은 세율이 적용되는 등의 전형적인 특징(hallmark)이 포함된 거래에 대해 보고를 강제함
 - EU지침상 중개인은 EU를 기반으로 한 세무전문가, 은행가, 변호사 등을 대상으로 함
- ▶ 의무불이행 시 최소 3천유로에서 최대 수취한·합의된 보수 또는 약정이 납세의무에 미치는 금액을 한도로 부과할 수 있음
- ▶ 다만, EU지침에 포함되지 않은 연간보고 의무를 도입하였으며 보고 대상 약정의 전형적인 특징을 추가적으로 기술하고 있음

9 아일랜드

가. 신규 부가가치세 등록 시스템 공개

[조세동향 19-07호]

- 아일랜드 국세청은 2019년 6월 15일 새로운 부가가치세 등록 시스템을 공개함¹⁵⁹⁾
 - ▶ 국내 전용 또는 EU 내 거래용으로 이원화되는 체계로, 현재 온라인 시스템 업데이트가 이루어지고 있음
 - ▶ 6월 17일 이후 부가가치세 등록을 한 업체에 대해 적용하고, 상용화는 9월부터 이루어질 예정임¹⁶⁰⁾
- 국내 전용 시스템은 아일랜드 내에서만 재화 및 서비스를 거래하는 기업들만 신청할 수 있음
 - ▶ 국내 전용 시스템의 경우 부가가치세 등록 승인을 온라인 시스템 내에서 즉시 할 수 있어 절차가 간소화됨

159) Tax Notes International, Ireland Splitting Domestic, EU VAT Registration Process, June 24, 2019.

160) 아일랜드 국세청, <https://www.revenue.ie/en/news/articles/separating-domestic-and-eu-vat-registration.aspx>, 검색일자: 2019. 7. 22

- ▶ 국내 전용으로 등록하고 추후 EU 내에서 교역하고자 하는 경우, 별도의 신청서를 제출하여 EU 내 거래용 시스템 등록을 진행할 수 있음
- 별도로 국내 전용 시스템에 등록하지 않을 경우 기존의 부가가치세 등록 업체들은 모두 EU 내 거래용 시스템 이용 업체로 처리되며, EU의 VIES(VAT Information Exchange System)에도 자동으로 등록됨
- ▶ VIES는 상품이나 서비스에 대한 국경 간 거래에 대해 EU에 등록된 기업들의 부가가치세 식별번호를 확인하는 전자적 수단으로, 이를 통해 아일랜드를 비롯한 모든 EU 지역 내 상품 인수 및 공급에 대한 상호 보고가 용이해짐

나. 국외전출세 개정 편람 공표

[조세동향 19-08호]

- 아일랜드 국세청은 2019년 7월 11일 국외전출세 편람을 개정하는 eBrief No.137/19를 공표함¹⁶¹⁾
 - ▶ 본 편람은 2018년 10월 10일부터 보다 넓은 기반으로 적용되는 국외전출세와 관련한 규정들을 설명하고 있으며, 1997년 조세통합법(Taxes Consolidation Act: TCA)을 통해 도입되었던 조세회피방지 국외전출세의 조항들을 새롭게 대체함¹⁶²⁾
- 개정된 국외전출세는 기업이 자산을 해외로 이전하여 아일랜드 정부가 과세권을 상실할 경우, 자산 처분이 발생한 것으로 간주하여 미실현된 자본소득에 대해 세금을 부과함¹⁶³⁾
 - ▶ EU 소재 기업이 ① 아일랜드에 있는 고정사업장에서 본사 또는 다른 국가에 있는 사업장으로 자산을 이전하는 경우 ② 아일랜드 사업장에서 수행한 사업을 다른 국가로 이전하는 경우 ③ 아일랜드 사업장을 다른 국가로 이전하는 경우 아일랜드 정부가 과세권을 상실함

161) Ireland - Exit tax provisions - manual updated(25 July 2019), News IBFD

162) 아일랜드 국세청, <https://www.revenue.ie/en/tax-professionals/tdm/income-tax-capital-gains-tax-corporation-tax/part-20/20-02-01.pdf>, 검색일자: 2019. 9. 4

163) 아일랜드 국세청, <https://www.revenue.ie/en/tax-professionals/tdm/income-tax-capital-gains-tax-corporation-tax/part-20/20-02-01.pdf>, 검색일자: 2019. 8. 20.

- ▶ 상기 언급한 사건의 발생 시 자산의 처분이 이루어진다고 가정하며, 처분 시점의 시장 가치를 기준으로 세금이 적용됨
- 국외전출세는 12.5%의 세율로 부과하며, 조세회피 목적이 있다고 간주될 경우 33%의 세율이 적용됨¹⁶⁴⁾
 - ▶ 자본소득세가 없거나 낮은 지역으로 자산을 처분할 목적으로 자산 또는 해당사업을 이전한다고 판단되는 경우, 사업적 사유로 이전하는 전출과는 구별하여 아일랜드 국내 자본소득세율에 준하는 33%를 적용함
- 본 국외전출세가 면제되는 예외 규정이 존재함¹⁶⁵⁾
 - ▶ 아일랜드가 자산의 후속 처분에 대한 과세권을 보유하는 경우 국외전출세가 부과되지 않으며, 이러한 자산에는 토지, 광물 또는 채굴권 등이 포함됨
 - ▶ 고정사업장 국외 이전 후에도 지속적으로 사용하는 아일랜드 국내 자산의 경우 예외가 적용됨
 - ▶ 은행의 자본과 유동성 확보를 위한 EU의 prudential requirement¹⁶⁶⁾와 관련한 이전이고, 해당 자산이 12개월 이내에 아일랜드로 역이전될 경우 국외전출세가 부과되지 않음
- 국외전출세 납부자는 할부 납부를 통해 5년간 납부를 연장할 수 있음¹⁶⁷⁾
 - ▶ 첫 납부는 명시된 날짜에 이행해야 하며, 이후 매년 동일한 날짜에 다음 차수의 납부를 진행함

164) 상동

165) 상동

166) 경제적 충격 상황에서 은행이 계속 자금을 제공하여 만회할 수 있도록, 은행 부문의 탄력성을 강화하는 목적의 규정임(유럽연합 집행위원회, https://ec.europa.eu/info/business-economy-euro/banking-and-finance/financial-supervision-and-risk-management/managing-risks-banks-and-financial-institutions/prudential-requirements_en, 검색일자: 2019. 8. 29)

167) 아일랜드 국세청, <https://www.revenue.ie/en/tax-professionals/tdm/income-tax-capital-gains-tax-corporation-tax/part-20/20-02-01.pdf>, 검색일자: 2019. 8. 20

다. 2020년 예산안 의회 제출

[조세동향 19-10회]

□ 아일랜드 재무부는 2019년 10월 8일 2020년 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함¹⁶⁸⁾

1) 법인세¹⁶⁹⁾

□ 법인세의 세율은 12.5%로 유지되나 배당소득의 원천징수세가 인상되며, R&D 세액공제를 강화함

- ▶ 20%이던 배당소득 원천징수세(Dividend Withholding Tax: DWT)는 2020년 1월 1일부터 25%로 인상됨
- ▶ R&D 세액공제율의 경우 정부의 승인을 받은 소규모 기업은 25%에서 30%로 확대됨
 - 소규모 기업의 경우 사업 시작 전 발생하는 사전지출에 대해서도 부가가치세 및 근로소득세 세액 한도 내에서 R&D 세액공제가 가능해짐
- ▶ 대학 및 직업교육과정과 같은 R&D 교육 아웃소싱에 대한 세액공제 한도는 모든 기업에 대해 5%에서 15%로 증가함

□ EU 및 OECD의 지침을 반영하여 일부 규정이 변경됨¹⁷⁰⁾

- ▶ OECD 2017 Transfer Pricing Guidelines에 따라 국외 대상의 비영리(non-trading¹⁷¹⁾) 거래, 유형자본 거래 및 중소기업(SMEs)에까지 이전가격 규칙의 적용을 확대함
- ▶ EU 조세회피방지지침(Anti-Tax Avoidance Directive: ATAD) 이행 지체에 대한 유럽 위원회의 지적에 따라 관련 규칙을 즉시 도입함
 - 회사 간 고금리 대출로 인위적인 비용 인상을 통해 세금을 공제받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CFC 규칙을 도입함
 - 이자공제제한 규칙을 시행하여 부동산펀드에 의한 세금 회피를 방지하고, 자본 처

168) Ireland - Budget for 2020 - summary(10 Oct. 2019), News IBFD

169) Ireland - Budget for 2020 - corporation tax(10 Oct. 2019), News IBFD

170) Ireland Budget Plans New Measures to Curb Tax Abuse, Bloomberg Law: Tax(Oct 18, 2019)

171) 이익 창출을 목적으로 재화 및 서비스를 판매하는 거래와 달리, 대중, 기업, 단체 및 정부로부터 운영을 위한 보조금 등을 지원받아 지역 사회에 기여하는 것을 주요 목적으로 하는 것을 의미함. 공립 병원, 도서관, 자선단체, 정부 소유의 교육기관 등이 관련 기관에 해당함

분과 관련한 구제 조치를 제한함

- 혼성불일치 규칙을 도입하여 국가 간 세제 차이를 악용하여 중복 공제를 적용받는 탈세 행위를 방지함

2) 개인소득세 및 고용 관련 인센티브¹⁷²⁾

■ 일부 세목의 세액 공제 및 면세 조항을 강화함

- ▶ 개인소득세 공제한도가 1,500유로¹⁷³⁾에서 1,600유로¹⁷⁴⁾로, 가정 간병인 세금 공제는 1,350유로¹⁷⁵⁾에서 1,500유로¹⁷⁶⁾로 증가함
- ▶ 자녀 상속에 적용되는 자본취득세(CAT)에 대한 면세 기준액이 32만유로¹⁷⁷⁾에서 33만 5천유로¹⁷⁸⁾로 증가함
 - 2019년 10월 9일 이후의 상속과 관련하여 적용됨

■ 직원 주주 프로그램(Key Employee Engagement Programme: KEEP)의 자격 기준을 완화함

- ▶ 중소기업의 인재 유치를 위해 도입한 제도로, 중소기업이 직원에게 주식을 부여할 경우 취득 및 주식 활동 시에는 과세되지 않고 처분할 경우에만 세금이 발생함¹⁷⁹⁾
 - 직원 수 250명 미만, 연간 매출액이 5천만유로¹⁸⁰⁾를 초과하지 않으며, 연간 대차대조표 총액이 4,400만유로¹⁸¹⁾를 초과하지 않는 기업이 대상임
- ▶ 계열사를 보유한 회사까지 대상 기업에 포함시키고, 시간제 근로자 및 유연근로자까지 자격을 갖게 됨

172) Ireland - Budget for 2020 - personal income tax measures and employment incentives(10 Oct. 2019), News IBFD

173) 2019. 10. 29. 원화 기준 환산 시 약 193만 8천원임

174) 2019. 10. 29. 원화 기준 환산 시 약 206만 7천원임

175) 2019. 10. 29. 원화 기준 환산 시 약 174만 4천원임

176) 2019. 10. 29. 원화 기준 환산 시 약 193만 8천원임

177) 2019. 10. 29. 원화 기준 환산 시 약 4억 1천만원임

178) 2019. 10. 29. 원화 기준 환산 시 약 4억 3천만원임

179) KPMG 홈페이지, <https://home.kpmg/ie/en/home/insights/2018/02/key-employee-engagement-programme.html>, 검색일자: 2019. 10. 25

180) 2019. 10. 29. 원화 기준 환산 시 약 646억 1천만원임

181) 2019. 10. 29. 원화 기준 환산 시 약 568억 5천만원임

■ 외국인 및 해외 근무 근로자에 대한 세금 감면 조치의 소멸 기한을 2022년 12월 31일로 연장함

▶ 특정 외국근로자 구제 프로그램(Special Assignee Relief Program: SARP)의 종료일을 2020년에서 2022년으로 연장함

- 아일랜드에서 근무하는 특정 외국 근로자에게 2012~2020년의 기간 동안 소득세 감면 혜택을 제공하는 프로그램으로, 2019년 기준으로 7만 5천유로¹⁸²⁾ 초과 100만유로¹⁸³⁾ 이내의 소득액에 대해 30%를 소득 공제함¹⁸⁴⁾

▶ 아일랜드 세법상 거주자이거나, 해외 근무 중인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해외 소득 공제 (Foreign Earnings Deduction: FED) 또한 2022년 12월 31일까지 기한을 연장함

■ 고용 및 투자 인센티브(Employment and Investment Incentive: EII)의 초기 연도 투자 관련 조항 및 투자 한도액을 확대함

▶ 초기 연도 투자에 대해 세율 40%의 소득세 완전 감면의 혜택을 부여하며, 연간 투자 한도는 15만유로¹⁸⁵⁾에서 25만유로¹⁸⁶⁾로 증가함

▶ 최소 10년 이상 투자자의 경우 연간 50만유로¹⁸⁷⁾의 새로운 투자 한도를 도입함

3) 기타¹⁸⁸⁾

■ 소비세

▶ 1회성 베팅에 한하여 1년에 최대 5만유로¹⁸⁹⁾의 한도에서 베팅 및 베팅 중개세를 경감함

▶ 담배 관련 세금을 궤련형 담배 한 갑당 50센트¹⁹⁰⁾를 인상하며, 다른 종류의 담배 역

182) 2019. 10. 29. 원화 기준 환산 시 약 9,691만원임

183) 2019. 10. 29. 원화 기준 환산 시 약 12억 9천만원임

184) 아일랜드 국세청, <https://www.revenue.ie/en/personal-tax-credits-reliefs-and-exemptions/income-and-employment/special-assignee-relief-programme/index.aspx>, 검색일자: 2019. 10. 25

185) 2019. 10. 29. 원화 기준 환산 시 약 1억 9천만원임

186) 2019. 10. 29. 원화 기준 환산 시 약 3억 2천만원임

187) 2019. 10. 29. 원화 기준 환산 시 약 6억 5천만원임

188) Ireland - Budget for 2020 - indirect taxes, stamp duty and additional tax measures(10 Oct, 2019), News IBFD

189) 2019. 10. 29. 원화 기준 환산 시 약 6,500만원임

190) 2019. 10. 29. 원화 기준 환산 시 약 646원임

시 동일한 비율로 인상함

- ▶ 과세 표준을 50% 경감하는 소규모 양조장의 기준을 연간 4만hl에서 5만hl로 확대함
 - 구제 대상 물량은 연간 최대 3만hl까지로 종전과 동일함

■ 인지세

- ▶ 2019년 10월 9일 이후 양도하는 비거주 재산에 대한 인지세를 6%에서 7.5%로 인상함
 - 영업권, 채무자, 계약 혜택 등과 같은 사업 자산 판매 계약 및 비거주 부동산 임대 에 대한 할증료까지 적용됨
- ▶ 주식 양도에 대해 부과하는 1% 인지세 적용 범위를 2014년 회사법 제9조에 따라 주식취소제도를 활용한 회사의 양도까지 확대함

■ 환경세

- ▶ 차량등록세 및 환경 건강 부과금을 2020년 1월 1일부터 카테고리 A에 해당하는 모든 차량에 적용하며, 2019년에 도입된 경유 차량에 대한 추가 세금은 종료함
 - 카테고리 A에는 세단, 스테이션 왜건, 해치백, 컨버터블, MPV, 지프 및 고정 좌석이 10개 미만인 미니버스가 포함됨¹⁹¹⁾
 - 최대 세액은 경유 차량의 경우 4,850유로,¹⁹²⁾ 다른 차량의 경우 600유로¹⁹³⁾임
- ▶ 하이브리드 및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차량(PHEV)에 대한 구제 조치는 2020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함
 - CO₂ 배출량 80g/km를 초과하는 하이브리드 전기 자동차와 65g/km를 초과하는 PHEV는 세금 경감 대상이 아님
- ▶ 탄소세율은 CO₂ 배출 톤당 2~26유로¹⁹⁴⁾를 인상하며, 이에 따라 일부 경유 및 중유에 대한 석유세(Mineral Oil Tax: MOT)가 2019년 9월부터 인상됨
 - 천연가스 및 고체 연료의 MOT는 2020년 5월 1일부터 인상될 예정임
- ▶ 2020년 1월 1일부터 산업용과 비산업용의 전기 요금이 동일해짐

191) VRT Ireland 홈페이지, <https://www.vrt.ie/faq/vrt-vehicle-categories>, 검색일자: 2019. 10. 28

192) 2019. 10. 29. 원화 기준 환산 시 약 626만 7천원임

193) 2019. 10. 29. 원화 기준 환산 시 약 77만 5천원임

194) 2019. 10. 29. 원화 기준 환산 시 약 2,584원~3만 4천원임

라. 특정 자본소득에 대한 면세조항 개정

[조세동향 19-12호]

- 2019년 12월 12일 아일랜드 국세청은 Finance Act 2017에서 도입된 특정 자본소득의 면세 조항의 세부 사항을 개정하는 eBrief No.212/19를 발표함¹⁹⁵⁾

 - ▶ 지금까지는 Finance Act 1970 section 53하의 적금 관련 이득이나, 베탱 및 복권 관련 소득, 상해 혹은 명예훼손에 대한 보상, 보험회사로부터 수령하는 연금 등에 대해 세금이 면제되어 왔음¹⁹⁶⁾
- 이번 개정을 통해 기부금, 자영업자의 신탁자금, 연금 일시 지급액 등에 대해서도 자본소득세가 부과되지 않게 됨¹⁹⁷⁾

 - ▶ 기부약정서에 근거한 연간 납입금은 세금 부과 대상이 아님
 - ▶ Section 784(4)에 근거한 자영업자의 신탁자금의 혜택은 일반적으로 일시불이 아닌 연금의 형태로 지급되나, 연금을 지급받지 않고 이자를 포함한 금액을 환급하게 되는 경우 이에 대한 세금이 면제됨
 - ▶ 퇴직 후 일시불로 지급받는 연금액에 대해서도 세금이 부과되지 않음

10 영국

가. 상속세 간소화 권고사항 공개

[조세동향 19-07호]

- 영국 재무부 조세간소화국(Office of Tax Simplification)은 2019년 7월 5일 상속세 간소

195) Ireland - Capital gains tax - exemption of certain compensation payments(16 Dec, 2019), News IBFD,

196) Chartered Accountants Ireland, <https://www.charteredaccountants.ie/taxsource/1997/en/act/pub/0039/sec0613.html>, 검색일자: 2019. 12. 20

197) 아일랜드 국세청, <https://www.revenue.ie/en/tax-professionals/tdm/income-tax-capital-gains-tax-corporation-tax/part-19/19-07-10.pdf>, 검색일자: 2019. 12. 20

화를 위한 권고사항을 공개함¹⁹⁸⁾

- ▶ 이 보고서는 상속세제도를 보다 이해하기 쉽도록 단순화하고 직관적이며 용이한 운영을 도모하기 위한 것임
- ▶ 보고서에서는 증여(lifetime gifts), 자본소득세와의 상호작용, 사업과 농업의 3개 분야로 구분하여 총 11개의 권고사항을 담고 있음

■ 첫 번째 권고사항은 증여에 대한 것으로 피상속인의 생전 증여의 취급과 상속과의 관계에 대한 것임

- ▶ 면제와 관련하여 기존 혼인공제 등을 일반화된 연간 증여 면제로 개정하면서 면제의 수준을 재검토하도록 하며, 가처분소득에서 발생한 일상적 증여 공제를 개혁하거나 높은 수준의 인적 증여 공제로 변경할 것을 권고함
 - 이러한 권고는 면제(exemption)가 복잡하여 이해하기가 어렵고, 일반적 증여 공제는 강화된 장부기록 유지 등의 납세협력 비용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임
- ▶ 상속 이전에 발생한 증여재산 합산기간을 7년에서 5년으로 조정하고 합산되는 증여재산에 대한 감경공제(taper relief)를 폐지할 것을 권고함
 - 기간이 길수록 기록 유지가 필요한 반면, 세수효과는 거의 없고 감경공제가 거액의 증여자들에게만 적용된다는 측면을 고려한 것임
- ▶ 신탁 등에 증여 시 적용되는 14년간의 장부기록 유지를 폐지하고 7년으로 통일할 것을 권고함
- ▶ 증여세 납세의무에 대한 규정 및 비과세구간(nil rate band)의 안분을 단순하고 명확하도록 개정하는 방법을 검토하도록 권고함
 - 상속 이전에 발생한 증여재산의 상속세 부담 및 수인에 대한 증여 시 비과세구간의 적용방법에 대해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고 있어 수증자간의 상속세 부담 차이가 발생하고 있다는 점을 주목하여 권고한 것임

■ 두 번째 권고사항은 자본소득세와 상속세의 연계작용으로 인한 복잡성 및 의사결정의 왜곡을 완화하기 위한 것임

- ▶ 상속 공제 또는 면제가 적용되는 경우 상속인의 상속재산 취득가액에 적용되는 자

198) GOV.UK, <https://www.gov.uk/government/publications/ots-inheritance-tax-review-simplifying-the-design-of-the-tax>, 검색일자: 2019. 7. 25

본소득증액(capital gains uplift)을 폐지하고, 피상속인의 역사적 원가를 취득가액으로 적용하는 것을 권고함

- 현재 상속인의 상속재산 취득가액은 자본소득세 과세없이 상속 시의 시가로 평가하도록 되어 있음

■ 세 번째 권고사항은 사업자산공제 및 농업자산공제를 통해 상속세 면제를 받는 사업과 농업자산에 관한 것임

- ▶ 사업자산공제 요건인 사업활동 수준은 자본소득세의 활동과 차이가 있는데 이러한 차이를 계속 유지할 것인지 여부와 간접적인 비지배지분 보유자 과세에 대해 재검토할 것을 권고함
- ▶ 유한책임 파트너십에 부분적으로 사업자산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 것인지 명확히 하도록 검토할 것을 권고함
- ▶ 농업자산공제의 세부적인 조건 등을 재검토하도록 권고함
 - 예를 들어, 농부가 질병 치료 목적으로 농장을 이탈하는 경우의 처리 등
- ▶ 사업 또는 농업의 가치평가가 요구되는 상황에 대한 지침을 명확히 하도록 권고함

■ 이외에 신탁된 보험증권과 그렇지 않은 보험 지급액의 과세 일관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재검토하고, 이전에 보유하던 자산 과세(pre-owned asset tax)가 조세회피방지 목적과의 관계 및 필요성에 대해 검토할 것을 권고함

- ▶ 이전에 보유하던 자산 과세는 상속세 과세회피 목적으로 자산의 매각 등이 이루어졌으나 자산의 혜택이 여전히 이전 소유주에게 존재하는 경우에 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으로¹⁹⁹⁾ 복잡성이 높고 적절한 기능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 의문을 제기함

나. 왕실 속령의 수익적 소유자 등록부 공개

[조세동향 19-07회]

■ 영국 왕실 속령인 건지, 저지 및 만섬 정부는 2019년 6월 19일 회사의 수익적 소유자 등록부를 공개하는 공동 성명서를 발표함²⁰⁰⁾

199) GOV.UK, <https://www.gov.uk/hmrc-internal-manuals/inheritance-tax-manual/ihtm44001>, 검색일자: 2019. 8. 1

- ▶ 3개의 왕실 속령은 이용 가능성과 투명성을 국제 기준에 부합시키기 위해 회사의 수익적 소유자 정보를 담고 있는 중앙 등록부 공개를 단계적으로 채택하기로 하는 공동 성명서를 발표함
 - 이러한 채택은 회사의 수익적 소유자 정보의 투명성을 위한 EU의 제5차 자금세탁 방지지침하의 접근방법에 따른 것임
- ▶ 향후 채택단계는 2021년 법 집행기관과 금융정보분석원의 이용, 2022년까지 금융 용역사업자 및 실사 등을 따른 특정 사업자의 이용, 2022년 이후 EU지침에 따른 공공 이용의 3단계로 이루어질 예정임

다. 강제적 보고제도 채택 규정 공개

[조세동향 19-08호]

- 영국 정부는 2019년 7월 22일 강제적 보고 규정을 도입하는 입법안을 공개함²⁰¹⁾
 - ▶ 이 법안은 조세 분야의 행정협력에 대한 EU지침(DAC 6)을 영국에서 도입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이에 따라 입법되면 2020년 7월 1일부터 납세자와 그들의 조력자는 조세회피를 위해 이용된 특정 역외 약정을 보고해야 함
 - 영국은 OECD와 G20의 회원국으로서 EU 탈퇴는 국제적 조세회피나 포탈을 방지하려는 영국의 노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밝힘
 - ▶ 이 법안은 의견수렴 기간을 거쳐 2019년 12월 31일까지 입법이 완료될 것으로 예상되며 2020년 7월 1일부터 시행을 예정하고 있음
- 일부 세목을 제외한 전형적인 특징이 있는 역외 약정을 보고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음
 - ▶ 보고의무의 적용되는 세목은 부가가치세, 관세, 소비세 및 의무적으로 적용되는 사회보장기여금을 제외한 모든 조세임
 - ▶ 보고 대상은 EU 회원국 또는 제3국가와의 연계된 거래로서 전형적인 특징(hallmarks)을 가지는 약정임

200) GOV.GG, <https://www.gov.gg/benownership>, 검색일자: 2019. 7. 24

201) GOV.UK, <https://www.gov.uk/government/consultations/draft-regulations-implementation-of-disclosable-arrangements>, 검색일자: 2019. 8. 23

- 보고대상약정의 전형적인 특징은 EU지침을 동일하게 채택하고 있으며 일부 이를 명확히 하는 규정을 추가함
 - ▶ 전형적인 특징은 비밀 유지, 조세혜택에 따른 보수, 정형화된 상품을 규정하는 분류 A부터 일방적 세이프하버, 가치평가가 어려운 무형자산, 기능·자산·위험의 역의 이전 등을 규정한 분류E까지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EU지침과 동일함
 - 일부 제시된 보고대상 약정은 사실관계와 상황을 고려할 때 인(人)이 약정으로부터 조세혜택을 얻는 것이 주요 혜택 또는 주요 혜택 중의 하나라고 합리적으로 기대되는 주요 혜택 기준(Main Benefit Test: MBT)을 충족해야 함
- 보고대상의무자는 관련 납세자와 중개인 및 용역제공자로 EU지침을 준용하여 규정되고 있음
- ▶ 관련 납세자는 매우 포괄적으로 규정되어 있는데 보고대상거래가 이용 가능하거나 이용하려는 결정만으로도 이 개념에 포함됨
 - 영국의 거주자이거나 납세의무가 있는 것을 요건으로 하지 않음
 - ▶ 중개인은 이용 가능한 실행방안을 설계, 판매, 조직, 창출하거나 보고 대상 역외 약정의 실행을 관리하는 기획자를 포함하며, 용역 제공자는 보고 대상 역외 약정의 설계에 노력, 조언을 제공하는 자임
 - 중개인의 범위에 사후적으로 인지하는 외부 감사인은 포함하지 않으며 합리적으로 보고대상약정을 인지하지 못할 것이라고 판단되는 인(人)은 범위에서 제외됨
- 보고대상약정의 이용 가능한 날 등의 30일 이내 보고가 이루어지도록 하고 있으며, 의무 불이행 시 가산세 등이 부과됨
- ▶ 보고대상시기는 보고대상약정이 실행이 이용 가능하거나(available), 준비된(ready) 날 및 실행의 첫 단계가 이루어진 때 중 가장 빠른 날로부터 30일 내임
 - 통상적으로 판매되는 약정의 경우 중개인은 매 3개월마다 관련 정보를 보고해야 함
 - ▶ 의무 불이행 시 가산세는 기존에 운영되던 조세회피체계의 보고(DOTAS)와 동일하게 적용됨²⁰²⁾
 - 보고 지연 시 최대 지연일수당 600파운드의 가산세가 부과되며 납세자가 보고의무

202) EY Tax Insights, <https://taxinsights.ey.com/archive/archive-news/united-kingdom-publishes-draft-proposal-on-mandatory-disclosure-rules.aspx>, 접속일자: 2019. 8. 23

를 불이행하면 5천파운드(불이행 전력이 있으면 최대 1만파운드)의 가산세가 부과되고, 1심 행정심판소(First-tier Tribunal)에서 최대 100만파운드의 벌금도 부과될 수 있음²⁰³⁾

라. 과세관청의 암호화폐거래소에 정보제공 요구 서한 발송

[조세동향 19-09호]

- 암호화폐거래소들은 2019년 8월 5일 영국 과세관청이 고객정보 및 거래내역 등을 제공할 것을 요구했다고 밝힘²⁰⁴⁾

 - ▶ 다수의 보도 등에서 암호화폐거래소가 영국 과세관청(HMRC)으로부터 정보를 제공하라는 사전고지(advance notice) 서한을 수령하였다고 밝힘
 - 현재 서한을 받았다고 알려진 암호화폐거래소는 코인베이스, eToro와 CEX.IO임
 - ▶ 각 암호화폐거래소는 고객 비밀유지 의무와 과세관청의 요구가 상충하지 않는지 검토 중이며 이후 정보를 제공할지 여부를 판단할 것이라고 밝힘
- 과세관청의 요구정보는 영국 거주자로 한정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며, 단순한 고객정보뿐만 아니라 납세이행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상세한 거래내역을 포함하고 있음

 - ▶ 영국에서 암호화폐는 통상적으로 자본소득세가 과세되며, 근로소득을 비현물 형태인 암호화폐로 수령하거나 암호화폐의 채굴, 사업적 매매 등의 경우에는 소득세가 과세됨²⁰⁵⁾
 - ▶ 과세관청에서 요구한 정보는 거래자 성명, 주소 및 과세 2~3년간의 거래정보를 포함한 납세이행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정보들임
 - 거래소는 거래내역에 법정 통화와 암호화폐의 이체 내역도 요구받았다고 밝히고 있음

203) 2019년 8월 30일 매매기준을 원/파운드 환율을 1472.75원으로 600파운드는 약 88만원, 5천파운드는 약 700만원, 1만파운드는 약 1,500만원, 약 15억임

204) *Tax Notes Int'l*, Aug. 19, 2019, p. 751; Coindesk, https://www.coindesk.com/british-tax-authority-seeks-customer-data-from-crypto-exchanges-in-search-of-tax-evaders?utm_source=twitter&utm_medium=coindesk&utm_term=&utm_content=&utm_campaign=Organic%20, 검색일자: 2019. 9. 23

205) GOV.UK, <https://www.gov.uk/government/publications/tax-on-cryptoassets/cryptoassets-for-individuals>, 검색일자: 2019. 9. 23

마. 개인 과세 간소화 검토안 공개

[조세동향 19-10호]

- 영국 조세간소화국(Office of Tax Simplification)은 2019년 10월 10일 개인 과세 간소화를 위한 권고안을 담고 있는 검토보고서를 공개함²⁰⁶⁾

 - ▶ 과세와 인생의 사건: “개인과 관련된 과세의 간소화(Taxation and Life Events: Simplifying tax for individuals)”라는 제목의 보고서는 사람들의 일생 동안 주요 사건에서 발생하는 과세의 복잡성을 완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발간됨
 - ▶ 자녀, 취업, 연금 등의 저축, 조력 등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복잡한 과세문제를 완화하기 위한 15개의 권고사항을 담고 있음

- 자녀와 관련된 권고사항은 3개로 자녀장려세제(Child Benefit) 미신청으로 인한 정부보험의 배제에 대한 것임

 - ▶ 정부는 자녀장려세제 등의 혜택 운영과 관련된 행정 절차를 검토하여 향후 정부보험수급권을 상실하지 않으면서 자녀장려세제를 신청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함
 - ▶ 자녀장려세제를 신청하지 않은 사람들에게 대해 정부보험혜택을 재부여하는 것을 고려해야 함
 - ▶ 자녀장려세제를 신청하지 않더라도 자녀에게 정부보험번호를 부여하도록 하는 용이한 절차를 수립해야 함
 - 부모 중 한 명의 소득이 5만달러 이상이면서 자녀장려세제를 신청하는 경우 고소득자녀세제부과금(High Income Child Benefit Charge)이 적용되므로 자녀장려세제를 신청하지 않는 경우가 존재하는데, 이 경우 연계된 정보가 없어 정부보험번호 수령을 위한 납세자의 노력이 필요하며 부모의 지방정부연금 수급이 중단되는 경우가 발생함

- 원천징수(PAYE)와 관련된 권고사항은 4개로 원천징수제도의 이해 및 편의성 향상, 오류 검증에 대한 것임

 - ▶ 정부는 비상업 목적 사용자를 위한 지침을 개선하고 이들의 수요에 부합하는 기본적인

206) GOV.UK, <https://www.gov.uk/government/publications/ots-life-events-review-simplifying-tax-for-individuals>, 검색일자: 2019. 10. 29

원천징수제도를 유지하기 위해 전자적 행정 작업을 수행해야 함

- ▶ 정부는 원천징수제도의 운영 향상을 위해 취업, 이직, 겸직 및 관련 비용 공제와 관련된 실무적 쟁점을 통합하여 고려할 필요가 있음
- ▶ 과세관청은 정부연금 등을 최초로 수령한 사람들에게 과세 관련 설명서를 개선할 필요가 있음
- ▶ 과세관청은 원천징수체계에서 오류를 제어할 수 있는 자동화된 검증시스템을 개발할 필요가 있음

■ 이외에 연금, 조력과 관련된 개선사항 및 조세교육 이해도 향상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음

- ▶ 정부는 사업자의 연금 지급방법에 따른 과세 차이를 경감하거나 폐지하고, 연금과 관련된 공제제도가 그 목적에 맞게 운영되고 있는지 재검토하는 등의 연금과 관련된 4개의 권고사항을 제시함
- ▶ 과세관청은 개인의 사망과 관련하여 사망자의 과세제도가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되도록 체계를 개선하고, 대리인 및 변호사 등을 조력할 수 있는 지침을 통합, 개선하도록 할 필요가 있음
- ▶ 과세관청은 학교 등과 연계하여 사람들의 조세와 금융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도록 노력하고, 외부 연구자와의 협조 강화를 통해 과세관청의 교육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

11 오스트리아

가. 강제적 보고규정 법안 공개

[조세동향 19-11호]

■ 오스트리아는 2019년 10월 22일 EU 강제적 보고규정을 실행하는 법안을 공개함²⁰⁷⁾

207) Ernst&Young, <https://www.ey.com/gl/en/services/tax/international-tax/alert-austria-passes-bill-to-implement->

- ▶ 이 법안은 강제적 보고규정과 역외조세약정 교환에 대한 EU지침(DAC6)을 실행하는 안으로 납세자와 세무조력자들에게 2020년 7월 1일부터 역외 대상 약정을 보고하도록 하는 것임
 - ▶ 법안은 2020년 7월 1일부터 시행되는데 대상 약정은 소급하여 2018년 6월 25일부터 2020년 7월 1일까지의 거래를 포함하고 있음
- 이 강제적 보고규정은 다른 EU 회원국과 마찬가지로 EU지침과 유의적인 차이가 없이 입법됨
- ▶ 소득세와 법인세에 적용되는 역외약정이면서 EU지침의 전형적인 특징(hallmark)이 포함된 거래를 납세자와 세무조력자, 중개인 등에 보고하도록 하고 있음
 - 전형적인 특징은 낮은 세율로 과세되는 경우, 2개 이상의 관할에서 자산의 상각이 이루어지는 경우, 저세율국에 지급되는 거래 등이 포함됨
 - ▶ 보고의무 위반 시 고의의 경우 최대 5만유로, 과실 등의 경우 2만 5천유로의 과태료가 부과됨

나. 디지털세 과세안 관보 게재

[조세동향 19-12호]

- 오스트리아 정부는 2019년 12월 4일 디지털과세안을 실행하는 법령을 관보에 게재함²⁰⁸⁾, ²⁰⁹⁾
- ▶ 게재된 디지털과세 집행안은 디지털과세에 대한 협력 절차를 규정하는 것으로 연간 소득신고의 온라인 제출 의무화, 온라인 디지털 절차의 설명, 온라인 광고업자의 웹 양식 이용을 위한 등록 요구 등의 내용을 담고 있음
 - 디지털 과세안은 오스트리아 국내에서 온라인 광고를 수행하는 대규모 글로벌 기업들에 온라인 광고 매출액의 5%를 부과함²¹⁰⁾

mandatory-disclosure-rules, 검색일자: 2019. 11. 29

208) Rechtsinformationssystem des Bundes, https://www.ris.bka.gv.at/Dokumente/BgblAuth/BGBLA_2019_II_378/BGBLA_2019_II_378.html, 검색일자: 2019. 12. 31

209) Federal Ministry: Republic of Austria Finance, https://english.bmf.gv.at/taxation/Digital_Tax_Act_2020.html, 검색일자: 2019. 12. 31

- ▶ 이 과세집행안은 2020년 1월 1일부터 적용됨
- 법령은 이전에 공표된 디지털세의 납세협력방법을 기술하고 있으며, 특히 EU 회원국 내에 사업장 등이 없는 경우를 목적으로 하고 있음
 - ▶ 납세자는 과세연도 이후 3개월 이내에 소득신고 시 온라인 광고 제공에 대한 정보를 동시에 신고하여야 함
 - 사업자가 전자시스템 등록자(FinanzOnline subscriber)인 경우 전자신고가 요구되며, 오스트리아에 세무대리인이 존재하는 외국 사업자의 경우에도 동일함
 - ▶ 외국 사업자가 전자등록을 할 수 없는 경우 온라인 디지털과세 서비스를 통해 신고가 이루어져야 함
 - 온라인 디지털과세 서비스는 온라인 광고사업자와 과세관청을 연결하는 전자서비스로 디지털과세를 위해 구축된 것으로, 기존 전자시스템(FinanzOnline)과 연계할 수 있는 서비스임
 - ▶ EU 회원국 내에 등록된 사무소, 본사, 고정사업장이 없는 경우 세무대리인을 선임하여야 함
 - 이는 세무대리인을 통해 전자시스템에 신고·납부 권한을 부여하기 위함임

12 포르투갈

가. NHR 적용 대상 목록 변경

[조세동향 19-08호]

- 2019년 7월 23일 포르투갈은 NHR(Non-habitual Residence) 세법 적용의 대상이 되는 부

210) Rechtsinformationssystem des Bundes, <https://www.ris.bka.gv.at/eli/bgbl/I/2019/91/20191022?ResultFunctionToken=d97c5459-51c9-492e-b7aa-ccd2036c2c8a&Position=1&SkipToDocumentPage=True&Abfrage=BgblAuth&Titel=&Bgblnummer=91%2f2019&SucheNachGesetzen=False&SucheNachKundmachungen=False&SucheNachVerordnungen=False&SucheNachSonstiges=False&SucheNachTeil1=False&SucheNachTeil2=False&SucheNachTeil3=False&VonDatum=01.01.2004&BisDatum=06.12.2019&ImRisSeitVonDatum=01.01.2004&ImRisSeitBisDatum=06.12.2019&ImRisSeit=Undefined&ResultPageSize=100&Suchworte=>, 검색일자: 2019. 12. 31

가가치 활동 목록을 변경하는 조례 230/2019를 공개함²¹¹⁾

- ▶ NHR은 비상시 거주자에게 적용되는 세금제도로, 포르투갈에서 수행되는 고부가가치 활동을 통해 얻은 소득에 대해 20%의 낮은 고정 세율²¹²⁾을 적용함
- ▶ 2020년 1월 1일부터 등록하는 신청자에게 적용되며, 기존의 부가가치 활동 목록이 적용된 비상시 거주자들 또한 혜택을 유지함

■ 포르투갈에서는 다음의 특정 요건이 성립하는 경우 과세 대상 거주자로 간주하며, 해당 자격은 10년간 인정됨²¹³⁾

- ▶ 12개월 동안 포르투갈에서 183일 이상 거주하는 경우
- ▶ 실질 거주기간이 짧더라도 지속적인 거주지로 간주되는 공간을 보유할 경우
- ▶ 선박 또는 항공기 승무원으로, 포르투갈에 거주지나 본부가 소재하는 경우
- ▶ 포르투갈에서 이루어지는 공공 목적의 국제 활동을 수행하는 경우

■ 분류를 기존 28²¹⁴⁾개에서 17개로 단순화하였으며, 해당 분야의 전문가 자격 요건을 강화함

- ▶ 각 분야의 전문가들은 최소한 ① EQF(European Qualifications Framework) 레벨 4 이상의 자격 ② 국제표준교육분류(International Standard Classification of Education)의 레벨 35 이상의 자격, 혹은 ③ 입증 가능한 5년 이상의 전문적 경험을 보유해야 함

기존 (28개 분류)		변경 (17개 분류)	
1. 고고학자	17. 대학교수	1. 물리학자·수학자· 엔지니어 및 관련 전문가	12. 생산 및 전문 서비스 관리자
2. 생물학자	18. 연구 개발 전문가	2. 저자·언론인 및	13. 기타 서비스 관리자 (접객, 식당, 유통 등)
3. 심리학자	19. 엔지니어		
4. 지질학자	20. IT 컨설턴트		

211) Portugal - Non-habitual tax residents' regime - high value-added activities' list updated(29 July 2019), News IBFD

212) 2019년 기준 포르투갈의 개인소득세율은 소득 구간에 따라 14.5~48%임(EU 홈페이지, https://europa.eu/youreurope/citizens/work/taxes/income-taxes-abroad/portugal/index_en.htm, 검색일자: 2019. 8. 21)

213) Roedle & Partner, <https://www.roedl.com/insights/portuguese-non-habitual-resident-nhr-tax-regime>, 검색일자: 2019. 8. 20

214) 고고학자, 건축가, 감사, 생물학자, 컴퓨터 프로그래머, 데이터 처리 및 호스팅 전문가, 치과 의사, 디자이너, 엔지니어, 지질학자, IT 컨설턴트, IT 전문가, IT 전문가(기타), 생명과학 전문가, 의사, 음악가, 통신 및 기타 정보 전문가, 화가, 심리학자, 연구 개발 전문가, 조각가, 고위 경영진, 가수, 세금 컨설턴트, 극장·발레·영화·라디오 및 TV 예술 전문가, 대학교수, 웹 개발자 및 디자이너, 세금 인센티브 계약에 따라 적격 프로젝트를 홍보하는 회사의 투자자·이사 및 관리자의 28개

기존 (28개 분류)		변경 (17개 분류)	
5. 생명과학 전문가	21. IT 전문가	언어학자	14. 시장 지향적 농민
6. 가수	22. IT 전문가(기타)	3. 창작가 및 공연 예술가	및 유자격 농업 및 축산 근로자
7. 음악가	23. 통신 및 정보 전문가	4. 의사	15. 시장 지향적 임업, 어업 및 사냥 자격을 갖춘 근로자
8. 화가	24. 컴퓨터 프로그래머	5. 치과의사	16. 산업, 건설 및 수공예 자격 근로자
9. 조각가	25. 웹개발자 및 디자이너	6. 고등교육 교육자	17. 플랜트·기계 운영자 및 조립 작업자 (고정 설치 및 기계 운영자)
10. 디자이너	26. 데이터 호스팅 전문가	7. 중급 과학 및 기술자 및 전문가	
11. 극장·발레·영화·라디오 및 TV 예술 전문가	27. 고위 경영진	8. ICT 기술자	
12. 건축가	28. 계약에 따라 특정 프로젝트를 담당하는 회사의 투자자 이사 및 관리자	9. ICT 전문가	
13. 의사		10. 총괄 관리자	
14. 치과 의사		11. 행정 관리자	
15. 감사			
16. 세금 컨설턴트			

나. SIGI 과세 관련 법령 개정

[조세동향 19-09호]

2019년 9월 4일 포르투갈은 부동산 투자 및 자산 관리 회사인 SIGI(Sociedades de Investimento e Gestão Imobiliária)와 관련한 개정 법령(Decree-Law No.19/2019)을 관보 게시함²¹⁵⁾

SIGI는 부동산 투자를 위해 만들어진 유동주식 방식을 취하는 유한책임회사 형태의 법인으로, ① 공동 목적 ② 포트폴리오 구성 ③ 부채액 제한 ④ 이익에 대한 의무 분배 사항의 요건을 준수해야 함²¹⁶⁾

- 해당 사항들이 미충족될 경우 SIGI 자격을 잃게 되며, 이후 3년간 재취득이 불가함

개정된 법령에서는 SIGI와 관련하여 공제 및 감면 세율 적용 내용을 명시하고 있음

SIGI가 취득한 투자소득, 임대소득 및 자본이익은 법인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함

- 부동산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은 해당 재산을 SIGI가 3년 이상 보유한 경우에만 과

215) Portugal - Real estate investment and asset management companies regime - amendments gazetted(05 Sep, 2019), News IBFD

216) Portugal - Real estate investment and asset management companies regime - gazetted(30 Jan, 2019), News IBFD

세에서 제외됨

- ▶ SIGI의 배당금에 대해서는 개인 28%, 현지 소재 법인 25%의 원천징수율을 적용하고 있으나, 비거주 주주에 대해서는 10%의 감면 세율이 적용됨
- SIGI 종료 시 주주에게 분배하는 배당금이나 매각 시 주주가 얻는 잠재적 자본 이득은 개인소득세법 혹은 법인세법의 일반 조건에 따라 과세됨

■ 본 법령에 따르면 SIGI는 자회사를 보유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세어딜(share deals)²¹⁷⁾을 통해 SIGI의 투자를 구조화할 수 있음

다. 간접세 관련 세법 개정

[조세동향 19-10호]

■ 포르투갈 정부는 2019년 9월 18일 간접세 관련 법률 개정안을 담은 법률 119/2019를 공보에 게시함²¹⁸⁾

■ 부가가치세의 납부 기한이 전년도 매출액 (65만유로²¹⁹⁾)를 기준으로 두 가지로 분류됨

- ▶ 전년도 매출액이 65만유로 이상인 경우 거래 발생일의 익월 15일까지, 65만유로 미만일 경우 거래 발생일 다음 분기의 첫 월 20일까지 납부함

■ 온라인 빙고 게임에 대한 경품을 인지세 납부 대상에서 제외함

■ 소비세와 관련하여 설탕세를 시행하며, 포장재의 수출품 식별 문구 표기 조항을 삭제함

- ▶ 음료 및 분말에 포함된 당류에 따라 새로운 체계의 세금이 적용되며, 1리터당 설탕 함유량에 따른 액상 및 고형 식품의 세율은 다음 표와 같음

1l당 설탕 함유량	액체 1l당 세금	고체 1l당 세금
25g 미만	6유로 ²²⁰⁾	10유로 ²²¹⁾
25g 이상 50g 미만	36유로 ²²²⁾	60유로 ²²³⁾
50g 이상 80g 미만	48유로 ²²⁴⁾	80유로 ²²⁵⁾
80g 이상	120유로 ²²⁶⁾	200유로 ²²⁷⁾

217) 수익증권 거래라고도 하며, 부동산의 소유권이 아닌 부동산 거래의 수익증권을 양도하는 형식의 거래임

218) Portugal - Tax codes amendments - indirect taxation(23 Sep. 2019), News IBFD

219) 2019. 10. 29. 원화 기준 환산 시 약 8억 4천만원임

- ▶ 또한 수출품의 포장에 수출품임을 식별할 수 있는 문구 표기를 의무화했던 조항을 삭제함

라. 2020년 예산법안 제출

[조세동향 19-12호]

- 2019년 12월 16일 포르투갈 재무부 장관은 2020년 예산법안의 초안인 Draft Bill 5/XIV를 국회에 제출함²²⁸⁾
- 개인소득세의 과표 구간이 변경되었으며, 비부양 가족의 소득에 대한 면세가 이루어짐
 - ▶ 개인소득세의 세율은 동일하나, 과세표준 구간의 금액이 각 0.3%씩 인상됨
 - ▶ 연간 총소득이 2만 9,179유로²²⁹⁾를 초과하지 않는 18~26세 사이의 비부양 가족의 소득에 대해, 소득 발생 첫 3년간 부분적인 면세가 이루어짐
 - 조건에 따라 1년 차에는 소득의 30%, 2년 차에는 20%, 3년 차에는 10%를 공제함
- 법인세와 관련하여 경감세율 적용 대상 기업에 대한 기준액이 인상되었으며, 특허 및 R&D 관련 공제제도가 확대 및 연장됨
 - ▶ 17%의 경감세율 적용 대상이 되는 중소기업의 과세 표준이 1만 5천유로²³⁰⁾에서 2만 5천유로²³¹⁾로 인상됨

220) 2019. 10. 29. 원화 기준 환산 시 약 7,800원임
 221) 2019. 10. 29. 원화 기준 환산 시 약 1만 3천원임
 222) 2019. 10. 29. 원화 기준 환산 시 약 4만 7천원임
 223) 2019. 10. 29. 원화 기준 환산 시 약 7만 8천원임
 224) 2019. 10. 29. 원화 기준 환산 시 약 6만 2천원임
 225) 2019. 10. 29. 원화 기준 환산 시 약 10만 3천원임
 226) 2019. 10. 29. 원화 기준 환산 시 약 15만 5천원임
 227) 2019. 10. 29. 원화 기준 환산 시 약 25만 8천원임
 228) Portugal - Budget for 2020 - draft bill presented(17 Dec, 2019), News IBFD
 229) 2020. 1. 2. 원화 기준 환산 시 약 3,787만원임
 230) 2020. 1. 2. 원화 기준 환산 시 약 1,947만원임
 231) 2020. 1. 2. 원화 기준 환산 시 약 3,245만원임

- ▶ 특허박스(patent box) 적용 대상이 소프트웨어에 대한 지식 재산권에까지 확대됨
 - 특허박스는 BEPS Action 5에 대응하는 제도로, 과세 시 산업재산권의 임시 사용(특허, 산업 도면 또는 모형)으로 발생한 총수입의 50%를 면제함²³²⁾
- ▶ 상업, 공업 또는 농업과 관련된 세법상 포르투갈 거주자 기업과 포르투갈 내의 사모 펀드를 보유한 비거주자 기업에 대해 기본 공제에 증분율을 더한 공제를 적용하는 SIFIDE II를 2025년까지 연장함
 - SIFIDE II는 R&D 비용의 32.5%의 기본 공제와, 증분율로 과세연도와 이전 2년의 R&D 평균 비용의 차액에 대해 50%(최대 150만유로)의 공제를 적용하고 있음²³³⁾
 - 증분율을 적용받지 못하는 기업 중 2년 이상 존속한 기업에 대해서는 기본 공제 요율을 47.5%까지 적용함

■ 부가가치세 부과 시 전기 및 플러그인 전기 자동차에 사용되는 전기요금 공제가 가능해짐

13 이탈리아 - 경제성장을 위한 긴급조치 법률 시행

[조세동향 19-07호]

■ 이탈리아 의회는 2019년 6월 28일 각료회의에서 승인된 ‘경제성장을 위한 긴급 조치(urgent measures for economic growth)’ 법령을 법률화하였음(Law No. 58/2019)

■ 위 법률에 따른 세법 개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 ▶ 법인세²³⁴⁾
 - 유형자산 취득원가의 최대 30%를 비용으로 산입할 수 있도록 함(제1조)
 - 기업들은 순자본 증가액과 준비금으로 적립한 금액 중 작은 금액에 대하여 경감세율을 곱한 만큼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음(제2조)

232) PWC 홈페이지, <http://taxsummaries.pwc.com/ID/Portugal-Corporate-Tax-credits-and-incentives>, 검색일자: 2020. 1. 7

233) 상동

234) Italy - Urgent measures for economic growth - details of corporate income tax measures(15 July 2019), News IBFD

- 부동산과 관련하여 납부된 지방세액을 법인세 목적으로 공제할 수 있도록 함(제3조)
- 법인세 소득 신고기간 연장(당해 회계연도 말부터 9개월→11개월)(제4조)
- 2022년 12월 31일 이전에 발생한 합병이나 분할의 경우, 500만유로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영업권 및 기타 유무형자산의 장부가액 증가는 세무상 목적에 의한 것으로 간주함(제11조)

▶ 소득세²³⁵⁾

- 소득세 신고기간 2개월 연장(제4조)
- 최근 2년간 외국에 거주하다가 향후 2년 이상 과세 목적상 거주지를 이탈리아로 변경하는 국외 거주자에 대하여 특정 조건하에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최소 5년간 70% 내지 90% 면제(제5조)
- 이탈리아에 설립된 신규사업체의 사업소득에 대한 면세제도 연장(제5조)
- 최근 5년간 외국에 거주한 후 특정 이탈리아 남부 지역으로 과세 목적상 거주지를 변경한 외국인 연금 수급자의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 9년간 7%의 대체세율 (Substitute Tax) 적용(제5조)

▶ 부가가치세(제12조)²³⁶⁾

- 세금계산서 발행기간 연장 및 절차 간소화
- 분기별 매입세액공제액을 은행 등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있도록 함

14 프랑스

가. 항공세 도입

[조세동향 19-07호]

□ 프랑스 교통부는 2019년 7월 9일 프랑스에서 출발하는 모든 항공편에 대하여 2020년

235) Italy - Urgent measures for economic growth - details on individual income tax measures(12 July 2019), News IBFD

236) Italy - Urgent measures for economic growth - details on value added tax measures(11 July 2019), News IBFD

부터 항공세(Aviation Tax)를 부과하기로 결정하였음을 발표함²³⁷⁾

- ▶ 환경세의 일환으로 제트연료 사용으로 인한 환경오염을 줄이기 위한 목적임
- ▶ 프랑스 정부의 경유세 인상에 대한 반발로 발생한 ‘노란 조끼(yellow vest)’ 운동의 영향으로, 자동차 운행보다 상대적으로 저소득층 납세의무자들의 이용 빈도가 낮아 그들의 조세부담이 적은 항공 운행(air travel)을 과세 대상으로 고려함

■ 항공편의 목적지를 기준으로, 이코노미 좌석의 경우 승객 1인당 1.5유로²³⁸⁾(EU 회원국) 또는 3유로²³⁹⁾(EU 회원국 이외의 지역)를, 비즈니스 좌석의 경우 승객 1인당 9유로²⁴⁰⁾(EU 회원국) 또는 18유로²⁴¹⁾(EU 회원국 이외의 지역)를 부과하기로 함

- ▶ 이는 프랑스 항공권 평균 가격의 3% 내지 10%에 해당하는 금액
- ▶ 항공사 에어프랑스는 현재 운행 항공편의 50%가 프랑스 출발 항공편인 관계로 본 과세로 인하여 당해 그룹 기업의 시장 경쟁력이 약화되어 연간 약 6천만유로²⁴²⁾ 이상의 추가 지출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힘

■ 본 과세로 인하여 예상되는 연간 세수는 약 1억 8,200만유로²⁴³⁾에 달할 것으로 추산됨

- ▶ 프랑스 교통부는 위 금원을 철도 및 친환경 교통망 구축을 위한 재원으로 활용할 것으로 발표함

나. 디지털서비스세 신설

[조세동향 19-08호]

■ 프랑스는 2019년 7월 25일 디지털서비스세를 도입하는 법률(Law no. 2019-159)을 관보에 게재함²⁴⁴⁾

237) Tax Notes International, July 15, 2019, p. 242

238) 2019. 8. 1. 기준 원화환산 시 약 2천원임.

239) 2019. 8. 1. 기준 원화환산 시 약 4천원임.

240) 2019. 8. 1. 기준 원화환산 시 약 1만 2천원임.

241) 2019. 8. 1. 기준 원화환산 시 약 2만 4천원임.

242) 2019. 8. 1. 기준 원화환산 시 약 787억원임.

243) 2019. 8. 1. 기준 원화환산 시 약 2,387억원임.

244) Tax Notes International, July 29, 2019, p.444; France - Bill on digital services tax and 33.3% CIT rate for

- ▶ 프랑스 정부는 2019년 3월 6일 디지털서비스세 도입 법안을 발표하였고, 프랑스 의회는 같은 해 5월 13일 위 법안의 세부 개정안²⁴⁵⁾을 제출하여 같은 해 7월 11일 위 개정안을 채택한 바 있음
- 글로벌 매출이 7억 5천만유로²⁴⁶⁾ 이상이면서 동시에 프랑스 국내 매출이 2,500만 유로²⁴⁷⁾ 이상인 고수익 디지털업체들은 프랑스 내에서 창출 또는 공급된 과세 대상 서비스 매출액의 3%를 디지털서비스세로 프랑스에 납부하여야 함
 - ▶ 과세 대상 서비스는 ① 프랑스 내 사용자를 대상으로 하는 디지털 인터페이스(플랫폼 서비스)와 ② 온라인 광고임
 - 위 서비스들과 관련된 사용자 인적 데이터 판매 매출 또한 과세 대상 이익에 포함됨
 - 이는 유럽연합이 2018년 3월경 제안한 디지털 경제 과세지침의 디지털서비스세 구조와 유사함
 - ▶ 과세표준은 당해 사업연도 기준 과세 대상 서비스와 관련된 전 세계 매출(부가가치세 제외)에서 “프랑스 내에서 창출 또는 공급된 과세 대상 서비스 매출액이 차지하는 비율”²⁴⁸⁾을 곱하는 방식으로 산출됨
- 위 법률에 따르면, 원칙적으로 당해 연도의 디지털서비스세는 다음 해 4월과 10월에 2회에 걸쳐 납부되어야 함
 - ▶ 그러나 2019년도 납부 의무의 경우, 과세 대상 기업들은 2019년 10월 31일까지 2018년도 과세 대상 서비스 매출액을 기준으로 세액을 산출하여 1회만 납부하면 됨
 - 단, 과세표준 산출에 적용되는 “전체 매출 중 프랑스 내에서 창출 또는 공급된 과세 대상 서비스 매출액이 차지하는 비율”은 본 법률의 관보 게재일과 2019년 10월 31일까지의 활동으로 한정하여 결정하도록 함

large companies - gazetted(25 July 2019), News IBFD

245) 개정안은 특정 요건을 충족하는 고수익 디지털업체들의 프랑스 국내 창출 디지털서비스에 대한 3% 과세안은 유지하되, 저이윤 고성장 신생기업 보호를 위한 조치들을 도입하고 온라인 항공 예약시스템 등 과세 면제 대상에 해당하는 디지털서비스를 추가적으로 규정하였음(한국조세재정연구원, 『주요국의 조세동향』, 19-5호, 2019. p. 15 참조)

246) 약 1조원(2019. 8. 29. 기준)

247) 약 336억원(2019. 8. 29. 기준)

248) 구체적으로는, ① 디지털 인터페이스(플랫폼 서비스) 매출의 경우 (i) 총 거래 수 중 전자 거래의 일방 당사자가 프랑스 사용자인 거래의 비율 및 (ii) 디지털 인터페이스에 접근한 전체 계정 중 프랑스 계정 개수의 비율을 ② 온라인 광고 매출의 경우, (i) 총 광고 메시지 중 프랑스 사용자를 타겟으로 한 광고 개수의 비율 및 (ii) 광고를 통하여 데이터를 수집한 총 사용자 중 프랑스 사용자 수의 비율을 구하여 계산함

- ▶ 2020년도 납부액 또한 2019년도 과세 대상 서비스 매출액을 기준으로 산출하되, 매출액에 곱하는 “프랑스 내에서 창출 또는 공급된 과세 대상 서비스 비율” 산정의 대상 기간을 본 법률의 관보 게재일과 2019년 12월 31일까지로 한정함

다. 신설 이자공제규정에 관한 가이드라인 발표

[조세동향 19-08호]

- 프랑스 과세관청은 2019년 7월 31일, 2019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는 신설 이자공제 규정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발표함^{249),250)}
 - ▶ 신설된 이자공제 규정은 프랑스 조세일반법(Code général des impôts: CGI) 제212조 제2항으로, EU의 조세회피방지지침(EU)2016/1164, ATAD] 제4조를 프랑스 국내법으로 이행한 것임
- 신설 규정에 따른 순이자비용 공제는 ① 300만유로 또는 ② 이자·세금·감가상각비용을 차감하기 전의 영업이익(EBITDA)의 30%에 해당하는 금액 중 높은 금액을 한도로 가능함
 - ▶ 공제 대상이 아닌 이자비용은 시기에 제한 없이 이월 가능함
 - ▶ 미사용 공제분(unused deduction capacity)은 5년간 이월 가능함

라. 디지털 자산 처분 수익에 대한 과세 지침 발표

[조세동향 19-09호]

- 프랑스 과세관청은 2019년 9월 2일 암호화폐 등 디지털 자산 처분 수익에 대한 과세 지침(administrative doctrine)²⁵¹⁾을 발표함²⁵²⁾

249) France; European Union - New interest deductibility rules - tax authorities' guidelines published(01 Aug. 2019), News IBFD

250) <http://bofip.impots.gouv.fr/bofip/8421-PGP.html?identifiant=BOI-IS-BASE-35-20190731>, 검색일자: 2019. 8. 28

251) 프랑스 과세관청, <https://bofip.impots.gouv.fr/bofip/11978-PGP>, 검색일자: 2019. 9. 24

252) IBFD, France - Sale of digital assets - administrative doctrine published(9 Sep. 2019); Bloomberg Law: Tax, French Crypto Traders Seek Clarity That May Bring Lower Tax Bills(6 Aug. 2019)

- ▶ 디지털 자산의 과세와 관련하여, 종래 프랑스는 암호화폐 등 디지털 자산 거래 수익에 45.8%의 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하여 왔음
- ▶ 그러나 최근 제정된 Finance Law 제41조, General Tax Code 제150조에 따르면, 디지털 자산 매각으로 실현된 '비경상적·일시적 소득(occasional gains)'의 경우에는 기존 45.8%의 세율이 아닌 12.8%의 세율을 적용함
 - 단, 낮은 세율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거래자가 과세기간 말 소득신고 시 당해 디지털 자산 거래 소득이 비경상적·일시적 소득임을 스스로 입증하여야 함
- 본 지침에 따르면, 비경상적·일시적 소득을 얻은 디지털 자산 거래자(occasional trader)는 총 디지털 자산 판매 수익의 30%를 국가에 납부하여야 함
 - ▶ 위 30%의 세율은 소득세 12.8% 및 사회보장분담금 17.2%로 구성됨
 - ▶ 과세기간의 디지털 자산 판매 수익이 연 305유로²⁵³⁾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는 세금을 면제함

마. 2020년도 세법 개정안 발표

[조세동향 19-10호]

- 프랑스 정부는 2019년 9월 27일 2020년도 세법 개정안을 의회에 제출함
- 소득세 관련 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음²⁵⁴⁾
 - ▶ 첫 번째 구간의 소득세율을 14%에서 11%로 낮춤
 - ▶ 소득세 신고 절차를 간소화함
 - 특정 납세의무자를 제외하고, 기 작성된(pre-filled) 소득신고서의 경우 수정사항이 없거나 서명이 없는 경우에도 납세자로부터 승인된 것으로 간주함
 - ▶ 과세 대상 세대(tax household)의 약 80%가 주거세(dwelling tax) 면제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됨
 - 이는 2018년도부터 점진적으로 시행되던 주거세 면제 혜택을 확대한 것으로, 프랑스

253) 2019. 9. 19. 원화 기준 환산 시 약 40만원임

254) News IBFD(30 Sep. 2019), "France - Finance Bill 2020 - Individual taxation"

정부는 2018년도에는 주거세를 30%, 2019년도에는 65% 인하하였음

- 각 세대 구성원의 수입이 2만 7,432유로²⁵⁵⁾를 초과하지 않는 가구를 적용 대상으로 함²⁵⁶⁾

■ 법인세 관련 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음²⁵⁷⁾

- ▶ 연간 사업소득이 2억 5천만유로²⁵⁸⁾를 넘는 대기업에 다음과 같은 법인세율을 적용함
 - ① 2020년 사업연도: 사업소득 50만유로 미만 구간에서는 28%, 그 초과 구간에서는 31%의 세율 적용
 - ② 2021년 사업연도: 과세표준 전체에 27.5%의 세율 적용
- ▶ 연간 사업소득이 2억 5천만유로를 넘지 않는 중소기업에 대하여는 ① 2020년 사업연도에는 28% ② 2021년 사업연도에는 26.5%의 세율을 적용함
- ▶ 2022년 사업연도부터는 모든 기업에 대하여 25%로 낮추어진 표준 법인세율을 적용함
- ▶ 비거주자인 손실(loss-making) 기업은 원천징수된 세액 또는 프랑스 원천소득에서 공제된 금액을 일시적으로 환급받을 수 있음²⁵⁹⁾
- ▶ 혼성불일치 해결에 관한 EU 조세회피방지지침(ATAD 2)을 국내법으로 도입함

■ 부가가치세 관련 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음²⁶⁰⁾

- ▶ 전자상거래 관련 2017년 12월 5일 개정된 EU VAT Directive(Council Directive 2017/2455)를 국내법으로 이행함
- ▶ UCITS 펀드²⁶¹⁾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함
- ▶ EU 회원국 간 재화 운송(intra-community transport) 관련 EU지침(Council Directive 2018/

255) 2019. 11. 5. 원화 기준 환산 시 약 3,530만원임

256) PwC, <http://taxsummaries.pwc.com/ID/France-Individual-Other-taxes>, 검색일자: 2019. 11. 5

257) News IBFD(30 Sep. 2019), "France - Finance Bill 2020 - Corporate taxation," EY, "French Government releases draft Finance Bill for 2020," <https://taxinsights.ey.com/archive/archive-news/french-government-releases-draft-finance-bill-for-2020.aspx>, 검색일자: 2019. 11. 5

258) 2019. 11. 5. 원화 기준 환산 시 약 3,217억원임

259) 이는 유럽사법재판소 *Sofina SA, Rebelco SA, Sidro SA v. Ministre de l'Action et des Comptes Publics (Case C-575/17)* 판결에 따른 것임

260) News IBFD(30 Sep. 2019), "France - Finance Bill 2020 - VAT and other measures"

261) UCITS 펀드는 UCITS(Undertaking for Collective Investment In Transferable Securities) 지침에 따라 EU 회원국에서 설정된 개방형 공모펀드를 뜻함

1910)을 국내법으로 이행함

- 연속적인 물품 공급(chain operations) 형태의 거래에 적용되는 법령을 명확히 함
- EU 회원국 간 재화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를 적용받기 위한 추가적인 요건으로, 재화 구매자는 부가가치세 식별 번호를 재화 공급자에게 통지해야 함

15 핀란드

가. 2020년 예산안 공개

[조세동향 19-09호]

- 핀란드 재무부 장관은 2019년 8월 16일 세법개정안을 포함한 2020년 예산안을 제안함²⁶²⁾
 - ▶ 2020년 예산안은 576억유로의 총지출과 11억유로의 중앙정부 지출 증가를 계획하고 있는데 이러한 지출은 고용 증대, 이민자 포용 및 연금의 인상 등에 사용될 것이라고 밝힘²⁶³⁾
 - 세수는 2019년 예산보다 2.4% 증가한 약 470억유로로 예정하고 있음
 - ▶ 이 제안은 각 부처와의 협의 및 의결을 거쳐 10월 7일 최종 정부안이 공개될 예정임
- 세법개정안은 기존 예정된 개정안을 유지하면서 소비세 품목 등에 과세를 강화하고 있음
 - ▶ 소득세 세율구간에 적용되는 물가상승률 연동, 연계세(solidarity tax) 부과, 주택담보대출 이자비용 공제한도 축소 등은 유지됨
 - 주택담보대출 이자비용 공제 비율은 2020년 10%에서 2021년부터 2022년까지 5%로 축소되고 2023년부터는 공제되지 않음

262) Valtion talousarvioesitykset, http://budjetti.vm.fi/indox/tae/frame_year.jsp?year=2020&lang=fi, 검색일자: 2019. 9. 23

263) Foreigner.FI, <https://www.foreigner.fi/articulo/news/key-figures-of-the-finnish-government-budget-proposal/20190918195100002946.html>, 검색일자: 2019. 9. 23

- ▶ 세탁, 집 수리 등 가사업무 대가 지출 시 적용되던 가사세액 공제율을 20%(법인 등에 대한 경우 50%)에서 10%(40%)로 낮춤
- ▶ 담배 및 유사제품, 알코올음료, 소프트드링크, 운송용 연료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여 세수를 확대함
 - 예를 들어, 담배 소비세 과세를 현행 1천개당 66.5유로에 더하여 가격 기준 52%의 과세를 273유로 한도로 부과하고 있었으나, kg당 61.5유로에 더하여 가격 기준 48%의 과세로 변경하는 등의 개정을 통해 총 5천만유로의 세수를 확충함

나. 출국세 법안 의회 제출

[조세동향 19-11호]

- 핀란드 재무장관은 2019년 11월 7일 법인의 출국세 규정을 신설하는 법안을 의회에 제출함²⁶⁴⁾
 - ▶ 이 법안은 국외이전 자산에 대한 EU의 조세회피방지지침(ATAD)을 실행하기 위한 것으로 의회에서 승인될 경우 2020년 1월 1일부터 적용됨
- 법안의 내용은 자산이 국외로 이전되었을 때 이익이 실현되지 않은 자산이라도 실현된 것으로 간주하여 과세하는 것임
 - ▶ 국내 자산을 회원국 또는 제3국의 고정사업장으로 이전하여 핀란드 과세권이 상실되는 경우, 납세자의 거주지가 국외로 이전되는 경우, 외국법인이 핀란드 고정사업장의 자산 또는 사업 자체를 국외로 이전하는 경우 등에 적용됨
 - ▶ 이전된 자산이 증권금융, 담보 설정을 위한 이전 또는 12개월 이내 핀란드 내로 다시 이전될 계획으로 자본 충족 요건 또는 유동성 관리 목적인 경우 등은 제외함
- 출국세 요건에 해당되는 경우 미실현 이익에 대해 실현된 것으로 보아 법인세법에 따라 과세

264) Eduskunta Riksdagen, https://www.eduskunta.fi/FI/vaski/HallituksenEsitys/Sivut/HE_76+2019.aspx, 검색일자: 2019. 11. 29

III 아시아/오세아니아

1 뉴질랜드

가. 소액 수입물품 GST 부과

[조세동향 19-07호]

- 2019년 6월 28일 GST 역외 사업자 등록법이 왕실 승인을 얻게 됨에 따라 뉴질랜드에 서는 2019년 12월 1일부터 소액 수입물품에 대해 GST가 부과됨²⁶⁵⁾
 - ▶ 뉴질랜드 의회는 2018년 12월 5일 온라인 마켓 등 전자상거래 플랫폼을 통해 연간 6만뉴질랜드달러를 초과하는 매출이 있는 역외 사업자도 GST 등록을 의무화하는 법안을 발표한 바 있음²⁶⁶⁾
 - ▶ 최초 법안과 달리 시행시기가 2달 연장되어 2019년 12월 1일부터 시행하기로 함
 - ▶ 동법에 따르면 역외 사업자를 통해 수입된 1천뉴질랜드달러 이하²⁶⁷⁾의 재화(담배와 주류 제외)는 15% 세율의 GST가 부과됨

나. 암호자산으로 지급한 급여 세법상 처리 규정 발표

[조세동향 19-08호]

- 2019년 7월 30일 뉴질랜드 국세청은 고용주가 암호자산(Crypto-assets)으로 종업원에게 지급한 급여와 관련하여 세법상 처리 규정을 발표함²⁶⁸⁾

265) 뉴질랜드 국세청, <http://taxpolicy.ird.govt.nz/news/2019-06-28-gst-bill-enacted>, Bloomberg tax, <https://news.bloombergtax.com/daily-tax-report-international/n-z-says-amazon-tax-on-low-value-imports-will-now-start-dec-1>, 검색일자: 2019. 7. 22.

266)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주요국의 조세동향」, 18-12호, 2018 참조

267) 한화 약 80만원 수준(2019. 7. 30. 환율 1 NZD = 782.68원 기준)

268) 뉴질랜드 국세청, <https://www.classic.ird.govt.nz/resources/1/c/1c6029d0-611c-4a15-9cbf-b712129ab76c/tib->

- ▶ 암호자산(Crypto-assets)은 비트코인, 이더리움과 같이 디지털상에서 가상으로 존재하는 재산으로 이전까지 가상화폐(Crypto-currencies)라 일컬어짐
 - ▶ 2018년 4월 뉴질랜드 국세청은 암호자산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이익에 대해 자본이득 또는 사업소득으로 과세한다는 가이드라인을 발표한 바 있음²⁶⁹⁾
 - ▶ 동 규정을 발표함으로써, 뉴질랜드는 암호자산으로 지급된 급여 등을 세법상 비용으로 인정하는 첫 번째 국가가 되었음²⁷⁰⁾
- 암호자산은 고용계약에 따라 종업원이 용역을 제공한 대가로 일정한 금액과 종업원 보수의 한 형태로 제공되어야 함
- 또한, 제공된 암호자산은 보호예수 기간이 없어야 하며, 신용화폐로 즉시 교환이 가능하거나 다음의 요건 중 하나 이상을 충족하여야 함
- ▶ 암호자산의 주요 목적이 화폐와 유사한 역할을 수행하기 위함이거나
 - ▶ 해당 암호자산의 가치는 하나 이상의 화폐가치와 동일해야함
- 급여소득자에게만 적용 가능하며, 우리사주제도(employee share scheme)에 따라 지급된 주식과 관련해서는 암호자산으로 지급되었다 할지라도 동법이 적용되지 않음
- 동법은 2019년 7월 30일부터 3년 동안 시행됨

다. 사전조사 지출공제 및 결손금 이월제한 개정 논의

[조세동향 19-10호]

- 뉴질랜드 재무부는 2019년 9월 23일 사전조사에 관한 지출(Feasibility Expenditure) 공제 및 결손금 이월제한(Loss Continuity Rules)에 관한 내용을 개정할 것으로 발표함²⁷¹⁾

vol31-no7.pdf, 검색일자: 2019. 8. 21.

IBFD, New Zealand - IRD issues rulings on crypto-assets(16 Aug. 2019), News IBFD(accessed 20 Aug. 2019).

269)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주요국의 조세동향」, 18-4호, 2018. 참조

270) *Financial times*, August 13, 2019.

271) New Zealand - Changes to deductibility of feasibility expenditure and loss continuity rules announced(24 Sep. 2019), News IBFD(accessed 22 Oct. 2019)

- ▶ 2019년 2월에 발표된 Tax Working Group(이하 TWG)의 권고사항에 따라 논의된 내용임²⁷²⁾

- ▶ 뉴질랜드 내 혁신적이고, 성장 가능성이 있는 사업 환경을 조성하고자 제안된 내용임

■ 사전조사에 관한 지출 공제 개정안은 아래 내용을 포함함²⁷³⁾

- ▶ Feasibility Expenditure란 사전타당성 조사 등의 연구에 투자되는 지출을 의미하는 것으로 법적으로 정의된 내용은 아니지만, 사전 개발이 많이 필요한 업종에서 사용되는 지출임²⁷⁴⁾

- TWG 논의에 따르면 해당 지출은 종종 조사 당시 개발비로 계상되지만, 조사 이후 실제 시행되지 않은 경우 감가상각이 되지 않아 비용화되지 못하는 블랙홀 현상이 발생함

- ▶ 본 안에서는 1만뉴질랜드달러 이내의 적격지출은 전액 비용 공제가 가능하고, 1만뉴질랜드달러를 초과하는 적격지출은 5년에 걸쳐 공제 할 수 있도록 개정됨

- ▶ 2020년도 초에 도입되면 2020/2021 사업연도부터 적용 가능할 것

- 도입을 위하여 적격지출에 대한 구체적인 정의가 논의될 필요성이 존재함

■ 결손금 이월제한제도(Loss Continuity Rules)에 대한 개정은 2019년도 말 공개협의를 통하여 발전될 예정임²⁷⁵⁾

- ▶ 현행 결손금 이월제도는 회사의 결손금을 이월하기 위해서 49% 이상의 주주가 지분을 연속적으로 보유해야 한다는 규정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이를 완화시키는 방향을 논의하고 있음

- ▶ 해당 개정은 스타트업 기업이 새로운 투자를 촉진하는 데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생각됨

272) 뉴질랜드 Tax Working Group, <https://taxworkinggroup.govt.nz/sites/default/files/2019-03/twg-final-report-vol1-feb19-v1.pdf>, 검색일자: 2019. 10. 22

273) Deloitte, <https://www.taxathand.com/article/12302/New-Zealand/2019/Positive-business-tax-changes-announced->, 검색일자: 2019. 10. 22

274) 뉴질랜드 국세청, "Black hole and feasibility expenditure," 2017. 5

275) Tax Working Group, Appendix D: Changes to loss continuity rules, 2018. 7

라. 2018/19년도 해외투자펀드 세무 목적상 수익률 발표

[조세동향 19-11호]

- 뉴질랜드 의회는 2018/19년도 해외투자펀드(Foreign Investment Fund, 이하 FIF)의 세무 목적상 수익률을 5.86%로 발표함²⁷⁶⁾

 - ▶ FIF의 수익률은 매년 1회 공시되며 5년 만기 국채수익률의 분기별 평균에 4%의 이익을 가산하여 결정됨
 - ▶ 이번 과세연도는 2017/18년도 수익률이 6.44%인 것에 비해 감소되었음

- FIF란 외국법인, 외국신탁 등의 외국 투자상품을 의미하며, 뉴질랜드 거주자가 FIF로부터 소득을 얻는 경우 아래 내용을 공시해야 함²⁷⁷⁾

 - ▶ 투자상품의 이름
 - ▶ 설립 국가 혹은 세무상 거주지
 - ▶ 분기 초 및 분기 말의 뉴질랜드달러로 환산된 시장가격

- 아래에 해당하는 FIF 소득은 과세 면제됨²⁷⁸⁾

 - ▶ 개인이 FIF로부터 얻은 소득이 5만뉴질랜드달러 이내인 경우
 - ▶ 호주 증권거래소에 상장된 호주 회사에 투자하는 경우
 - ▶ 해외 퇴직연금으로부터 얻는 소득인 경우

- FIF 소득이 면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투자자의 과세소득을 아래의 방법으로 결정함²⁷⁹⁾

 - ▶ 공정배당가격 방법(Fair Dividend Rate Method)

276) New Zealand - Foreign investment fund deemed rate of return for 2018/19 year announced(29 Oct, 2019), News IBFD

277) 뉴질랜드 국세청, <https://www.ird.govt.nz/topics/income-tax/types-of-income/foreign-investment-funds>, 검색일자: 2019. 11. 29

278) 뉴질랜드 국세청, <https://www.ird.govt.nz/topics/income-tax/types-of-income/foreign-investment-funds/foreign-investment-fund-rules-exemptions>, 검색일자: 2019. 11. 29

279) 뉴질랜드 국세청, <https://www.ird.govt.nz/topics/income-tax/types-of-income/foreign-investment-funds>, 검색일자: 2019. 11. 29

- ▶ 비교가능가치 방법(Comparative Value Method)
- ▶ 원가기준 방법(Cost Method)
- ▶ 간주수익률 방법(Deemed Rate of Return)
- ▶ 기여FIF소득 방법(Attributable FIF income Method)

2 싱가포르

가. GST 개정안 수정사항 공개

[조세동향 19-07호]

- 싱가포르 재무부는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2018년도 GST 개정안에 대한 수정사항을 2019년 7월 5일 공개하였으며, 이해 당사자들에게 2019년 7월 26일까지 후속 논의를 위한 검토의견 제출을 요청함²⁸⁰⁾
 - ▶ 국외로부터 공급받는 용역의 GST 도입에 대한 수정사항은 아래와 같음
 - ▶ 대리납부제도(Reverse Charge Regime) 적용 대상 및 국외사업자 신고납부제도(Overseas Vendor Registration Regime) 규정을 명확히 하는 등 행정절차를 개선함
 - ▶ 국외로부터 공급받는 용역의 GST 산정과 관련 정보의 허위제공 등 위반행위에 대한 규제를 도입함

- 디지털 경제시장에서 암호화폐의 성격에 맞는 과세체계를 구현하고자 암호화폐가 아래와 같이 사용되는 경우 GST를 면제하기로 함²⁸¹⁾
 - ▶ 암호화폐의 매매거래 수단으로 사용됨
 - ▶ 거래의 지불수단으로 사용됨
 - ▶ 암호화폐 거래 수수료로 결제됨

280) Singapore - MOF invites feedback on proposed changes to GST Act(10 July 2019), News IBFD

281) Singapore - Public consultation on draft GST guide on digital payment tokens(11 July 2019), News IBFD

- ▶ 암호화폐가 공개시장에 발행됨(Initial Coin Offering)

나. VCC 적용 특례법 도입에 대한 개정안 발표

[조세동향 19-08호]

- 싱가포르 재무부는 2019년 8월 5일 VCC(Variable Capital Company)²⁸²⁾ 적용 특례법 도입에 대한 공개협의 내용을 반영한 개정안을 발표함²⁸³⁾
 - ▶ 해당 법안은 2018년 10월 1일 싱가포르 의회를 통과한 것으로서, VCC라는 새로운 형태의 투자펀드를 신설하는 법안임
 - VCC는 법적으로 회사에 해당하며, 개별 펀드 VCC로 설립하거나 다수의 하위 펀드를 구성하여 엮브렐라 VCC로 설립하는 것이 가능함
 - 기존 펀드와는 다르게 모집방식이나 운용자산 등의 제한 없이 모든 형태의 투자펀드에 사용될 수 있으며 개방형 펀드 및 폐쇄형 펀드로 설립이 가능함²⁸⁴⁾
 - 펀드의 설립과 운영을 용이하게 하여 싱가포르 펀드산업의 발전을 도모하고자 도입됨
 - ▶ 본 개정안은 의회 통과 시 2019년 4분기부터 적용될 예정임
- 본 개정안은 법인세, GST, 인지세법상 VCC 적용 특례를 포함하고 있으며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음
 - ▶ 법인세법상 VCC는 단일 납세의무자로서, 하위 펀드의 개수와는 무관하게 단일 법인에만 신고 및 납부 의무가 있음
 - ▶ 법인세법상 적용되는 세제 혜택은 하위 펀드가 아닌 VCC를 기준으로 적용됨
 - ▶ 스타트업에 대한 세제혜택 및 부분감면 혜택은 하위펀드 설립일이 아닌 VCC 설립일을 기준으로 하여 최초 3년간 VCC에 대하여 적용됨

282) VCC는 하나의 법적 실체 아래 개별 자산부채로 구성된 하위 펀드들과 함께 구성된 투자회사를 말함

283) 싱가포르 재무부, <https://www.mof.gov.sg/Newsroom/Press-Releases/summary-of-responses-to-public-consultation-on-proposed-legislative-amendments-to-introduce-the-tax-framework-for-variable-capital-companies>, 검색일자: 2019. 8. 21

284) PWC, <https://www.pwc.com/sg/en/asset-management/assets/svacc/svacc-at-a-glance.pdf>, 검색일자: 2019. 9. 3

- ▶ 엠브렐라 VCC의 소득공제와 이월결손금은 하위 펀드의 소득 수준에서 적용됨
- ▶ GST 신고목적상 VCC의 하위 펀드가 독립적인 영업활동을 영위하므로 개별 납세의 무자가 됨
 - 따라서 개별 하위 펀드는 납세자 등록, 신고 및 납부 의무가 있음
- ▶ 인지세는 VCC의 하위 펀드에 각각 적용될 것임

3 인도

가. 2019/20 사업연도 연방예산안 발표

[조세동향 19-07호]

■ 인도 재무부는 2019년 7월 5일 세법개정안이 포함된 2019/20 사업연도 연방예산안 (Union Budget 2019-20)을 발표함²⁸⁵⁾

■ 법인세법의 주요 개정 내용은 아래와 같음

- ▶ 연간 매출액 40억루피²⁸⁶⁾ 이내의 기업에 감면 법인세율인 25%를 적용함(기존 매출액 기준 25억루피²⁸⁷⁾에서 확대됨)
- ▶ 자기주식 매입세(Buy-back Tax)²⁸⁸⁾ 규정이 비상장법인에서 상장법인으로 확대 적용됨²⁸⁹⁾
- ▶ 대출채권에 대한 이자수입을 실제 이자를 지급받은 날과 발생일 중 빠른 날로 인식하는 규정이 기존 은행에서 비은행금융회사로 확대 적용됨
 - 인도 비은행금융회사와 은행 간의 세제 차이를 해소하기 위한 조치임

285) India - Union Budget 2019 - key amendments in Finance(No. 2) Bill, 2019(05 July 2019), News IBFD

286) 2019. 7. 30. 기준 원화환산 시 약 688억원임(2019. 7. 30. 매매기준율 1INR = 17.21원)

287) 2019. 7. 30. 기준 원화환산 시 약 430억원임(2019. 7. 30. 매매기준율 1INR = 17.21원)

288) 법인이 자기주식을 매입함으로써 발생하는 이익에 대한 세금으로 자기주식의 발행가와 매입대가의 차액에 대하여 과세함

289) India Union Budget 2019-20 publication July 2019, KPMG

- ▶ 비거주자 및 외국법인으로부터 받은 적절한 대가 없이 받은 물품 및 금품 등은 적절한 대가 없이 개인으로부터 받은 기타소득 규정에 준용하여 과세됨
- ▶ 특정 거래 및 불일치 사항에 대한 입증이 필요한 경우 전자평가를 실시함
- ▶ 중간예납제도를 시행함

■ 개인소득세법의 주요 개정내용은 아래와 같음

- ▶ 2천만루피 초과 5천만루피 이하²⁹⁰⁾ 소득에 대하여 25%, 5천만루피 초과 소득에 대하여 37%의 할증소득세²⁹¹⁾를 부과함
- ▶ 전기자동차를 구매하기 위하여 발생한 대여금에 대한 이자는 연간 15만루피²⁹²⁾까지 공제가 가능함
- ▶ 주택을 최초 구매하기 위하여 발생한 대여금에 대한 이자는 연간 15만루피까지 추가 공제가 가능함
- ▶ 연간 500만루피²⁹³⁾를 초과하는 용역계약수수료, 인적용역수수료에 대하여 5%의 원천세 납부의무를 부과함

■ 간접세의 주요 개정 내용은 아래와 같음

- ▶ 디젤 및 가솔린 사용 리터당 1루피의 도로 및 인프라세(Road and Infrastructure Cess)를 추가로 부과함
- ▶ 전기자동차에 대한 세제혜택을 제공함
 - 전기자동차에 대한 GST 세율을 기존 12%에서 5%로 인하함
 - 전기자동차 부품에 대한 관세를 면제함
- ▶ 금에 대한 관세를 기존 10%에서 12.5%로 인상함
- ▶ 자동차 부품, 합성고무, PVC, 비닐바닥 및 타일 등에 대한 관세를 인상함
- ▶ 군사장비 수입에 대한 관세를 면제함

290) 2019. 7. 30. 기준 원화환산 시 약 3억 4천만원 이상 8억 6천만원 이하임(2019. 7. 30. 매매기준율 1INR = 17.21원)

291) 할증소득세는 500만루피를 초과하는 소득의 고소득자에게 개인소득세 산출세액에 추가로 할증하여 부과하는 세금임

292) 2019. 7. 30. 기준 원화환산 시 약 2천 600만원임(2019. 7. 30. 매매기준율 1INR = 17.21원)

293) 2019. 7. 30. 기준 원화환산 시 약 8억 6천만원임(2019. 7. 30. 매매기준율 1INR = 17.21원)

■ 스타트업에 세제혜택을 적용하는 개정안이 도입됨

- ▶ 스타트업 엔젤세(Angel Tax)²⁹⁴⁾ 계산 시 주식가치 평가 검토 요건을 완화하여 스타트업에 대한 투자 증진을 도모함
- ▶ 스타트업에 대한 이월결손금 공제 제한을 적용하지 않기로 함

나. 판매촉진을 위한 전시품 및 위탁품에 대한 GST 법령 발표

[조세동향 19-08호]

■ 인도 재무부는 2019년 7월 18일 수출 판매촉진 행사를 위하여 인도로 반입 및 인도 외부로 반출되는 전시품, 위탁품에 대한 GST 법령을 발표함²⁹⁵⁾

- ▶ 해당 목적을 위하여 인도 외부로 반출되는 물품은 GST 과세 대상이 아님을 법령을 통해 명확화함
- ▶ 물품의 반입 및 반출 시 GST법상 공식 서류가 작성되어야 함
- ▶ 해당 목적을 위하여 인도 외부로 반출되는 물품은 6개월 내에 판매되거나 인도로 재반입되어야 함
- ▶ 6개월 이내에 판매 혹은 재반입되지 않은 물품은 간주공급으로 보아 GST 과세대상에 해당됨
 - 공급시기는 인도에서 반출된 날로부터 6개월이 지난 날로 하며, 영세율이 적용될 수 없고 매입세액 공제 혜택도 적용받을 수 없음
- ▶ 6개월 이내에 물품이 판매되는 경우, 영세율이 적용되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음
 - 물품이 판매된 날짜를 공급시기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며, 매입세액 공제 혜택도 적용 가능함
- ▶ 6개월 이내에 물품이 재반입 되는 경우 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없음

294) 소규모 비상장법인이 거주자로부터 지분의 공정가치보다 높은 가격으로 자금을 조달한 경우, 공정가치 초과분을 기타 원천에 의한 소득으로 보아 법인에 과세되는 세금

295) 인도 재무부, <http://www.cbic.gov.in/resources/htdocs-cbec/gst/circular-cgst-108.pdf>;jsessionid=FA19C8BFB1802A2955A9F253E6362757, 검색일자: 2019. 8. 21

다.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 발표

[조세동향 19-10호]

- 인도 재무부는 2019년 9월 20일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함²⁹⁶⁾

 - ▶ 정부는 2019/20 연방 예산안²⁹⁷⁾에 따른 세법 개정에 따라 2019년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함

- 법인세 관련한 시행령 개정 내용은 아래와 같음

 - ▶ 2019/20 사업연도부터 세액감면 및 세제혜택을 전혀 받지 않은 내국법인에 한하여 22% 세율을 선택 적용할 수 있음
 - ▶ 2019/20 사업연도부터 2019년 10월 이후로 설립되는 신규 제조법인은 15% 세율을 선택 적용할 수 있음
 - 할인세율 적용 대상이 되려면 세액감면 및 세제혜택을 받지 않아야 하며 2023년 3월 31일 이전에 생산 및 제조를 시작해야함
 - ▶ 위의 할인된 세율을 적용하지 않고 세액감면 및 세제혜택을 적용할 법인은 개정 전 일반세율인 30%, 혹은 특례세율 25%를 적용하고, 감면 적용이 끝난 뒤 할인세율인 22%를 적용할 수 있음
 - 단, 할인세율을 적용 신청 이후 적용 철회 등 변경은 불가함

- 기타 세제와 관련한 시행령 개정 내용은 아래와 같음

 - ▶ 아래에 해당하는 지분 매각의 경우 2019/20 개정된 세법에 따른 개인의 할증소득세가 적용되지 않음²⁹⁸⁾
 - 개인이 주식펀드, 신탁 등 법인의 지분을 매각하는 경우
 - 해외 포트폴리오 투자자(FPIs)가 파생상품 등을 포함한 주식을 매각하는 경우
 - ▶ 상장법인 중 2019년 7월 5일 이전 자기주식 매입을 공표한 법인은 자기주식매입세(Buy-back Tax)²⁹⁹⁾를 적용하지 않음

296) 인도 정부, <https://pib.gov.in/PressReleaseDetail.aspx?PRID=1585641>, 검색일자: 2019. 10. 21.

297) KPMG, India Union Budget 2019-20 publication July 2019

298) 인도 법무부, THE FINANCE(NO. 2) ACT, 2019, <https://taxguru.in/wp-content/uploads/2019/08/The-Finance-No.2-Act-2019-No.-23-of-2019.pdf>, 검색일자: 2019. 10. 29

- 자기주식매입세는 2019/20 사업연도 세법 개정을 통해 과세 대상이 상장법인으로 확대되었음

4 인도네시아

가. 세법 개정안 발표

[조세동향 19-09회]

- 인도네시아 정부는 2019년 9월 3일 법인세법, 소득세법, 부가가치세법 등의 개정안을 발표함³⁰⁰⁾
 - ▶ 개정안은 인도네시아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투자 촉진, 개인소득세 과세체계 변경, 디지털 기업 과세 강화 등의 내용을 포함하였으며 의회에 제출됨
- 법인소득세 및 개인소득세법상 개정내용은 아래와 같음
 - ▶ 법인세율은 기존 25%에서 20%로 인하함
 - 상장기업의 법인세율은 추가 3%를 인하하여 17%가 적용됨
 - ▶ 지분의 25% 이상을 보유한 국내 및 국외법인으로부터 지급받는 배당소득이 국내 재투자되는 경우 소득공제됨
 - ▶ 개인소득세법의 과세체계를 전 세계 소득 과세에서 속지주의 과세로 변경함
 - 12개월 동안 183일 이상 거주하는 자를 인도네시아 거주자로 봄
- 부가가치세법 및 디지털 과세 개정내용은 아래와 같음
 - ▶ 납부지연가산세의 지연이자 계산 시 월별 2%의 고정 가산세를 부과하던 것에서 벤치마크이율에 5%를 가산한 금액을 월할 계산하여 부과함
 - ▶ 세금계산서 불성실 가산세가 VAT 공급가액의 2%에서 1%로 감소함³⁰¹⁾

299) 자기주식매입세는 법인이 자기주식을 매입함으로써 발생하는 이익에 대한 세금

300) 인도네시아 정부, <https://setkab.go.id/en/govt-to-prepare-bill-on-taxation/>, 검색일자: 2019. 9. 19.

- ▶ VAT 목적상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은 자에게 VAT 공급가액에 1%만큼 부과하는 가산세를 새로이 도입함
- ▶ 부가가치세법상 생산 이전 기간에도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한 것으로 확대되는 등 매입세액공제 요건이 완화됨
- ▶ 아마존, 구글 등 국제 디지털 기업들이 제공하는 용역에 대하여 10%의 VAT 납부 의무를 도입함
- ▶ 고정사업장의 정의가 개정되어 인도네시아 내에 물리적 고정사업장이 없는 경우에도 디지털 기업의 고정사업장이 있는 것으로 간주됨

5 중국

가. 지역사회 기반 용역에 대한 세제 혜택 발표

[조세동향 19-07호]

- 중국 재무부 및 국가세무총국은 2019년 6월 28일 노인복지시설, 아동복지시설, 가사노동지원 등 지역사회 기반 용역을 제공하는 기업, 공공기관, 사회단체에 적용되는 세제 혜택에 관한 공고를 발표함³⁰²⁾
 - ▶ 해당 용역 매출에 대한 증치세를 면제함
 - ▶ 해당 용역으로부터 발생하는 기업의 과세소득에 대하여 10% 소득공제를 적용함
 - ▶ 해당 용역을 제공하는 데 사용되는 부동산 양수에 대한 취득세 및 부동산에 대한 등록세, 건축세 등을 면제함
 - ▶ 동 세제혜택은 2019년 6월 1일부터 소급 적용되며 2025년 12월 31까지 시행함

301) EY, <https://www.ey.com/gl/en/services/tax/international-tax/alert--indonesia-announces-plan-for-key-tax-changes>, 검색일자: 2019. 10. 2

302) 중국 재무부, http://szs.mof.gov.cn/zhengwuxinxi/zhengcefabu/201907/t20190704_3291180.html, 검색일자: 2019. 7. 22

나. 자원세법 도입 방법

[조세동향 19-09호]

- 중국 의회는 2019년 8월 26일 자원세법 도입을 발표하여 2020년 9월 1일부터 시행하기로 함³⁰³⁾

 - ▶ 기존 자원세 임시 법령은 폐지됨
 - ▶ 과세 대상 자원은 164개이며 원유, 천연가스, 석탄, 철광, 금, 구리, 물 등이 포함됨
- 법안에 따라 관련 자원 가격 및 단위별 세율의 범위가 결정되며, 지방자치단체에서 개별적으로 세율을 책정함

 - ▶ 물에 대한 자원세를 시범적으로 도입하여 지하수 사용에 대한 세금을 부과함³⁰⁴⁾
 - ▶ 자원세의 면제 대상은 아래와 같으며, 특정 상황에서 2~40%의 감면이 허용됨
 - 원유 추출 및 수송을 위해 사용되는 원유 및 천연가스
 - 석탄 채굴 기업에서 안전을 위하여 추출한 석탄가스
- 납세의무는 해당 자원을 지불하는 날 및 계약이 체결된 날에 성립되며 매 분기별로 신고하여야 함

다. 해외전자상거래를 영위하는 수출소매기업 과세방안 발표

[조세동향 19-11호]

- 중국 국세청은 2019년 10월 26일 2019년 36호 공고를 발표하여 해외전자상거래 시범 구역에서 해외 전자상거래를 영위하는 기업이 아래의 세 가지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간주이익을 계산하여 과세하기로 함³⁰⁵⁾

303) China(People's Rep.) - Resource Tax Law published(02 Sep. 2019), News IBFD

304) EY, [https://www.ey.com/Publication/vwLUAssets/EY-CTIE-2019035-ENG/\\$FILE/EY-CTIE-2019035-ENG.pdf](https://www.ey.com/Publication/vwLUAssets/EY-CTIE-2019035-ENG/$FILE/EY-CTIE-2019035-ENG.pdf), 검색일자: 2019. 9. 26

305) 중국 국세청, <http://www.chinatax.gov.cn/chinatax/n810341/n810755/c5139578/content.html>, 검색일자: 2019. 11. 19

- ▶ 기업이 해외 전자상거래 시범구역³⁰⁶)에 등록되어 해외 전자상거래 플랫폼 서비스를 영위할 것
- ▶ 기업의 수출상품이 관세청에 적절히 신고된 것
- ▶ 기업의 수출상품이 부가가치세 및 소비세 면제 대상일 것

■ 대상 기업의 간주이익 계산 시 매출액의 4%로 설정함

- ▶ 중소기업 조세특례가 적용되는 기업들은 대상 기업에 해당하더라도 기존 조세혜택을 계속하여 적용함
- ▶ 국채의 이자수익, 배당, 비영리단체로부터 얻는 이익에 대한 소득세 면제 혜택 또한 계속하여 적용됨

■ 해당 법안은 2020년 1월 1일부터 적용됨

라. 소비세법 초안 공개

[조세동향 19-12호]

■ 중국 재무부 및 국세청은 2019년 12월 4일 소비세법 초안을 공개하고 민간 공개협의 를 요청함³⁰⁷⁾

- ▶ 중국의 소비세는 1994년 도입된 잠정조례(Provisional Regulations)에 근거하여 과세 되었으나, 중국 재무부는 입법을 위한 여건이 충분히 갖추어졌다고 판단하여 법안을 제정함
- ▶ 해당 법안 초안에는 23개의 조항이 포함되었으며, 기존 잠정조례의 조항 및 현재까 지 발표된 시행공고 내용이 반영되었음
- ▶ 재무부 및 국세청은 2020년 1월 2일까지 법안에 대한 의견서를 수령할 예정임

■ 소비세 납세의무자는 법인 또는 개인이며, 소비세 과세 대상 상품을 생산하거나 중국

306) 해외 전자상거래 시범구역이란 정부가 해외 전자상거래 플랫폼을 활성화시키고 발전시키기 위한 정책을 적용되도록 지정한 구역으로 베이징, 난징, 하얼빈, 심양 등 35개 지역이 있음

307) 중국 재무부, http://english.www.gov.cn/statecouncil/ministries/201912/03/content_WS5de6527ec6d0bcf8c4c183dc.html, 검색일자: 2020. 1. 2

으로 수입하는 경우 납세의무가 성립되며, 각 품목별로 세율이 달리 존재함³⁰⁸⁾

- ▶ 과세 대상 품목은 담배, 주류, 고급화장품, 귀금속, 폭죽, 유류, 오토바이, 자동차, 골프용품, 고급시계, 요트, 나무젓가락, 원목 마루, 배터리, 페인트에 해당함
- ▶ 잠정조례에 제정되지 않았으나 시행공고를 통하여 법안에 추가 반영된 품목은 배터리 및 페인트이며, 화장품은 고급화장품으로 한정하였고, 소매가액이 130만원³⁰⁹⁾을 초과하는 고급자동차에는 추가 소비세를 과세함
- ▶ 과세대상 품목별로 1%부터 56%까지의 세율을 적용하며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 <표 III-1>과 같음

<표 III-1> 과세대상 품목별 세율

과세대상 품목	세율	비고
담배류	30~56%	대당 금액 추가 부과
주류	10~20%	톤, 그램당 금액 추가 부과
고급화장품	30%	
귀금속	5%, 10%	
폭죽	15%	
유류		리터당 금액 부과
오토바이	3%, 10%	
자동차	1~40%	고급자동차의 경우 10%의 소비세 추가 부과
골프용품	10%	
고급시계	20%	
요트	10%	
나무젓가락	5%	
원목 마루	5%	
배터리	4%	
페인트	4%	

자료: News IBFD, China(People's Rep) - Draft Consumption Tax Law released for public consultation, 법제처 세계 법제정보센터 중국 소비세 잠정조례, http://world.moleg.go.kr/web/wli/lgsInfoReadPage.do?A=A&searchType=all&searchPageRowCnt=10&CTS_SEQ=2806&AST_SEQ=53&searchNtl=CN&searchLgslCode=, 검색일자: 2020. 1. 7

308) China(People's Rep) - Draft Consumption Tax Law released for public consultation(04 Dec, 2019), News IBFD

309) 2020. 1. 7. 원화기준 환산 시 약 2억 2천만원임(서울 외국환증개 환율 167.76/위안)

- 과세금액을 계산하기 위해 품목별 매출액을 각각 구분하여야 하며, 품목별 매출액이 구분되지 않거나 세율이 다른 품목을 묶음으로 판매하는 경우에는 높은 세율을 적용함
- 소비세 과세 대상 품목을 생산하는 데 사용된 품목의 소비세는 납부 대상 소비세에서 공제 가능함
 - ▶ 예를 들어, 담배 제품 생산에 사용된 시가 등의 소비세나, 가솔린 또는 디젤 오일 생산에 사용된 석유 등의 소비세는 생산품의 소비세에서 공제 가능함
- 과세 대상 품목의 수출은 정부에서 따로 정의하지 않는 한 소비세 면제 대상에 해당됨
- 소비세는 과세관청이 징수하며, 수입되는 상품의 경우 과세관청을 대신하여 관세청이 징수함

6 호주

가. 세무입장보고(Reportable Tax Position)제도의 적용 범위 확대 발표

[조세동향 19-07호]

- 호주 국세청은 세무입장보고(Reportable Tax Position, 이하 RTP)제도의 적용 범위를 대규모 비공개 기업(large private companies)으로 확대하는 협의문을 발표함³¹⁰⁾
 - ▶ RTP제도는 2012년 처음 도입되었으며 세법 적용에 있어 모호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을 국세청에 알리고 가이드라인을 제공받음으로써 세법상 불확실성을 적시에 해결하기 위한 제도임
 - ▶ 현행 제도하에서는 상기 매출액 요건에 해당하는 공개 기업(public companies)과 외 국인 소유 회사에 한해 적용되고 있음

310) 호주 국세청, [108 |](https://www.ato.gov.au/General/Gen/Expansion-of-the-Reportable-Tax-Position-Schedule/IBFD, Australia - RTP Schedule to apply to large private companies(08 July 2019), News IBFD(accessed 22 July 2019), 검색일자: 2019. 7. 22</p>
</div>
<div data-bbox=)

■ 2020년 6월 30일 자로 종료되는 사업연도부터 아래 요건에 해당되는 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비공개 기업 포함)은 RTP 신고서를 제출하도록 요구됨

▶ 아래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적용 대상임

- 기업집단 매출액 기준: 2억 5천만호주달러를 초과
- 개별기업 매출액 기준: 2천 500만호주달러를 초과

나. 재화가 아닌 공급에 대한 GST 법령 초안 발표

[조세동향 19-09호]

■ 호주 국세청은 2019년 9월 4일 용역 및 무형자산 공급에 대한 법령 GSTR 2019/DR 초안을 발표함³¹¹⁾

▶ 본 법령은 용역 및 무형자산 공급에 대한 과세 및 비과세 요건을 구체화한 것으로, OECD 가이드라인에 따라 전자적 용역에 대한 과세 요건을 개정한 것임³¹²⁾

■ 간접세 과세지역에서 공급하는 용역 및 무형자산이 호주 내 관련성이 있는 경우 GST 과세 대상이 됨

▶ 법령에서의 간접세 과세지역은 호주 국내를 의미함

▶ 호주 내 과세 관련성(connected)이 있는 용역 및 무형자산의 공급이 과세 대상이 되며, 비관련(disconnected)인 경우 과세 제외됨³¹³⁾

▶ 아래 두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할 경우 과세 관련성이 있는 것에 해당됨

- 공급자가 호주 내에서 일련의 사업 활동을 영위하는 사업장이 있는 경우, 즉 호주 GST 거주자인 경우
- 공급자가 해당 사업장을 통하여 용역 및 무형자산을 공급하는 경우

▶ 호주 GST 거주자는 아래 요건을 충족할 때 해당됨

311) Australia - Draft GST ruling on non-goods supplies connected with Australia - issued(4 Sep. 2019), News IBFD

312) KPMG, <https://tax.kpmg.us/content/dam/tax/en/pdfs/2019/digitalized-economy-taxation-developments-summary.pdf>, 검색일자: 2019. 9. 26

313) 호주 국세청, <https://www.ato.gov.au/law/view/document?DocID=DGS/GSTR2019D2/NAT/ATO/00001>, 검색일자: 2019. 9. 19

- 호주 내 고정된 장소에서 사업 활동을 영위하고 있음
 - 호주 내 고정된 장소에서 12개월 이내에 183일 이상 사업 활동을 영위하고 있거나, 그럴 의도가 있음
 - ▶ 용역 및 무형자산의 공급행위는 여러 지역에 관련성을 가지고 수행될 수 있으므로, 다른 나라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의 공급도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호주 내 과세 관련성을 지닐 수 있음
- 본 법령이 시행될 경우 기존 법령인 GSTR 2000/31을 대체하게 되며, 2017년도 7월 1일 이후로 공급한 전자적 용역에 적용됨
- ▶ 호주 내 거주자 판정 및 비관련 공급 판정 시에는 2016년 10월 1일 이후 발생 분부터 적용됨

7 홍콩

가. 중소기업 및 거주자 지원 목적의 조세혜택 확대 발표

[조세동향 19-08호]

- 홍콩 국세청은 2019년 8월 15일 중소기업 및 거주자 지원 목적의 조세혜택 패키지를 확대할 것으로 발표함³¹⁴⁾
- ▶ 해당 조세혜택 패키지는 2019년도 2월 27일 2018/19년도 예산안에서 발표된 내용으로서 중소기업 및 사업소득자, 근로소득자의 재정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하여 입법됨³¹⁵⁾
 - ▶ 근로소득세, 사업소득세를 납부하는 거주자에게 2018/19 과세연도 소득세 신고 시 한시적으로 소득세액 100% 감면이 적용됨(단, 감면세액 한도는 2만홍콩달러³¹⁶⁾로 함)

314) Hong Kong - Package of measures to support enterprises and residents announced(20 Aug. 2019), News IBFD.

315) 홍콩 국세청, <https://www.ird.gov.hk/eng/tax/budget.htm#a01>, 검색일자: 2019. 8. 21

316) 2019. 8. 30. 원화 기준 환산 시 약 310만원임(서울외국환중개 매매기준율, 1홍콩달러 = 154.88원)

- 기존 예산안의 75% 감면안에 비하여 확대 적용되었음
- ▶ 물류, 운송, 도소매업, 농수산업, 여행업 등 다양한 산업군에 적용되는 27가지 종류의 정부 부담금 및 수수료가 1년간 면제됨
- ▶ 노령 보조금, 장애 보조금 등의 사회보장 보조금 수혜 대상 거주자에게 각각 한 달의 추가 수당이 지급됨

나. 조세혜택 패키지 법률 시행

[조세동향 19-11호]

- 홍콩 국세청은 2019년 11월 6일 조세혜택 패키지 법률을 시행할 것으로 발표함³¹⁷⁾
 - ▶ 해당 조세혜택 패키지는 2019년도 2월 27일 2018/19년도 예산안에서 발표된 내용이며 중소기업 및 사업소득자, 근로소득자의 세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하여 입법됨³¹⁸⁾
- 근로소득세, 사업소득세를 납부하는 개인에게 2018/19 과세연도 소득세 신고 시 2만 홍콩달러³¹⁹⁾의 한도 내에서 100%의 소득세액 감면이 적용됨³²⁰⁾
 - ▶ 2019년 8월 15일 소득세액 감면을 75%에서 100%로 확대하는 개정안이 도입됨
 - ▶ 소득세액 감면은 모든 개인에게 개별적으로 적용되며, 부부간에 합산하여 적용하는 것을 선택할 수 있으나 이 경우에 부부간 한도는 2만 홍콩달러가 적용됨
 - ▶ 세액감면은 개인소득세를 종합신고(Personal Assessment)³²¹⁾함으로서 적용되며 예납 기간에는 적용되지 않음
- 2019년 4월 1일부터 2020년 3월 31일까지 일부 사업등록세, 지점등록세가 면제되고 기납부 등록세는 환급됨³²²⁾

317) Hong Kong - Tax concessions to be implemented - amendment bill passed(08 Nov. 2019), News IBFD

318) 홍콩 국세청, <https://www.ird.gov.hk/eng/tax/budget.htm#a01>, 검색일자: 2019. 11. 29

319) 원화기준 약 301만원(서울 외국환중개 매매기준율 150.67원/HKD)

320)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주요국의 조세동향」, 19-8호, 2019

321) Personal Assessment는 근로소득, 사업소득, 임대소득이 있는 개인의 경우 합산하여 신고·납부할 수 있는 제도임

322) 홍콩 국세청, https://www.ird.gov.hk/eng/tax/budget2019_br.htm, 검색일자: 2019. 11. 29

- ▶ 면제기간 내에 간편등록 서비스를 통하여 등록하는 내국법인은 사업등록세가 2천홍콩달러까지 면제됨
- ▶ 단, 등록세가 면제되더라도 임금보호기금 부담금은 계속해서 납부해야 함

IV 국제기구

1 OECD

가. 강제보고규정 관련 정보의 국제적 교환을 위한 체계 발표

[조세동향 19-07호]

- OECD는 2019년 6월 27일 강제보고규정(Mandatory Disclosure Rules: MDR)에 따라 작성된 정보(이하 MDR 보고서)의 국제적 교환을 위한 체계를 발표함^{323),324)}

 - ▶ 강제보고규정은 OECD BEPS 프로젝트 12번 과제로서, 과세당국이 공통 보고 기준(CRS)³²⁵⁾ 관련 의무를 회피하는 거래와 불투명한 역외 구조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기 위해 보고 의무자에게 보고 의무를 부여하는 것을 말함
- 강제보고규정에 따라 CRS 회피 거래 또는 불투명한 역외 구조에 대한 정보(MDR 보고서를) 보고받은 과세당국은 다른 과세관할권과 해당 정보를 교환할 수 있음

 - ▶ 보고의무자의 다른 과세관할권이 ① 강제보고규정을 시행하고 ② 강제보고를 위한 다자간 자동교환협정(MDR MCAA)의 서명국일 경우에 교환이 가능함

323) 보고서의 정식 명칭은 “International Exchange Framework for Mandatory Disclosure Rules on CRS Avoidance Arrangements and Opaque Offshore Structures”임

324) OECD, <http://www.oecd.org/tax/oecd-releases-international-exchange-framework-for-crs-related-mandatory-disclosure-rules-updates-xml-schemas-for-exchange-of-crs-cbc-and-tax-ruling-information.htm>, 검색일자: 2019. 7. 18

IBFD, OECD - Exchange framework for CRS avoidance released(28 June 2019), News IBFD(accessed 18 July 2019)

325) 공통보고기준(Common Reporting Standard: CRS)이란 OECD가 역외탈세를 방지하고 국제적 납세의무를 촉진하기 위해 제정한 자동정보교환 표준모델임

- MDR 보고서는 다자간 금융정보 자동교환 협정(MCAA)³²⁶에 따른 자동교환방식으로 교환될 예정임

나. BEPS Action 14 관련 2단계 상호검토보고서 발표

[조세동향 19-08호]

- OECD는 2019년 8월 13일 BEPS 프로젝트 “Action 14 분쟁해결장치의 효과성 제고”와 관련하여 벨기에, 캐나다, 네덜란드, 스위스, 영국, 미국 6개국에 대한 2단계 상호검토(peer review) 보고서를 발표함³²⁷
 - ▶ Action 14 상호검토는 최소기준 부합 여부를 검토하는 1단계와 1단계에서 발견한 미비점의 시정 여부를 평가하는 2단계로 이루어지며, 이번 보고서는 처음으로 발표되는 2단계 보고서임
 - ▶ 상기 6개국은 2017년 9월 26일 1단계 상호검토에서 최소기준에 부합하는 분쟁해결장치를 갖추고 있으나, 24개월 내 상호합의절차(Mutual Agreement Procedure, 이하 MAP) 사건 해결과 MAP 접근성에 대한 보다 명료한 안내 등에 대해서는 개선 조치가 필요한 것으로 검토된 바 있음³²⁸
- 2단계 상호검토 보고서는 1단계 검토보고서와 같이 ① 분쟁방지 노력 ② MAP의 이용 가능성과 접근가능성 보장 ③ MAP 사건 해결 ④ MAP 합의 이행 현황을 평가하는 세션으로 구성되어 있음
- 상기 국가들은 1차 보고서에서 다뤄진 미비사항이 전반적으로 개선됨에 따라, Action 14 최소기준을 모두 충족하거나, 거의 충족한 것으로 평가됨³²⁹
 - ▶ 6개 국가 모두 분쟁방지 노력과 관련된 최소기준을 충족하였으며, 조세조약 상 분쟁

326) 다자간 자동교환 협정(Multilateral Competent Authority Agreement: MCAA)에 가입한 국가들은 세무문제에 관련된 상대국 거주자의 금융정보 등을 매년 정기적으로 상호 교환하며, 국가별 보고서도 동 협정에 따라 교환되고 있음

327) OECD, <http://www.oecd.org/tax/beps/oecd-releases-first-stage-2-monitoring-reports-for-beps-action-14-on-improving-tax-dispute-resolution-mechanisms.htm>, 검색일자: 2019. 8. 20.

328)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주요국의 조세동향」, 17-10호, 2017 참조

329) EY, <https://www.ey.com/gl/en/services/tax/international-tax/alert--oecd-releases-first-batch-of-stage-2-peer-review-reports-on-dispute-resolution>, 검색일자: 2019. 8. 29.

이 시작되었을 때 상호합의절차가 이행되도록 함

- 벨기에, 스위스, 영국은 MAP 지침을 보다 명확하게 개정함

▶ 6개 국가 모두 상호합의 절차 종결까지의 시간이 단축되었거나 유지되었음

- 미국을 제외한 5개국은 MAP 24개월 평균 소요기간 요건을 충족함

▶ 2016년, 2017년 MAP 사건 해결 건수는 네덜란드, 스위스, 영국, 미국 4개국은 증가하였으며, 캐나다, 벨기에에서는 감소함

- 미국은 1%, 영국은 74% 증가한 반면에 벨기에와 캐나다는 각각 6%, 33% 감소함

▶ 벨기에, 네덜란드, 영국에서는 MAP 절차를 적시에 효율적으로 이행하기 위해 추가 인력을 배치하는 등 조직적인 변화를 도모함

▶ 영국을 제외한 국가들의 조세조약에는 MAP 관련 조항이 포함되어 있음

▶ 다자협약 발효에 따라 일부 조세조약이 최소기준에 부합되도록 수정되고 있으며, 이 외 양자 협상에서도 관련 절차가 진행 중에 있음

■ OECD는 BEPS 프로젝트 Action 14 분쟁해결장치의 효과성 제고와 관련하여 국가들의 1단계 및 2단계 상호검토를 지속적으로 진행할 예정임

▶ 2019년 9월 20일 6조(아르헨티나, 칠레, 콜롬비아, 크로아티아, 인도,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남아프리카 공화국)에 대한 1단계 상호검토 보고서 발표가 예정되어 있음

▶ 다음 2차 상호검토보고서 대상국은 오스트리아,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리히텐슈타인, 룩셈부르크, 스웨덴으로, 올해 말에 상호검토보고서가 발표될 예정임

다. BEPS Action 13 관련 2단계 상호검토보고서 발표

[조세동향 19-09호]

■ OECD는 BEPS Project Action 13 국가별 보고 관련 2단계 상호검토보고서[Country-by-Country Reporting - Compilation of Peer Review Reports (Phase 2)]³³⁰⁾를 발표함³³¹⁾

330) OECD, https://read.oecd-ilibrary.org/taxation/country-by-country-reporting-compilation-of-peer-review-reports-phase-2_f9bf1157-en#page1, 검색일자: 2019. 9. 19

331) OECD, OECD/G20 Inclusive Framework on BEPS delivers tax transparency: Action 13 Country-by-Country reporting shows big progress(03 Sep. 2019)
News IBFD, OECD - OECD releases second peer review on CbC reporting(4 Sep. 2019)

- ▶ 위 보고서는 116개의 과세관할권을 대상으로 2019년 4월까지의 각 국가별 최소 기준³³²⁾ 도입 여부 및 그 이행 정도를 검토함
 - BEPS Project Action 13은 다국적 기업의 이전가격 문서화와 관련하여 세 단계의 표준 접근법³³³⁾을 제시하며 이 중 국가별보고서는 최소 이행 기준으로 BEPS 프로젝트 참여국은 이를 반드시 이행하여야 함

■ 위 보고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 ▶ 80개 이상의 과세관할권에서 총수익이 7억 5천만유로³³⁴⁾ 이상인 거대 다국적 기업 그룹에 대하여 보고의무를 부과하는 법안을 도입하였음
 - 입법이 완료된 국가들에서는, 국가별 보고서 작성 및 보고 현황이 BEPS Project Action 13의 최소 기준에 부합하게 운영되고 있음
- ▶ 1단계 상호검토³³⁵⁾에서 제시된 권고사항들은 대부분 해결이 완료된 것으로 평가됨
- ▶ 국가 간 보고서 교환은 2018년 6월부터 개시되었고, 현재 2,200여 건의 국가 간 양자 교환이 이루어지고 있음
 - 정보 교환 체계와 관련하여, 67개의 과세관할권이 보고서 교환에 관하여 양자 또는 다자간 협약을 맺고 있는 것으로 확인됨

라. 디지털세 단일 접근법에 관한 공개협약문서 발표

[조세동향 19-10호]

■ OECD는 2019년 9월 10일 디지털세 단일 접근법에 관한 공개협약문서를 발표함³³⁶⁾

332) Action 13 국가별 보고(CbC reporting)는 BEPS Project의 이행체계 중 '최소 기준'에 해당하며, 조세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다국적 기업(MNEs)에 이전가격 관련 자료제출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을 담고 있음.

333) ○ 마스터파일(master file): 다국적 기업의 거주법인이 해당 과세 당국에 제출하며 과세 당국이 중대한 이전가격 위험의 평가를 돕기 위해 글로벌 사업 활동, 전반적인 이전가격정책, 소득과 경제활동의 배분 등 다국적 기업 그룹의 사업에 대한 전반에 대한 내용을 포함해야 함

○ 로컬파일(local file): 각 국가에 특정된 이전가격 문서로서 중요한 특수관계자 간 거래, 그러한 거래의 거래가격 및 거래가격 결정과 관련된 이전가격 결정에 대한 분석을 포함함

○ 국가별보고서(Country-by-Country Report): 일정 규모 이상의 대형 다국적 기업이 매년 제공해야 하는 보고서로서 각 국가별 사업에 대한 매출액, 세전수익과 법인세 결정세액 및 납부세액 등의 자료와 종업원 수, 자본금액, 이익잉여금 및 유형 자산, 사업 활동 등에 대한 정보를 포함함

334) 2019. 9. 26. 원화 기준 환산 시 약 9,850억원임

335) OECD, <http://www.oecd.org/tax/beps/country-by-country-reporting-compilation-of-peer-review-reports-phase-1-9789264300057-en.htm>, 검색일자: 2019. 9. 26

- ▶ OECD는 2019년 5월 디지털 과세 관련 후속 논의보고서를 통하여 2개의 과세방안을 제시하였고, 이후 2019년 6월 개최된 G20 회의에서는 디지털 과세에 관하여 2020년 말까지 최종 합의안을 마련하기로 합의한 바 있음
 - ▶ OECD Program of Work는 소비지국 과세권 강화를 위한 과세권 배분 규정에 관한 과세방안 ‘Pillar 1’에 관하여, 이익배분 및 연계거점 규칙 수정방법에 관하여 사용자 참여(user participation), 마케팅 무형자산(marketing intangibles), 중요한 경제적 실재(significant economic presence)의 세 가지 방안을 제안하였음
 - ▶ OECD는 Pillar 1과 관련하여, 본 문서를 바탕으로 한 2019년 11월 21~22일 공개협의를 통하여 2020년 말 최종 과세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기초로서 우선적으로 2020년 1월 경 ‘단일 접근법(unified approach)’에 대한 개괄적 합의를 도출하고자 함
 - 이해관계자는 2019년 11월 12일 12:00(파리 시각 기준)까지 의견을 송부해야 함
 - Pillar 2에 관한 공개협의를 2019년 11월 초순경 공개협의문서를 발표하여 2019년 12월 진행될 예정임
- 단일 접근법은 디지털 기업을 포함하여 일부 특정 산업을 제외한 소비자재 산업(consumer-facing business) 전체를 적용 범위로 함
- ▶ 소비자재(consumer product) 또는 최종 소비자를 상대로 하는 디지털서비스를 공급함으로써 수입을 창출하는 사업들을 전반적인 대상으로 삼음
 - 위 적용 범위에 해당하는 사업체가 일정 규모 이상의 다국적 기업인 경우 그 이익의 일정 부분에 대하여 소비지국의 과세권을 인정하고자 함
- 새로운 연계거점 규정(nexus rule)과 관련하여, 실제 디지털 활동이 일어나는 시장 과세 관할권을 기준으로 한 OECD는 실제 디지털 활동이 발생하는 시장 기준의 새로운 과세 연계점(nexus) 규정 마련을 요청함
- ▶ 단일 접근법은 물리적 기반이 아닌 판매량에 기반을 두어, 온라인 광고 등 수입 기준(revenue threshold)을 마련하여 새로운 연계거점 규정을 구체화할 것을 제시함
- 새로운 이익배분 기준과 관련하여, 단일 접근법은 다음과 같은 3구간 메커니즘(Three Tier Mechanism)을 제안함

336) News IBFD(10 Oct. 2019). "OECD - Proposal for "Unified Approach" under Pillar One - details", OECD, <http://www.oecd.org/tax/oecd-invites-public-input-on-the-secretariat-proposal-for-a-unified-approach-under-pillar-one.htm>, 검색일자: 2019. 10. 29.

- ▶ Amount A - 다국적 기업의 잔여이익 중 공식 적용 후 산출된 일정 부분을 시장 과세관할권에 배분함
- ▶ Amount B - 시장 과세관할권에서 발생하는 기초 판매·유통 기능에 대하여 일정 금액을 이익으로 배분함
- ▶ Amount C - 현지법인이 Amount B에서 보상받는 부분(baseline activity) 이상으로 국내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그 추가적 이익을 당해 과세관할권에 배분함

마. 개발도상국의 이전가격 문서화를 위한 자료집 초안 발표

[조세동향 19-10호]

- OECD는 2019년 9월 27일 개발도상국의 효과적인 이전가격 문서화를 위한 도움자료집 (Practical Toolkit to Support The Successful Implementation By Developing Countries Of Effective Transfer Pricing Documentation Requirements) 초안을 발표함³³⁷⁾
 - ▶ 위 자료집은 G20의 요청에 따라 IMF, OECD, UN, World Bank Group이 협력하여 구축한 조세 협력 플랫폼(Platform for Collaboration on Tax)의 일환으로 만들어짐
 - ▶ 개발도상국들이 국제조세 분야의 모범 관행들을 추가적인 행정비용의 손실 없이 도입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것임
- 위 도움자료집은 OECD 주요국의 이전가격 세제를 분류하여 소개함으로써 정책적 선택사항(policy option)을 제공함
 - ▶ BEPS 프로젝트 Action 13에서 다루고 있는 마스터 파일 및 국가별 보고서 관련 입법 현황과 로컬 파일 및 이전가격 신고(transfer pricing returns or schedules)에 관한 입법 현황을 살핌
 - ▶ ① 이전가격 관련 의무 부과 규정의 체계 ② 납세의무자의 개인정보 보호 ③ 세무 행정의 적시성을 담보하기 위한 최적의 보고 기한 ④ 행정제재 등 의무이행을 강제하기 위한 수단 ⑤ 과세관할권 간 정보 접근 및 공조 ⑥ 간소화 및 면제 규정에 관

337) OECD, "Practical toolkit to support the successful implementation by developing countries of effective transfer pricing documentation requirements (Draft version)," <http://www.oecd.org/tax/beps/draft-toolkit-transfer-pricing-documentation-platform-for-collaboration-on-tax.pdf>, 검색일자: 2019. 10. 29

하여 챗터를 나누어 다루고 있음

- OECD 및 조세 협력 플랫폼 기관들은 2019년 11월 8일까지 이해관계자의 위 도움자 료집에 관한 코멘트를 요청함

바. 디지털 경제 과세방안 ‘글로벌 세원잠식 방지 규정 마련’ 관련 공개협의문서 발표

[조세동향 19-11호]

- OECD는 2019년 11월 8일 디지털 경제 과세방안 중 글로벌 세원잠식 방지 규정 마련 안에 관한 공개협의문서³³⁸⁾를 발표하고, 2019년 11월 8일부터 2019년 12월 2일까지 과세방안에 관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요청함³³⁹⁾

- ▶ 공개협의문서의 공식 명칭은 “Public consultation document: Global Anti-Base Erosion Proposal(GloBE) - Pillar Two”임

- GloBE 제안은 크게 익금 산입 규정(income inclusion rule), 세원잠식비용 공제 부인 규정(undertaxed payments rule), 과세권 전환 규정(switch-over rule), 조세조약 혜택 배제 규정(subject to tax rule)으로 구성되어 있음

- ▶ 다국적 기업의 국외 소득을 대상으로 함
- ▶ 공통적으로 특정 과세관할권에서의 실효세율이 최저세율 이하인 경우, 즉 최저한세 이하의 과세소득이 발생한 경우(income not subject to tax at a minimum rate)를 문제 상황으로 파악하고 있음

- 공개협의문서는 ① 과세표준을 산정하는 방법으로 회계기준을 사용할 것을 제시하고, ② 다국적 기업의 총소득을 산정할 때의 통산 범위 및 수준(blending)과 ③ GloBE 제안의 적용 범위와 관련하여 적용배제(carve-out) 또는 최저 기준점(threshold)을 논의 함³⁴⁰⁾

338) OECD, <http://www.oecd.org/tax/beps/public-consultation-document-global-anti-base-erosion-proposal-pillar-two.pdf>, 검색일자: 2019. 11. 29

339) OECD, <http://www.oecd.org/tax/oecd-secretariat-invites-public-input-on-the-global-anti-base-erosion-proposal-pillar-two.htm>, 검색일자: 2019. 11. 29

340) IBFD, https://research.ibfd.org/#/doc?url=/data/tns/docs/html/tns_2019-11-08_o2_1.html, 검색일자: 2019. 11. 29.

사. 국가별 보고서 작성에 관한 추가 가이드라인 발표

[조세동향 19-11호]

□ OECD는 2019년 11월 5일 국가별 보고서 작성에 관한 가이드라인(Guidance on the Implementation of Country-by-Country Reporting)을 업데이트하여 발표함³⁴¹⁾

- ▶ 본 가이드라인은 OECD BEPS 프로젝트 Action 13을 보다 일관성 있게 실현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마련된 것으로, OECD는 가이드라인을 통하여 과세관청 및 다국적 기업의 국가별 보고서 작성 관련 실무 진행에 보다 분명하고 확실한 지침을 제공하고자 함

□ 위 가이드라인의 금번 추가 내용은 다음과 같음

- ▶ 국가별 보고서 Table 1의 “세전이익(손실)[profit (loss) before income tax]”, “납부세액(발생주의 기준)[income tax accrued (current year)]”, “납부세액(현금주의 기준)[income tax accrued(on cash basis)]” 항목 작성과 관련하여, 배당금의 취급방법
- ▶ 국가별 보고서 Table 1 작성 시 금액의 축약 작성(shortened or rounded amounts)의 가능 여부
- ▶ 최종 모회사/본사 소재 과세관할권에 증권거래소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 “상장 간주 규정(deemed listing provision³⁴²⁾)”의 적용방법
- ▶ 사업연도 기간을 12개월 이외로 설정할 수 있는지 여부
- ▶ 국가별 보고서 Table 3 작성 시 데이터 출처 및 기입 대상 정보 관련 작성 안내
- ▶ 작성된 국가별 보고서에서 주로 발견되는 오류³⁴³⁾
- ▶ 국가별 보고서 교환 관련 로컬 파일 작성 시 유의사항
- ▶ 국가별 보고서 교환 목적으로 상호 행정 공조를 위한 다자협약(multilateral convention

341) OECD, <http://www.oecd.org/ctp/guidance-on-the-implementation-of-country-by-country-reporting-beps-action-13.pdf>, 검색일자: 2019. 11. 29

342) OECD(2015), Country-by-Country Reporting Implementation Package 중 Model Legislation Related to Country-by-Country Reporting Article 1, paragraph 6 부분 참조, <https://www.oecd.org/ctp/transfer-pricing/beps-action-13-country-by-country-reporting-implementation-package.pdf>, 검색일자: 2019. 11. 29

343) OECD는 보고서 작성 시 오류와 관련하여 다음 링크를 통하여 수정사항을 별도로 업데이트하고 있음. <https://www.oecd.org/tax/beps/common-errors-mnes-cbc-reports.pdf>, 검색일자: 2019. 11. 29

on mutual administrative assistance in tax matters)의 효력 발생시기를 당길 수 있는지 여부 및 방법

아. 자발적 정보교환에 관한 지침 발표

[조세동향 19-11호]

OECD는 2019년 10월 31일 비과세 또는 명목세율 부과 국가에서의 실질적 활동에 관한 자발적 정보교환 지침(Substantial Activities in No or Only Nominal Tax Jurisdictions: Guidance for the Spontaneous Exchange of Information)³⁴⁴⁾을 발표함³⁴⁵⁾

- ▶ 본 지침은 OECD BEPS 프로젝트 Action 5의 권고사항 중 하나인 “실질적 활동 요건(substantial activities factor)”을 추가적으로 이행하기 위한 것임
- ▶ 특히, OECD가 2018년 5월 발표한 “Resumption of Application of Substantial Activities Factor to No or only Nominal Tax Jurisdictions”³⁴⁶⁾ 보고서에서 제시된 기준 내용을 보완하고 있음³⁴⁷⁾
 - 본 지침은 2018년 5월 보고서에서 제시된 정보교환 관련 요건들에 관한 실제 사례와 양식들을 다루고 있음

본 지침은 크게 두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음

- ▶ Part 1에는 타임 라인에 관한 지침, 국제적 법률 체계 및 주요 개념에 대한 정의를 설명하고 있음

344) OECD, <https://www.oecd.org/tax/beps/substantial-activities-in-no-or-only-nominal-tax-jurisdictions-guidance.pdf> 검색일자: 2019. 11. 29

345) OECD, www.oecd.org/tax/beps/substantial-activities-in-no-or-only-nominal-tax-jurisdictions-guidance-for-the-spontaneous-exchange-of-information.htm, 검색일자: 2019. 11. 29

346) OECD, <https://www.oecd.org/tax/beps/resumption-of-application-of-substantial-activities-factor.pdf>, 검색일자: 2019. 11. 29

347) 위 2018년 5월 보고서는 비과세(no tax) 또는 명목세율(nominal tax)만을 적용하는 과세관할권을 대상으로 하여, 위 조세관할권에 대하여도 BEPS 프로젝트 액션 5에서 권고하는 “실질적 활동 요건(substantial activities factor)”을 다시 적용하고자 하며, 구체적으로는 위 과세관할권 내에서 실질적 활동 요건을 적용할 수 있는 활동들을 구분한 후(identify the type of activities), 각 범주별로 실질적 활동 요건의 적용방법을 설명함. 특히 소득의 발생 원인을 지적재산권 관련 소득(IP income)과 그 외 소득(non-IP income)으로 크게 구분한 후, 유형자산의 경우에도 특히 관련 자산(patents and similar assets), 마케팅 무형자산(marketing intangibles), 예외적 사례와 예상 가능 주장에 대한 반박(exceptional cases and rebuttable presumption)을 나누어 다루고 있음.

- 정보교환은 자발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며(spontaneous exchange of information), 개발 예정인 표준화된 템플릿을 따라야 함
- ▶ Part 2는 정보교환 시 이용되는 XML 포맷을 제공하고 있음
- XML 포맷은 2018년 5월 보고서에서 제시된 표준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자발적인 정보교환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통제하는 역할을 수행함

자. BEPS 프로젝트 Action 5 상호검토 보고서 발표

[조세동향 19-12호]

■ OECD는 2019년 12월 23일 유해조세관행(Harmful Tax Practice)에 관한 상호검토 보고서를 공개함³⁴⁸⁾

- ▶ 보고서의 공식 명칭은 “Harmful Tax Practices - 2018 Peer Review Reports on the Exchange of Information of Tax Rulings”임
- ▶ 보고서는 BEPS 프로젝트 Action 5의 권고사항³⁴⁹⁾ 중, 투명성 개선을 위한 ‘예규(tax rulings) 정보의 자발적 교환 의무화(compulsory spontaneous exchange of information)’의 이행 상황을 살핌
 - BEPS 프로젝트 Action 5에서 규정하는 자발적 교환 대상 예규는 다음 5가지임
 - 특정 조세우대제도(preferential regime) 관련 예규
 - 일방적 사전가격승인제도(unilateral APA) 및 이전가격 관련 역외거래 예규
 - 과세소득을 감소시키는 국제거래 관련 예규
 - 고정사업장 관련 예규

348) OECD, http://www.oecd.org/tax/beps/harmful-tax-practices-2018-peer-review-reports-on-the-exchange-of-information-on-tax-rulings-7cc5b1a2-en.htm?utm_source=Adestra&utm_medium=email&utm_content=Harmful%20Tax%20Practices%20%20E2%80%93202018%20Peer%20Review%20Reports%20on%20the%20Exchange%20of%20Information%20on%20Tax%20Rulings&utm_campaign=Tax%20News%20Alert%2019-12-2019&utm_term=demo (검색일자: 2020. 1. 2)

349) BEPS 프로젝트 Action 5 보고서는, ① 실질적 활동이 확인된 납세자만 조세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사업·연구활동과 조세특혜제도를 연결시켜(연계접근법) 실질적 활동 요건을 갖춘 특혜제도만을 허용하고, ② 투명성 제고를 위해 특정 납세자(또는 납세자가 속한 그룹)의 특정 상황과 관련된 예규 중 소득이전과 세원감식의 우려가 있는 예규 유형을 구분하여 이를 대상으로 한 예규를 의무적으로 교환할 것을 권고하고 있음(한국조세재정연구원, 「유해조세환경에 대한 대응 관련 BEPS프로젝트 주요 권고사항 및 국내외 입법동향」, 2016. 9, pp. 3~6).

- 특수관계인 및 도관(conduit)에 대한 예규
 - 상호검토 대상 국가는 112개국이며, 2018년 1월 1일 ~ 12월 31일까지 1년을 대상 기간으로 함
- 위 보고서에 따르면, Action 5 예규교환과 관련하여 조사대상국들은 2018년 한 해 동안 다음과 같은 성과를 이루었음³⁵⁰⁾
 - ▶ 2018년 말까지 보고된 교환 대상 예규는 1만 8천건 이상이며, 위 예규들을 대상으로 약 3만회의 예규교환이 이루어졌음
 - 이 중 2018년에 발생한 예규교환건은 약 9천건 내외임
 - ▶ 조사 대상국 중 68개국은 Action 5의 권고사항을 성공적으로 이행하여 추가 권고사항을 받지 않았음
 - ▶ 개별 국가를 대상으로 정보교환의 적시성, 지식재산권 소득에 적용되는 조세특혜제도 준수 등을 내용으로 하는 약 52개의 권고사항이 제시되었음
 - ▶ 2017년도 평가에서는 92개국에 대하여 60개의 권고사항이 제시되었는데, 금번 2018년도 평가에서는 60개 중 21개의 권고사항이 채택·도입되어 해결되었음
- 우리나라는 Action 5 관련 평가 기준(Terms of Reference)을 모두 충족하였고 2017년도 평가기간에서와 마찬가지로 OECD로부터 별도의 권고사항을 제시받지 않았음
 - ▶ 우리나라는 조사 대상 기간 동안 33개국과 총 180건의 예규교환을 하였음
 - ▶ 우리나라가 교환한 예규는 주로 국제거래에서의 일방적 사전가격승인제도와 이전가격 관련 사전답변 예규(advance tax ruling)임

차. BEPS 프로젝트 Action 14 상호검토 보고서 발표

[조세동향 19-12호]

- OECD는 2019년 11월 28일 브라질, 불가리아, 중국, 홍콩, 인도네시아, 러시아, 사우디 아라비아의 BEPS 프로젝트 Action 14 관련 1단계 상호검토 보고서를 발표함³⁵¹⁾

350) News IBFD, "OECD - BEPS Action 5: Exchange of information on tax rulings marks substantial progress," 2019. 12. 24, https://research.ibfd.org/#/doc?url=/data/tns/docs/html/tns_2019-12-24_o2_1.html, 검색일자: 2020. 1. 2

- ▶ BEPS 프로젝트 Action 14는 최소 기준 이행과제로서, OECD는 프로젝트 참여국을 10개의 조로 나누어 (i) 최소 기준 이행 여부 및 (ii) 1단계 상호검토 보고서에서 제시된 권고사항 이행 여부의 2단계의 상호 검토를 진행함³⁵²⁾
 - ▶ Action 14 권고사항은 총 23가지이며 크게 3개의 범주로 분류됨³⁵³⁾
 - 조세조약상 상호합의 절차 관련 의무의 전면적인 이행과 조세조약 분쟁의 적기 해결 보장
 - 조세조약 분쟁의 예방과 해결을 위한 행정적 절차 개선
 - 조세조약상 적격한 납세자의 상호합의 절차 접근성 보장
 - ▶ 본 국가별 Action 14 보고서는 10개 조 중 7번째 조를 대상으로 한 상호검토 보고서로서, 위 상호검토 대상국의 2016년부터 2018년까지의 상호합의 절차 관련 통계 통합 자료를 담고 있음
- 상호검토 대상 7개국 중 브라질, 불가리아, 중국, 홍콩, 인도네시아는 Action 14의 최소 기준을 대부분 이행한 것으로 평가됨³⁵⁴⁾
- ▶ 러시아는 Action 14 권고사항의 절반 정도를, 사우디아라비아는 절반 이하를 충족한 것으로 평가됨
 - ▶ 분쟁 방지, 상호합의 절차의 이용 가능성과 접근성, 상호합의 절차 사건의 종결 등을 중점으로 평가되었음

351) OECD, <https://www.oecd.org/tax/beps/oecd-releases-peer-review-reports-on-dispute-resolution-for-brazil-bulgaria-china-hong-kong-china-indonesia-russia-and-saudi-arabia.htm>, 검색일자: 2019. 12. 23

News IBFD, "OECD publishes seventh round of BEPS Action 14 Stage 1 peer review reports," 2019. 11. 28, https://research.ibfd.org/#/doc?url=/data/tns/docs/html/tns_2019-11-28_o2_1.html, 검색일자: 2019. 12. 23

352) 각 조별 상호검토 일정은 다음 링크에서 확인할 수 있음. <https://www.oecd.org/tax/beps/beps-action-14-peer-review-assessment-schedule.pdf>, 검색일자: 2019. 12. 23

353)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분쟁해결 방안의 효과성 제고 관련 BEPS프로젝트 주요 권고사항 및 국내외 입법동향」, 2016. 9, pp. 3~7

354) EY, <https://www.ey.com/gl/en/services/tax/international-tax/alert-oecd-releases-seventh-batch-of-peer-review-reports-on-beps-action-14>, 검색일자: 2020. 1. 2

2 EU

가. EU경제재정이사회 Tax Issue 보고서 발표

[조세동향 19-12호]

□ 유럽연합 이사회는 2019년 12월 9일 최근 조세 이슈에 관한 EU 경제재정이사회(ECOFIN) 보고서를 발표함³⁵⁵⁾

▶ 본 보고서는 2019년 하반기 동안 EU 차원에서의 각 분야별 조세제도 발전 및 논의 현황을 살핌

□ 직접세 관련 부분으로는 공통(연결)법인세기준, 디지털 과세 패키지, 유해 조세특혜제도 해결을 위한 행동 지침 관련 진척 사항에 대한 논의가 있음³⁵⁶⁾

▶ 공통(연결)법인세기준(Common (Consolidated)³⁵⁷⁾ Corporate Tax Base: CCTB³⁵⁸⁾

- 도관 기업 취급방법, 이전가격 조항 구비 필요성 등 CCTB의 특정 기술적인 부분을 분석하고 있는 단계임
- 최근 진행 중인 OECD의 국제조세 논의를 따르고 있으며, 유럽연합에서도 OECD에 CCTB의 진행 경과를 업데이트하고 있음
- 다만, 2019년 7월 유럽연합 High Level Working Party on Tax Questions회의에서는

355) <https://data.consilium.europa.eu/doc/document/ST-14863-2019-INIT/en/pdf>, 검색일자: 2019. 12. 23

356) News IBFD, European Union - ECOFIN Report on tax issues published - direct tax developments, 2019. 12. 12, https://research.ibfd.org/#/doc?url=/data/tns/docs/html/tns_2019-12-12_e2_1.html, 검색일자: 2019. 1. 3

357) 공통법인세기준(CCTB)과 공통연결법인세기준(CCCTB)은, CCCTB에서만 발생하는 국제적 손익의 연결과정과 그룹간 거래의 소멸과정의 측면에서 차이가 있음. 위 공통(연결)법인세기준은 조세회피방지지침(ATAD)와 함께 법인세 패키지의 한 구성요소로서 발표된 것으로, ATAD가 최소기준의 지침이라면, CCTB 및 CCCTB 관련 내용은 더 규범적인 성격이 강함(PwC, https://www.pwc.com/kr/ko/publications/global_tax_update/samilpwc_global-tax-update_dec2016.pdf, 검색일자: 2019. 1. 3.

358) EU 회원국 간 단일한 과세기준 산정방식(single EU system)을 사용하여 EU 역내에서 활동하는 기업이 과세 대상 소득에 대해 하나의 세금계산서 작성만으로 EU 내에서의 납세절차를 완료하는 것을 의미함. 회원국 간 상이한 법인세 체제로 인한 기업의 납세비용, 법적 불확실성을 감소시키고, 다국적 기업 등의 조세회피 시도를 차단하기 위한 목적임. 과세기준만 통일하고 각 회원국은 자국의 법인세율을 그대로 적용할 수 있어 조세주권에는 영향이 없음.

주벨기에대사관 2016. 10. 26.자 작성 자료 참조, http://overseas.mofa.go.kr/be-ko/brd/m_7562/view.do?seq=1260291&srchFr=&srchTo=&srchWord=&srchTp=&Bmulti_itm_seq=0&B3Bitm_seq_1=0&B3Bitm_seq_2=0&Bcompany_cd=&Bcompany_nm=, 검색일자: 2019. 12. 23

현재 OECD의 논의를 CCTB에 적용하는 것은 시기상조라는 논의가 있었음

▶ 디지털 과세 패키지(Digital taxation package)

- 유럽연합이사회는 OECD의 디지털 과세방안을 재고하고 있으며, OECD에서 논의되고 있는 과세방안들이 EU 법과 양립할 수 있는지 분석 중임
- 특히 OECD 논의의 특정 요소들은 EU 회원국들 사이의 공통점을 찾기 위하여 EU 수준에서 검토되어야 함

▶ 기업 과세 관련 행동 지침 그룹(Code of Conduct Group)

- EU 회원국들의 유해 조세특혜제도(harmful preferential tax regime)을 해소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으며, 특히 EU 차원의 조세 비협조국 리스트를 지속적으로 업데이트하고 있음
- 국외원천소득면제, 명목이자비용공제(nominal interest deduction) 등 제도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작업하기로 함

■ 간접세 관련 부분으로는 부가가치세, 물품세 등에 대한 논의가 있음³⁵⁹⁾

▶ EU 차원의 단일 부가가치시스템(definitive VAT system) 마련

- 유럽 위원회(EC)는 2017년 소비지국 과세원칙(destination principle)에 기반한 EU 차원의 단일 부가가치시스템의 핵심 개념들[이른바 ‘단기시정조치(quick fixes)’]³⁶⁰⁾을 제시하고, 2018년에는 보다 구체적인 원칙들을 마련한 바 있음
- 그러나 대부분 회원국들은 위 단일 부가가치시스템의 기본 전제가 되는 적격 납세자

359) News IBFD, European Union - ECOFIN Report on tax issues published - indirect tax developments, 2019. 12. 10, https://research.ibfd.org/#/doc?url=/data/tns/docs/html/tns_2019-12-10_e2_1.html(검색일자: 2019. 1. 3)

360) EU 집행위원회는 납세 실적, 내부통제시스템 구축 여부, 재무건전성 등을 표준으로 하는 모범납세자(Certified Taxable Person)제도 도입을 제시하고, 이들에게만 아래 조치(quick fixes)들을 적용할 것을 제안하였음.

- 타 회원국 내에 물품을 보관하고 있고, 동 회원국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VAT 규정을 단순화하여 적용
- 물품이 중간구매자에게 물리적으로 이전되지 않고 직접적으로 최종소비자에게 이전되는 연쇄거래(chain transaction)에 대해서도 VAT 규정을 단순화하여 적용
- 판매물품이 한 회원국에서 다른 회원국으로 배송되었음을 거래자들이 보다 쉽게 증명할 수 있도록 조화롭고 단일한 규정(harmonized and uniform rules) 마련
- 현행 규정하에서 VAT 면제를 위해서는 배송증명서 외에도 EU사업자번호인증시스템(VIES)에 등록된 거래상대방의 사업자번호가 필요하다는 점을 명료화(Clarify)

주벨기에대사관 2017. 10. 6자 작성자료 참조, (http://overseas.mofa.go.kr/be-ko/brd/m_7562/view.do?seq=1331998&srchFr=&%3BsrchTo=&%3BsrchWord=&%3BsrchTp=&%3Bmulti_itm_seq=0&%3Bitm_seq_1=0&%3Bitm_seq_2=0&%3Bcompany_cd=&%3Bcompany_nm=&page=8, 검색일자: 2019. 1. 3)

(certificated taxable person) 개념 도입 및 역내거래매출 세금계산서합계표(recapitulative statement) 제도 폐지를 모두 반대하고 있음

- 회원국들은 유럽위원회에 소비지국 과세원칙 실현을 위한 대안적 보고 모델 또는 새로운 기술을 마련하는 등 다양한 가능성을 모색할 것을 요청함

▶ 부가가치세 세율 개편

- 유럽 위원회는 2018년 초, 인하된 부가가치세 세율을 유럽 전역에 설정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도입하자고 제안함
- 위 제안은 기존 부가가치세율 설정 규정(EU부가세지침 제98조)을 개정하고, 회원국들에 일정 범위 내의 세율 설정 재량을 허용하며, 인하된 부가가치세율이 적용되는 재화와 서비스를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하는 것을 핵심으로 함
- 회원국들은 EU 차원 단일 부가가치시스템과의 연계, 회원국들의 인하 부가가치세율 관련 내용을 다룬 웹 포털사이트 마련 등의 의견을 제시함

▶ 물품세와 관련하여, 유럽위원회는 2018년 소비세 시스템을 개편하여 소규모 기업의 신고 절차를 간소화하고, 유럽 역내 소비재 이동 거래 내역을 보다 전산화하였음

주요국의 조세동향 2019년 제2호

2019년 12월 27일 인쇄
2019년 12월 31일 발행

발행인 김 유 찬

발행처 한국조세재정연구원
30147 세종특별시 시청대로 336
TEL : (044)414-2114(대), www.kipf.re.kr

등 록 1993년 7월 15일 제2014-24호

조판및
인쇄 일지사

© 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19

* 잘못 만들어진 책은 바꾸어 드립니다.